

방통용합정책연구 KMCC-2025-16

정보통신망상에서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인터넷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방안 연구

(A Study on Strengthening Social Responsibilities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천혜선 외

2025. 12

연구기관 : (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Korea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 보고서는 2025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융합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정보통신망상에서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인터넷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방안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12월

연구기관 : 유한회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총괄책임자 : 천혜선
참여연구원 : 윤금낭
이현주
김나은

목 차

요 약 문	vii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제 2 장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운영 현황	3
제1절 온라인플랫폼의 청소년보호 운영 현황 분석	3
1.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에 따른 청소년보호활동 자율이행률 분석	3
가. 효과분석 개요 및 방법론	3
1) 분석목적 및 대상	3
2) 분석프레임워크 및 측정지표	4
3) 서비스 유형분류 및 표본 구성	7
나. 청소년보호활동 이행현황 비교 분석	9
1) 전체 이행률 비교 및 통계적 검증	9
2) 서비스 유형별 세부분석	12
2. 유해정보 접근관리 현황 분석	15
가. 유해콘텐츠 접근 차단	15
나. 유해매체물 연령등급 표시	18
다. 성인인증 절차	20
라. 청소년 유해어 검색 차단	22
3. 청소년 권리 강화 현황 분석	23
가. 청소년 전용공간 제공	23
나. 청소년 유해정보 신고 기능	24

제2절 온라인플랫폼의 청소년보호 정책 분석	25
1. 이용약관 및 정책 상 청소년보호 관련 명시 현황	25
2. 지정의무사업자의 청소년보호정책 특성	26
3. 비지정의무사업자의 청소년보호정책 특성	28
제3절 시사점	32
1.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의 효과	32
2. 자율적 보호활동의 한계와 개선과제	35

제 3 장 인터넷플랫폼의 청소년보호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분석37

제1절 해외 주요국의 온라인플랫폼상 청소년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동향 분석	37
1. 유럽	37
가. 디지털서비스법(DSA)	37
1) 아동·청소년 보호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조항	37
2) 사전 위험관리 체계를 통한 아동·청소년 보호 조항	38
3) 광고·추천·설계 측면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조항	40
4) 절차·권리 보장 측면에서의 관련 조항	42
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	44
1) 적용범위	45
2) 핵심의무	45
3) 필수 이행 조치	46
2. 영국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Bill)	47
가. 법안의 제정 배경 및 목적	47
나. 청소년접근성 평가제도	52
다. 청소년위험성 평가제도	53
1) 아동 위험성 평가((Children’s Risk Assessment) 체계	53
2) 불법콘텐츠 위험평가	59
3) 행동강령에 따른 요구사항	62

3. 호주 온라인안전법	63
4. 기타 주요국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의무 입법 추진 동향	75
가. 미국	75
나. 프랑스	79
5. 시사점	80
제2절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국내 온라인플랫폼 관련 입법추진 동향 분석	82
1. 청소년보호 책무 강화를 위한 입법 동향	82
가. 발의건수 및 유형	82
나. 주요내용	83
2. 현행 입법의 법리적 한계와 향후 과제 분석	84
3. 시사점	86
제4장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업자 책무 강화방안 마련	88
제1절 인터넷사업자의 청소년보호업무 이행 책임성 확보 방안	88
1. 청소년보호업무 책임성 확보의 필요성	88
2. 청소년보호업무 이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방안	89
제2절 청소년 보호책임 강화를 위한 위험기반 평가제도 도입 방안	94
1. ‘설계단계에서의 안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필요성	94
2. 위험기반적 접근 관점에서의 영향평가 적용대상의 적정성 검토	96
1) 확장된 청소년보호업무로서 사전위험성 평가 의무 부과 대상 검토	96
2) 사전위험성 평가의 내용과 방법 검토	100
3.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에서 사전 위험성 영향평가의 도입 방안	102
4. 사업자 자율 평가 원칙과 제도적 설계 방향	105
참고문헌	109

표 목 차

<표 2-1> 온라인 플랫폼 보호조치 이행현황 분석범위	6
<표 2-2> 콘텐츠 통제권에 따른 분석대상 온라인플랫폼의 유형특성	8
<표 2-3> 콘텐츠 통제권 정도에 따른 분석대상 서비스 현황	8
<표 2-4> 청소년보호활동 전체 이행현황 분석표	9
<표 2-5> 청소년보호활동 이행률 통계적 검증결과	10
<표 2-6> 제공자 관리형 서비스의 청소년보호활동 이행률 통계적 검증결과	13
<표 2-7> 사용자간 서비스의 청소년보호활동 이행률 통계적 검증결과	14
<표 2-8>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조	21
<표 2-9> 청소년보호 정책의 내용적 구성요소 비교	26
<표 2-10>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위한 청소년보호 업무 안내서’ 에 따른 청소년보호 정책의 권고사항	27
<표 2-11> 지정의무사업자와 대조군의 청소년보호정책 운영 비교	33
<표 3-1> 온라인상 미성년자 보호	38
<표 3-2> 위험평가(Risk assessment)	39
<표 3-3> 광고·추천 관련 아동·청소년 보호 조항	41
<표 3-4> 절차·권리 보장 측면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조항	42
<표 3-5> 아동에 대한 온라인 위협의 5C 유형	45
<표 3-6> 온라인안전법 대상이 되는 인터넷 서비스	49
<표 3-7> 영국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50
<표 3-8> 아동·청소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콘텐츠의 유형	55
<표 3-9> 기본 온라인 안전 기대(BOSE) 법적 근거 및 핵심 기대	64
<표 3-10> Online Safety (Basic Online Safety Expectations) Determination 2022 주요내용	67
<표 3-11> Regulatory Guidance 상 기대사항 위반 평가 요소	70
<표 3-12> Regulatory Guidance 상 위험 및 영향 평가 관련 내용	71
<표 3-13>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계정 가입 금지 관련 규정	73

<표 3-14> KOSA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보호 의무 주요내용	76
<표 3-15> Age-Appropriate Design Code Act 상 데이터 보호 영향평가 의무	77
<표 3-16> 22대 국회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보호를 중심으로 한 입법 발의	82

그림 목 차

[그림 2-1] 온라인플랫폼의 청소년 연령인증의 사례	5
[그림 2-2] 유해정보 차단 적용되지 않아 접근한 사례	16
[그림 2-3] 연령등급 표시 부적정 사례	20
[그림 2-4] 청소년유해어를 적용하지 않은 온라인플랫폼의 검색 결과	23
[그림 3-1] 아동 위험성 평가 관련 로드맵	48
[그림 3-2] 사전적 평가 및 이행 의무	51
[그림 3-3] 「Children's Register of Risks」의 구성	63
[그림 4-1] 모니터링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n=526)	92
[그림 4-2] 사업자 규모에 따른 차등적인 의무 부과에 대한 국내 인터넷이용자 조사 결과	98
[그림 4-3] 서비스유형별 청소년보호업무 차등화 필요성에 대한 국내 인터넷이용자 조사 결과	99

요 약 문

1. 제 목

정보통신망상에서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인터넷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방안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국내 청소년보호 정책은 사후적 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급변하는 온라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국의 온라인안전법, EU의 디지털서비스법 등이 도입한 사전 위험평가 제도와 같은 예방적 조치의무 부과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영국 온라인안전법, 유럽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에서 도입한 사전위험평가 제도(risk assessment)는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청소년보호를 고려하도록 하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했다. 이러한 사전 예방적 접근법은 문제가 발생한 수 대응하는 것보다 청소년보호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어, 유럽연합과 영국을 중심으로 초대형 플랫폼 사업자(특히, 청소년의 이용이 높은 소셜미디어 사업자)에게 사전적 위험평가를 통한 예방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규제는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와 격차가 있어, 연구를 통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서비스의 특성과 청소년 이용 비중, 위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정교하고 맞춤형인 규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행 매출액 10억원, 이용자 수 10만명으로 정한 일률적인 기준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특성을 가진 기존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일부 사업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고, 아동·청소년에게 영향력이 큰 사업자에게는 책임있는 대응을 요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규제 트렌드인 위험 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을 반영하여, 서비스 영향력과 규모에 따른 차등적 책무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청소년보호와 함께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잡힌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다양한 서비스 특성을 고려할 때, 민간의 자율

성을 존중하면서도 청소년보호 업무의 적절성과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하는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청소년보호계획 수립' 의무만 부과한 채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여부 등의 보고 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있어, 청소년 보호 업무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자의 자율적 보호조치 이행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화와 같은 투명성 메커니즘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자율적이지만 실효성 있는 청소년보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실효적으로 국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책무 강화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보호업무 자율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아동·청소년보호 활동에 대한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다음으로 국내·외 청소년보호정책의 추진동향을 분석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청소년유해성 평가의 프로세스·기준·관리방안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업자 자율의 사전적 위험예측 및 예방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는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실효적으로 국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책무 강화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보호업무 자율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아동·청소년보호 활동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국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사업자의 청소년보호 정책을 분석하고, 글로벌 온라인플랫폼의 청소년보호 정책 및 청소년보호를 위한 자율적 활동 내용 성과를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사업자의 자율적 보호활동의 한계와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또한, 인터넷플랫폼의 청소년보호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를 분석한다. EU,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의 온라인플랫폼상 청소년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온라인플랫폼상 청소년보호를 위한 제도 입법 추진 동향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 및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업자 책무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국내외 청소년보호정책 추진동향을 분석하여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청소년유해성 평가 프로세스기준관리방안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기반으로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업자 자율의 사전적 위험예측 및 예방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청소년보호 책임 강화를 위한 위험기반 평가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의 구성 및 범위에 관해 기술한다. 급변하는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이 불법정보 및 유해정보에 노출될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현행 국내 청소년보호 정책의 한계를 짚고 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특히 국내 청소년보호 제도가 사후적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의 예방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영국의 온라인안전법과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등 주요 해외 입법례에서 도입된 사전 위험평가 제도(risk assessment)를 통해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변화 방향을 개관한다. 아울러 현행 지정의무사업자 기준이 매출액과 이용자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서비스의 특성과 청소년 이용 비중, 위험 수준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위험 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에 따른 차등적 책무 부과 필요성을 논의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청소년 보호조치의 적절성과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제기하며, 청소년보호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보고·공개 메커니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제2장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운영 현황을 검토한다.

아울러, 국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사업자 144개와 비지정의무사업자(대조군) 60개, 총 204개 온라인플랫폼의 청소년보호조치 이행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지정의무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수 10만명 이상, 매출액 10억원 이상의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된다. 대조군은 국내에서 유사 규모의 비의무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하므로, 글로벌 이용자 규모가 월평균 이용자수 100만 이상, 회원수 1천만 이상, 또는 누적 다운로드 수 500만 이상인 글로벌 온라인플랫폼 중 국내 이용자가 별도의

기술적 조치 없이 접근 가능한 서비스로 구성하였다.

콘텐츠 통제권이 청소년보호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자 관리형'과 '사용자간 서비스'로 구분하였다. 제공자 관리형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 제작·게재를 직접 관여하며 관리 권한을 온전히 보유하는 서비스로 쇼핑·웹툰·음원 등이 해당되며, 사용자간 서비스는 사용자가 콘텐츠를 제작·공유하고 제공자는 이를 매개·관리하는 서비스로 메신저·SNS·개인방송·커뮤니티 등이 포함된다. 지정의무사업자는 제공자 관리형 87개, 사용자간 서비스 57개로, 대조군은 제공자 관리형 35개, 사용자간 서비스 25개로 구성되었다.

청소년보호조치 이행 수준은 ① 콘텐츠 관리 정책, ② 유해정보 접근관리, ③ 청소년 권리 강화의 3개 영역, 총 7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콘텐츠 관리 정책은 이용약관 등에 아동성착취물 등 명백한 불법정보를 넘어 폭력·자해·음주·도박 등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관리 정책 명시 여부를 평가하였다. 유해정보 접근관리는 유해콘텐츠 차단(블러 처리·접근 제한), 연령등급 표시, 성인인증 절차(자기기입식 제외), 유해어 검색 차단 등 4개 항목을 측정하였다. 청소년 권리 강화는 청소년전용공간 제공(큐레이션된 콘텐츠·별도 공간 등 적극적 조치)과 청소년유해정보 전용 신고기능(일반 불법정보 신고 제외) 마련 여부를 평가하였다. 모든 측정지표는 이진 변수로 코딩하였다.

조사결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사업자와 대조군의 청소년보호조치 자율이행 수준은 전반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지정의무사업자 144개와 대조군 60개를 대상으로 7개 항목에 걸쳐 분석한 결과, 지정의무사업자가 모든 측정 항목에서 대조군보다 높은 이행률을 나타냈다. 지정의무사업자의 7개 항목 평균 이행률은 75.2%로 나타난 반면, 대조군은 31.9%에 그쳐 43.3%p의 격차를 보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청소년보호 정책 공지는 지정의무사업자 93.1%, 대조군 73.3%로 19.8%p 차이를 보였다. 유해 콘텐츠 차단은 93.1% 대 36.7%로 56.4%p, 연령등급 표시는 80.6% 대 31.7%로 48.9%p, 성인인증 절차는 83.3% 대 33.3%로 50.0%p, 유해어 검색 차단은 50.0% 대 25.0%로 25.0%p, 청소년전용 공간은 38.2% 대 1.7%로 36.5%p, 유해정보 신고 기능은 81.3% 대 31.7%로 49.6%p의 격차가 확인되었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전체 7개 분석항목 모두에서 지정의무사업자가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이행률을 보이는 것으로 판별되었다. 특히 유해 콘텐츠 차단(Cramér's V=.611), 연령등급 표시(Cramér's V=.471), 성인인증 절차(Cramér's V=.491), 신고 기능(Cramér's V=.479)

항목은 중간에서 큰 효과 크기를 나타냈다. 이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가 온라인 플랫폼의 청소년보호조치 이행에 실질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서비스 유형별로 비교하더라도 지정의무사업자가 전반적으로 대조군 인터넷 사업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청소년보호 활동을 이행하고 있었다. 사업자 관리형 서비스의 경우 7개 분석 항목 모두에서 지정의무사업자가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청소년보호 활동을 이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 효과는 유해정보 접근관리 영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성인인증 절차는 지정의무사업자 93.1%, 대조군 28.6%로 64.5%p의 격차를 보이며 가장 큰 효과 크기를 나타냈고(Cramér's $V=0.670$), 연령등급 표시는 56.0%p 격차로 큰 효과(Cramér's $V=0.602$), 유해 콘텐츠 차단은 59.5%p 격차로 중간 이상의 효과(Cramér's $V=0.611$)를 보였다. 청소년전용 공간 제공에 있어서도, 지정의무사업자 56.3%, 대조군 2.9%로 53.4%p의 격차를 보였다(Cramér's $V=0.492$). 사업자 관리형 서비스는 제공자가 콘텐츠를 직접 관리하는 서비스 특성상 청소년 전용 섹션이나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만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지정의무사업자들의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사용자간 서비스는 7개 분석 항목 중 청소년전용 공간을 제외한 6개 항목에서 지정의무사업자가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청소년보호 활동을 이행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신고 기능으로, 지정의무사업자 100.0%, 대조군 40.0%로 60.0%p의 격차와 함께 매우 큰 효과 크기를 나타냈다(Cramér's $V=0.714$). 이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 기반 서비스에서 청소년 유해정보 신고 체계가 필수적이며, 제도가 이를 완전히 정착시켰음을 보여준다.

사용자간 서비스의 경우, 연령등급 표시의 경우 지정의무사업자 이행률이 61.4%로 사업자 관리형 서비스(93.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의 경우 실시간으로 연령등급을 자동 판정하고 표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더 어렵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대조군 24.0%보다는 현저하게 높아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Cramér's $V=0.344$). 청소년전용 공간 제공에 있어서도, 지정의무사업자 10.5%, 대조군 0.0%로 지정의무사업자의 이행률이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p>0.05$). 양 집단 모두 매우 낮은 이행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사용자간 상호작용 기반 서

비스에서 청소년만을 위한 별도 공간 운영이 서비스 구조상 어렵거나 이용자 분리가 커뮤니티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유해정보 접근관리 현황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유해콘텐츠 접근 차단 조치 유무, 연령 등급 표시 유무, 성인인증 절차 마련 유무, 유해어 검색 차단 유무 등을 비교 분석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사업자는 서비스 유형에 상관없이 대조군 사업자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조군의 경우 제공자 관리형 서비스(37.1%)와 사용자간 서비스(36.0%)의 이행률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제도적 의무가 없을 경우 콘텐츠 직접 관리가 가능한 제공자 관리형 서비스조차도 사용자간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의 낮은 관리에 머문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정의무사업자의 높은 이행률은 제도적 관리·감독 체계의 작동에서 기인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021년부터 지정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 활동 현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청소년 유해콘텐츠에 대한 시정 조치를 권고해왔다. 이러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체계는 단순한 이행률 향상을 넘어 청소년유해정보 접근 차단 조치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연령등급 표시 기능은 지정의무사업자 93.1%, 대조군 34.3%로 58.8%p의 격차를 보였다. 국내 법제는 「정보통신망법」 제42조와 시행령 제24조를 통해 연령등급 표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 고시를 시행하여 표준화된 표시 방식을 제시하였다.

2025년 현재 국내 지정의무사업자들은 대부분 규정에 부합하게 '19' 또는 '성인' 표시를 통해 청소년유해정보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 일부 사업자(네이버블로그, 네이버밴드, 다 음카페, 카카오토크)는 19금 표시 기능을 직접 적용하는 대신 성인계시물을 내부 시스템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대안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대조군의 경우 연령표시 이행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을 넘어, 연령표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그 방식과 효과성에 있어 국내 기준과 상당한 격차를 나타냈다. 국내 표시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시각적 현저성이 떨어지는 문제, 구체적 연령기준 없이 '성인용 콘텐츠(mature)' 또는 'NSFW' 등 모호한 표현만을 표시하는 문제, 연령등급 마크 뒤로 제한되는 유해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 등이 확인되었다.

성인인증 등 접근제한 절차 마련 여부는 지정의무사업자 83.3%, 대조군 33.3%로 50.0%p

의 격차가 확인되었다. 지정의무사업자의 높은 이행률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인증 시스템(신분증, 공인인증서, 아이핀, 신용카드, 휴대폰 인증 등)의 광범위한 도입에서 기인한다.

대조군 중 연령인증 시스템을 도입한 경우는 주로 아시아권 국가 서비스들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인증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타 국가 출신 대조군 사업자들은 앱마켓이나 프로필 계정 확인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이 방식의 핵심적 문제는 청소년이 가입 시 생년월일을 허위로 입력하여 성인 계정을 생성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기 인증 방식은 청소년이 스스로 연령정보를 조작하여 유해정보 접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청소년유해어 또는 금칙어를 적용하여 유해정보 노출을 차단하는 기능은 지정의무사업자 42.5%, 대조군 22.9%로 19.6%p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격차이며, 양측 모두 50% 미만의 이행률을 기록해 개선의 여지가 큰 영역으로 판단된다.

청소년 권리 강화 현황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전용공간 제공여부와 청소년유해정보 전용 신고기능 마련 여부를 분석했다. 청소년전용 공간 운영에 있어서, 지정의무사업자 38.2%, 대조군 1.7%로 36.5%p의 격차를 나타냈다. 이는 청소년을 단순히 유해 콘텐츠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려는 국내 정책 방향이 실제 사업자의 행동 변화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대조군의 경우 청소년 전용공간 제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이유는 시스템을 분리·운영하는 비용 부담 때문으로 추정된다. 비용적 부담을 줄이고 법 위반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사업자들은 청소년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불법유해 콘텐츠 노출 가능성을 낮추지만, 청소년들이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한되는 만큼 청소년의 권리를 저해할 수 있다.

청소년유해정보 전용 신고 기능 마련 여부에 있어서도 지정의무사업자 81.3%, 대조군 31.7%로 49.6%p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지정의무사업자 중 사용자간 서비스가 100%의 이행률을 달성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콘텐츠 관리 책임을 명확히 지니는 사용자간 서비스의 경우 신고 체계 구축이 청소년보호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보호조치 이행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7개 측정 항목 모두에서 지정의무사업자가 대조군을 상회했으며, 특히 유해정보 접근관리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제도에 따른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청소년에 대한 접근법에 있다. 대조군 사업자들이 주로 연령제한을 명시하고 배제의 논리를 취하며 책임을 보호자나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보이는 반면, 지정의무사업자는 청소년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지정의무사업자의 청소년보호정책은 단순한 컴플라이언스 문서가 아니라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으며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안내하는 권리 고지의 성격을 갖는다.

콘텐츠 관리 정책 영역에서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정책의 질적 수준에 있다. 지정의무사업자는 청소년보호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고 유해정보의 범위를 불법정보를 넘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하고 있다. 반면 대조군은 연령제한 선언에 그치며, 구체적 실행방안 명시율이 10.0%, 피해구제 안내가 18.3%에 불과하다. 더욱이 청소년보호의 범위가 주로 아동성착취물 등 명백한 불법정보에 국한되어 있으며, 불법은 아니지만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관리 체계는 부재하다.

이러한 차이의 핵심은 사업자 책임에 대한 인식에 있다. 지정의무사업자는 청소년보호를 사업자의 적극적 책임으로 규정하고 예방-관리-구제의 전 과정에서 구체적 조치를 명시하는 반면, 대조군은 연령제한을 통한 법적 면책이나 보호자·청소년의 자기책임을 강조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는 단순히 정책 수립률을 높이는 것을 넘어 정책의 범위를 확장하고 내용의 구체성을 강화하며 실행 체계를 완결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온라인플랫폼의 청소년보호정책 수립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사업자와 비지정의무사업자(대조군) 간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용약관 및 정책에 청소년보호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비율은 지정의무사업자가 93.1%, 대조군이 73.3%로 나타나 19.8%p의 격차를 보였다. 이는 법적 의무가 청소년보호 정책 수립을 보편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지정의무사업자의 경우 제공자 관리형 서비스와 사용자간 서비스 간 이행률 격차가 3.1%p에 불과한 반면, 대조군은 9.1%p의 격차를 나타냈다. 법적 의무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청소년보호 정책을 균등하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발견은 정책의 질적 측면에서 나타난 현격한 차이이다. 대조군 사업자의 73.3%가 연령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한 경우는 10.0%에 불과했으며, 피해접수 및 구제 안내를 제공하는 경우는 18.3%에 그쳤다. 이는 대부분의 대조군 정책이 형식적 연령제한 선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질적인 보호조치와 피해구제 체계를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제공자 관리형 서비스는 구체적 실행방안 명시율이 2.9%, 피해구제 안내가 5.7%에 불과해 청소년보호 정책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지정의무사업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일반 이용약관과 분리된 독립적인 '청소년보호정책' 문서를 마련한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간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위한 청소년보호 업무 안내서'에 기반하여 표준화된 정책을 수립하며, 계획수립 및 공개, 유해정보 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청소년보호 노력, 피해상담·고충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 공개 등을 포괄하는 예방-관리-구제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인증장치와 필터링 시스템 등 기술적 조치와 함께 실무자 교육 및 내부 프로세스 구축 등 조직적 관리체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청소년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의 연락처를 명확히 공개하여 실제 작동 가능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반면 대조군 사업자들은 청소년 관련 내용을 주로 일반 이용약관의 일부 조항으로 다루거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서 제재 대상 콘텐츠 유형을 명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 서비스 이용 가능 연령을 선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연령 확인 방법이나 미성년자 접근 차단 방안 등 구체적 실행방안은 제시하지 않는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청소년보호 정책이 주로 아동성착취물 등 명백한 불법정보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불법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폭력성 콘텐츠, 도박 관련 정보, 음주·흡연 조장 정보, 자살·자해 관련 정보 등에 대한 관리 체계가 부재하며, 이는 청소년보호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소극적 태도를 반영한다.

영미권 서비스는 청소년보호를 주로 개인정보보호 맥락에서 접근하는 특징을 보인다.

미국 아동개인정보보호법(COPPA) 준수를 위해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하나, 이는 유해정보로부터의 보호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다. 다만 최근 영국 온라인안전법과 EU 디지털서비스법 시행에 따라 일부 초대형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이 별도의 안전 섹션을 마련하고 아동보호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등 체계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는 명확한 법적 의무 부과 시 글로벌 플랫폼도 청소년보호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제도가 단순히 정책 수립률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청소년보호를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설정하고 예방부터 사후 구제까지 포괄하는 체계적 접근을 유도하며, 구체적 실행방안과 피해구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정책의 질적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제3장은 EU,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온라인플랫폼 상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 동향과 핵심적인 의무 체계를 비교 및 분석하는 한편, 국내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국내 온라인플랫폼 관련 입법추진 동향을 분석했다. 먼저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권리주체로 규정하고 서비스 설계·추천·광고·데이터 처리 전반에 걸쳐 사전적 위험관리(예방적 규제)를 요구하는 구조를 검토했다. 특히 제28조(미성년자 보호)와 제34조(시스템적 위험평가) 등을 통해 미성년자 보호 의무가 구체화되는 방식과,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을 통해 ‘Safety by Design’, 기본 설정의 보호, 프로파일링 광고 금지, 증독성 설계 제거, 연령확인(Age Assurance) 등 구체적 이행 조치가 제시되는 점을 검토했다. 이어서 이어서 영국 온라인안전법(OSA)의 단계적 시행 로드맵을 토대로, 아동접근성 평가(Children’s Access Assessment) 및 아동위험성 평가(Children’s Risk Assessment)를 사전 의무로 부과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한 안전조치 이행과 기록보관, 감독 기관(Ofcom)의 지침·행동강령을 통해 준수체계를 운영하는 구조를 검토한다. 또한 호주 온라인안전법의 경우 EU·영국과 달리 독립된 사전평가 제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두지는 않으나, BOSE 및 Safety by Design, eSafety의 사후 집행을 통해 서비스 전 생애주기에서 위험 식별·완화를 요구하는 ‘사후 책임 기반의 사전 고려’ 구조를 분석한다. 아울러 미국은 개인정보보호 중심 체계에서 KOSA 등 논의를 통해 설계 단계의 예견가능한 위험에 대한 완화 책임을 강화하려는 흐름과, 캘리포니아 AADC의 사전 영향평가(DPIA) 의무 논의를 함께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의 비교를 통해, 청소년보호 책임이 단순한 유해콘텐츠 차

단을 넘어 정기적·상시적 위험평가, 위험기반 차등의무, 설계·알고리즘·광고 영역의 구조적 개선, 문서화와 책임자 지정, 외부 감독과의 연계로 제도화되는 경향을 도출하고, 국내 제도 설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제2절에서는 국내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국내 온라인플랫폼 관련 입법추진 동향을 분석했다. 제22대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상 청소년 보호 책무 강화를 목적으로 발의된 7건의 법안을 대상으로, 발의 유형과 주요 규제수단을 분석하고, 현행 입법 시도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분석했다. 발의안들은 ① 연령확인 및 가입 제한, ② 친권자(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강화, ③ 알고리즘(추천·노출·중독 유발) 규제, ④ SNS 이용 제한 및 안전조치(이용시간·심야시간대 제한 등), ⑤ 범죄 예방·감시 등 플랫폼 운영 책임 강화로 유형화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각 의안이 서비스 진입 단계(가입·성인확인)부터 이용 과정(추천·노출·시간제한) 및 운영 책임(범죄 예방·감시)까지 플랫폼의 적극적 보호조치를 확대하려는 흐름을 띠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입법 동향이 ‘사후 차단’ 중심의 보호를 넘어 플랫폼의 예방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법안이 기능 금지·이용 제한 등 행위 규제의 나열에 머물러 사전적 위험관리 체계로서 작동하기 어렵다는 법리적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향후 개별 서비스에 대한 의무를 추가하기 보다는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청소년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평가」 분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적인 완화조치를 요구하는 사전 유해성 평가 기반의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논의했다.

제4장에서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업자 책무 강화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인터넷사업자의 청소년보호업무 이행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이행실적 보고체계의 도입 필요성과 집중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청소년보호계획 수립 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나 계획 제출이나 이행실적 보고 의무는 부재하여, 계획에 명시된 조치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그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체계적 확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사업자의 청소년보호 활동이 계획 수립 단계에 그치거나 형식적으로만 이행되는 경우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정책당국도 지정의무사업자 전체의 청소년보호 활동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미흡한 영역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위해,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 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행실적 보고는 사업자의 자율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책당국의 체계적 현황 파악을 가능하게 하며 청소년

과 보호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클린인터넷환경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서비스별 청소년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전수 점검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확보된 행정력을 청소년보호 관리자 대상 교육, 청소년유해정보 관리를 위한 신기술 개발 지원, 청소년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선제적·예방적 정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이행실적 보고서는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와 현행 청소년보호 조치 모니터링 항목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법령상 업무로는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 수립,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정보통신업무 종사자 대상 청소년보호 교육,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그 밖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현행 모니터링 항목으로는 청소년보호 계획 수립 및 공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및 공개, 청소년유해정보 접근 제한, 유료서비스 이용 시 법정대리인 동의 및 고지,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수단 운영, 청소년전용공간 운영, 제재사항 공지, 이용자 인식 제고 활동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보고서는 연 1회 정기 제출하고 사업자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취합하여 종합분석 결과를 공표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이행실적 보고 체계와 함께 집중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전반적 이행률이 양호한 만큼 전수 모니터링보다 청소년보호업무의 질적 개선이 필요한 영역과 사업자에 집중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집중 모니터링 대상은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이 미흡하거나 부실한 사업자, 청소년 이용자 비율이 높은 서비스, 유해정보나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서비스, 이용자 신고가 다수 접수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 서비스, 이전 모니터링에서 미흡 사항 발견 후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자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다. 모니터링은 정기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운영하되, 단순 기능 유무 확인을 넘어 서비스 실제 이용 환경을 점검하고 기술적 조치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연령인증 신뢰성, 유해정보 차단 정확성, 신고처리 신속성 등 실효성 점검, 청소년 권리 강화 조치 확대 여부, 불법정보뿐 아니라 폭력·도박·자살·자해 등 유해정보 범위의 포괄성, 피해구제 체계의 접근성 및 실효성 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행실적 보고와 집중 모니터링 체계의 결합은 청소년보호 활동의 투명성과 책

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책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실질적인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의 자율적 점검 및 개선을 유도하고 정책당국의 효과적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며 청소년과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보호 정책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데이터를 축적하며, 모니터링 결과를 미흡 사업자 맞춤형 관리·컨설팅, 반복 미이행 시 제재 근거, 우수 사업자 인센티브, 정책 개선 및 가이드라인 보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어서 제2절에서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설계단계에서의 안전(Safety by Design)' 패러다임으로의 전환되는 트렌드를 설명하고, 이를 구현하는 제도인 사전 위험성 평가제도가 국내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와 연계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제 3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최근 유럽연합, 영국, 호주 등 주요국의 입법 동향은 서비스 운용 단계의 사후 조치에서 설계 단계의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된다. 첫째, 온라인 그루밍이나 사이버 폭력과 같은 비가역적 피해는 사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이 경제적·사회적으로 효율적이다. 둘째, 온라인 위험을 개별 이용자의 일탈이 아닌 서비스의 구조적 설계 결함으로 인식함으로써 책임 주체를 공급자로 전환한다. 셋째,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사전 위험성 평가제도는 청소년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이 서비스의 정상적인 기능을 우회하는 일탈에서 발생한다기보다는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에서 출발한 만큼, 현행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청소년의 신체·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와 기능에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구조적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려는 철학이 사전 위험성 평가제도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10만 명/10억 원 기준)가 이미 존재하므로, 사전 위험평가는 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

이 절에서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도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현행 제42조의3에 구조적 위험 평가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과 시행령 제26조에 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

은 모두 과잉 규제 및 위임 입법 한계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을 가진 서비스(프로필 기반 커뮤니케이션, 랜덤 매칭, 실시간 상호작용 등)를 별도로 정의하고,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전 위험평가 의무를 부과하는 별도 조항 신설이 가장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소년에게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과 사회적 합의는 과제로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이 절에서는 위험평가 방식에 대해 사업자 자율 평가 원칙과 제도적 설계 방향을 제시하였다. 사전 위험평가는 본질적으로 사업자가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식별)하고, 위험성 수준을 결정(평가)하며, 적절한 완화 조치를 마련·실행하는 자율적 관리 프로세스이다. 따라서 법령에서는 평가 의무와 대상만 명시하고, 평가 대상 기능의 예시, 고려 요소, 위험 수준 판단 기준, 완화 조치 예시, 기록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가이드나 자율규범으로 다루는 것이 기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보인다. ‘설계단계에서의 안전’ 개념을 파생시킨 보안분야 및 일반 산업안전분야의 사례를 보더라도, 위험성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만을 제안하고 평가 자체는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주요국의 입법례에서도 위험평가 의무는 법률에 명시하되 구체적인 평가 절차와 방법론은 가이드나 규칙으로 위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법령에서 위험평가 의무를 부과하되 평가 자체는 자율에 맡기는 방식은 일종의 ‘규제된 자율규제’의 형태로, 온라인 서비스의 다양성, 기술의 급속한 발전, 사업자의 전문성, 책임의 명확화라는 네 가지 이유에서 합리적이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사업자 책무 강화방안은 정보통신망법상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정책의 개선과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책임 이행 촉구를 위한 제도 마련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전위험성 평가제도 도입’, ‘청소년보호업무 이행실적 보고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안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청소년보호 책임 이행을 강화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유럽 DSA, 영국 온라인안전법, 호주 온라인안전법 등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국내 정책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사업자의 국

내법 준수와 국내 청소년보호를 위한 책임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 마련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6. 기대효과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와 글로벌 플랫폼 중심으로 급변한 온라인 환경에 부합하는 청소년보호 프레임워크를 제시함으로써, 현재 청소년들의 실제 이용행태를 반영한 효과적인 보호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도입 이후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온 현행 청소년보호 규제체계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기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유형 서비스에서의 청소년보호 문제를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위험기반접근법을 적용한 차등적 규제 도입은 청소년 이용이 많고 위험도가 높은 서비스에는 강화된 책임을, 그렇지 않은 서비스에는 적정 수준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청소년 보호가 가능한 균형점을 제시하고 있다. 사전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은 청소년 피해 발생 후 대응과 회복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온라인 공간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높여 디지털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25년도 업무계획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이행결과 제출·운영실태 점검 근거마련(정보통신망법 개정), 신규 서비스 출시 前 청소년 유해성 사전영향분석·결과제출의무 도입 검토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1 장 서 론

제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국내 청소년보호 정책은 사후적 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급변하는 온라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국의 온라인안전법, EU의 디지털서비스법 등이 도입한 사전 위험평가 제도와 같은 예방적 조치의무 부과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영국 온라인안전법, 유럽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에서 도입한 사전위험평가 제도(risk assessment)는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청소년보호를 고려하도록 하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했다. 이러한 사전 예방적 접근법은 문제가 발생한 수 대응하는 것보다 청소년보호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어, 유럽연합과 영국을 중심으로 초대형 플랫폼 사업자(특히, 청소년의 이용이 높은 소셜미디어 사업자)에게 사전적 위험평가를 통한 예방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규제는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와 격차가 있어, 연구를 통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서비스의 특성과 청소년 이용 비중, 위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정교하고 맞춤형인 규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행 매출액 10억원, 이용자 수 10만명으로 정한 일률적인 기준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특성을 가진 기존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일부 사업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고, 아동·청소년에게 영향력이 큰 사업자에게는 책임있는 대응을 요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규제 트렌드인 위험 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을 반영하여, 서비스 영향력과 규모에 따른 차등적 책무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청소년보호와 함께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잡힌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다양한 서비스 특성을 고려할 때,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청소년보호 업무의 적절성과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하는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청소년보호계획 수립' 의무만 부과한 채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여부 등의 보고 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있어, 청소년 보호

업무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자의 자율적 보호조치 이행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화와 같은 투명성 메커니즘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자율적이지만 실효성 있는 청소년보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5년도 업무계획에 사업자의 의무이행결과 제출, 운영실태 점검 근거마련(정보통신망법 개정), 신규 서비스 출시 前 청소년 유해성 사전영향분석 및 결과제출 의무 도입에 대한 검토를 계획했으며, 이를 위한 정책자료를 지원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실효적으로 국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책무 강화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보호업무 자율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아동·청소년보호 활동에 대한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다음으로 국내·외 청소년보호정책의 추진동향을 분석하여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청소년유해성 평가의 프로세스·기준·관리방안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업자 자율의 사전적 위험예측 및 예방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제 2 장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운영 현황

제 1절 온라인플랫폼의 청소년보호 운영 현황 분석

1.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에 따른 청소년보호활동 자율이행률 분석

가. 효과분석 개요 및 방법론

1) 분석목적 및 대상

본 연구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보호조치 이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정 의무사업자와 비지정의무사업자(대조군)의 청소년보호조치 이행 수준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국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사업자(이하 '지정의무사업자') 중 144개 사업자와 비지정의무사업자(이하 '대조군') 60개로, 총 204개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이다. 지정 의무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가 있는 국내 사업자로, 일정 규모 이상(이용자수 10만명 이상, 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된다. 대조군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가 없는 글로벌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로 구성하였다.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수와 매출액을 보유한 사업자는 모두 지정의무 대상자에 포함되므로, 국내 사업자 중에서 유사한 규모의 대조군을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글로벌 이용자 규모가 월평균 이용자수 100만 이상, 회원수 1천만 이상, 또는 누적 다운로드 수 500만 이상인 사업자, 그리고 국내 이용자가 별도의 기술적 조치(VPN 사용, 계정 우회 등) 없이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조군으로 선정했다.

본 연구는 콘텐츠 게재에 관한 통제권 정도가 온라인플랫폼의 청소년보호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콘텐츠 제작과 게재에 대한 관리책임을 서비스 제공자가 가지는 서비스(이하 '제공자 관리형 서비스')와 콘텐츠 제작과 게재에 대한 일차적 관리 책임을 사용자가 가지는 서비스(이하 '사용자간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대상을 선정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지정의무사업자는 제공자 관리형 서비스 87개, 사용자간 서비스 57개였으며, 대조군은 제공자 관리형 서비스 35개, 사용자간 서비스 25개로 총 60개였다.

2) 분석프레임워크 및 측정지표

본 연구는 청소년보호조치를 ① 콘텐츠 관리 정책, ② 유해정보 접근관리, ③ 청소년 권리 강화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세부 측정지표를 설정하여 총 7개 항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였다. 모든 측정지표는 이진 변수(1=이행, 0=미이행)로 코딩하였다.

① 콘텐츠 관리 정책 (1개 항목)

청소년보호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영역으로, 이용약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콘텐츠 정책 등에 청소년유해정보 관리 계획 및 청소년보호 계획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측정한다.

측정 시 주의사항으로, 아동성착취물 등 명백한 불법정보는 제공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약관에 포함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청소년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정보(예: 폭력, 자해, 음주, 도박 등)에 대한 별도의 관리 정책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② 유해정보 접근관리 (4개 항목)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절차적 조치를 평가하는 영역으로, (a) 유해콘텐츠 차단, (b) 연령등급 표시, (c) 성인인증 절차, (d)유해어 검색 차단 등 4가지 항목을 측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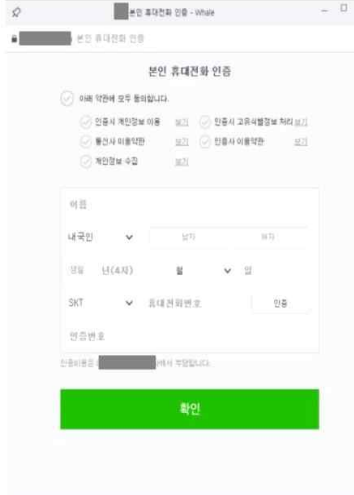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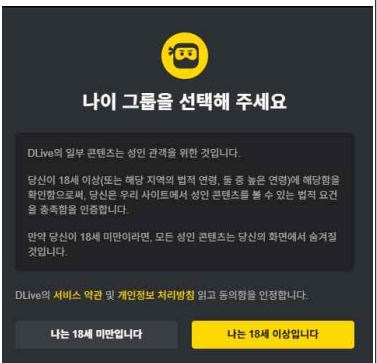

유해 콘텐츠 차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성인용품, 성인화상채팅 광고, 담배, 주류 등)이 청소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지 평가하는 항목으로, 연령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콘텐츠를 볼 수 없도록 불러 처리나 접근 제한이 적용되는지 확인했다.

연령등급 표시는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 19금 등의 연령등급을 사전에 표시하여 이용자에게 주의를 주는지 평가했다.

성인인증 절차는 이용자가 성인등급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성인인증을 거쳐야 하는지 평가했다. 비로그인 또는 19세 미만 계정으로 성인 콘텐츠 접근 시 차단되는지 확인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간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위한 청소년보호 업무 안내서'는 성인인증시에 신뢰할 수 있는 인증수단(예: 휴대폰 인증, 디지털ID 등 제3자 독립 인증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나,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와 다른 신원관리

체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인증수단의 신뢰성 정도는 이행률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어떠한 확인절차 없이 온전하게 사용자가 성인 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기입식 인증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는 성인인증 조치가 이뤄져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림 2-1] 온라인플랫폼의 청소년 연령인증의 사례

인증 방식	사례	
제3자 인증 방식	 	
자기 기입식 인증 방식	 	

유해어 검색 차단은 청소년유해정보가 검색을 통해 노출되지 않도록 금칙어 또는 청소년유해어를 적용하여 검색을 제한하는지 평가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단어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청소년을 구분하는 기준이 나이인 만큼 나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예: RG-18, +18, 19금, +16 등)와 명백하게 성적 유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음란물 관련 키워드(예: XXX, 포르노, X-rated, sex toy, vibrator, womanizer, NSFW 등) 중 일부라도 유해어로 검색차단을 적용했는지를 평가했다.

③ 청소년 권리 강화 (2개 항목)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권리를 보장하고 유해정보에 대한 적극적 대응 수단을 제공하는지 평가하는 영역으로, (a) 청소년전용공간 제공여부와 (b) 청소년유해정보 신고기능 마련 여부 등 2가지 항목을 측정했다.

청소년전용 공간은 청소년의 안전한 정보접근 환경 제공을 위해 청소년만을 위한 별도 섹션이나 전용 서비스를 운영하는지 평가했다. 이는 청소년을 단순히 배제하는 정책(예: 성인 전용 서비스)이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큐레이션된 콘텐츠나 별도 공간을 제공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청소년유해정보 신고기능은 이용자가 청소년유해정보를 발견했을 때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전용 기능이 마련되어 있는지 평가했다. 아동성착취물이나 저작권 위반 등 명백한 불법 정보 신고 기능, 단순히 선호하지 않는 콘텐츠를 신고하는 기능은 제외하고, 청소년에게 적절하지 않은 콘텐츠가 연령제한 없이 제공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의 존재 여부를 확인했다.

<표 2-1> 온라인 플랫폼 보호조치 이행현황 분석범위

구분	분석내용	코딩
콘텐츠 관리 정책	① 이용약관, 커뮤니티 정책, 콘텐츠 관리 정책 등에 청소년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정책수립 및 공지 여부 (이진화 1, 0)

유해정보 접근관리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청소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는가?	기능 적용 여부 (이진화 1, 0)
	②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19금 등 청소년유해정보 표시 기능을 적용하고 있는가?	기능 적용 여부 (이진화 1, 0)
	③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성인인증 등 접근제한 절차를 마련하였는가? ※ 비로그인 또는 13세~19세미만 계정으로 성인 콘텐츠 이용 시 접근차단	기능 적용 여부 (이진화 1, 0)
	④ 청소년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유해어 검색을 제한하고 있는가?	기능 적용 여부 (이진화 1, 0)
청소년 권리 강화	① 청소년만을 위한 별도 섹션이나 전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가?	제공 여부 (이진화 1, 0)
	②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신고기능을 마련하고 있는가? ※ 일반적인 불법정보나 불만신고가 아닌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신고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기능 적용 여부 (이진화 1, 0)

3) 서비스 유형분류 및 표본 구성

본 연구는 콘텐츠 게재 및 관리에 대한 통제권의 정도가 청소년보호조치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를 콘텐츠의 제작과 게재에 대한 관리 책임의 범위에 따라 '제공자 관리형 서비스'와 '사용자간 서비스'로 구분했다.

제공자 관리형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의 제작·게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게재되는 콘텐츠에 대한 관리 권한을 온전히 보유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사용자는 게재된 콘텐츠와 상호작용하되, 다른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은 구매, 댓글, 선호 표시 등으로 제한된다. 쇼핑·아이템·물품거래, 웹툰·웹소설, 음악·음원 사이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용자간 서비스는 사용자가 콘텐츠를 제작·게재하여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하고 사용자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콘텐츠를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메신저/SNS/블로그, 개인방송, 랜덤채팅, 커뮤니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표 2-2> 콘텐츠 통제권에 따른 분석대상 온라인플랫폼의 유형·특성

구 분	서비스 특성	사례
제공자 관리형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제공자가 게재되는 콘텐츠에 대한 관리 권한을 온전히 보유함 - 사용자는 게재된 콘텐츠와 상호작용하고 다른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은 구매, 댓글, 선호표시 등으로 제한되는 서비스 	쇼핑·아이템·물품거래/웹툰·웹소설/음악음원
사용자간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가 콘텐츠를 게재·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서비스 - 서비스제공자는 사용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하고 사용자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콘텐츠를 사후적용 관리하는 서비스 	메신저/SNS/블로그, 개인방송, 랜덤채팅, 커뮤니티

이러한 분류체계에 따라,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이 된 대조군 서비스는 각각 '제공자 관리형 서비스(35개)'와 '사용자간 서비스(25개)'로 총 60개 서비스였으며, 지정의무대상서비스는 '제공자 관리형 서비스(57개)'와 '사용자간 서비스(87개)'로 총 144개 서비스였다.

<표 2-3> 콘텐츠 통제권 정도에 따른 분석대상 서비스 현황

구분	제공자 관리형	사용자간 서비스	합계
지정의무사업자	87개	57개	144개
대조군	35개	25개	60개
합계	122개	82개	204개

나. 청소년보호활동 이행현황 비교 분석

1) 전체 이행률 비교 및 통계적 검증

〈표 2-4〉 청소년보호활동 전체 이행현황 분석표

유형	콘텐츠 관리 정책	유해정보 접근관리				청소년 권리 강화	
	약관/ 정책 공지	유해 콘텐츠 차단	연령 등급 표시	성인 인증 절차	유해어 검색 차단	청소년 전용 공간	신고 기능
제공자 관리형 서비스 (n=35)	77.1%	37.1%	37.1%	28.6%	22.9%	2.9%	25.7%
사용자간 서비스 (n=25)	68.0%	36.0%	24.0%	40.0%	28.0%	0.0%	40.0%
대조군(n=60)	73.3%	36.7%	31.7%	33.3%	25.0%	1.7%	31.7%
제공자 관리형 서비스 (n=87)	94.3%	96.6%	93.1%	93.1%	42.5%	56.3%	69.0%
사용자간 서비스 (n=57)	91.2%	87.7%	61.4%	68.4%	61.4%	10.5%	100.0%
지정사업자 (n=144)	93.1%	93.1%	80.6%	83.3%	50.0%	38.2%	81.3%

분석 결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사업자와 대조군의 청소년보호조치 자율이행 수준은 전반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지정의무사업자 144개와 대조군 60개를 대상으로 7개 항목에 걸쳐 분석한 결과, 지정의무사업자가 모든 측정 항목에서 대조군보다 높은 이행률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정의무사업자의 7개 항목 평균 이행률은 75.2%로 나타난 반면, 대조군은 31.9%에 그쳐 43.3%p의 격차를 보였다. 항목별로는 청소년보호 정책 공지(93.1%

vs 73.3%), 유해 콘텐츠 차단(93.1% vs 36.7%), 연령등급 표시(80.6% vs 31.7%), 성인인증 절차(83.3% vs 33.3%), 유해어 검색 차단(50.0% vs 25.0%), 청소년전용 공간(38.2% vs 1.7%), 유해정보 신고 기능(81.3% vs 31.7%)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정의무사업자의 경우 7개 항목 중 4개 항목에서 80% 이상의 높은 이행을 달성했으며(정책 공지 93.1%, 유해 콘텐츠 차단 93.1%, 성인인증 83.3%, 신고 기능 81.3%), 연령등급 표시도 80.6%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대조군은 정책 공지 항목(73.3%)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40% 미만의 이행을 기록했으며, 특히 청소년전용 공간은 1.7%로 매우 저조했다. 이러한 현저한 차이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가 온라인 플랫폼의 청소년보호 활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여부가 청소년보호활동 이행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했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5> 청소년보호활동 이행률 통계적 검증결과

항목	지정의무사업자 (N=144)		대조군 (N=60)		χ^2	p-value	Cramér's V
	n	%	n	%			
콘텐츠 관리 정책							
약관/정책 공지	134	93.1%	44	73.3%	14.81	<.001***	.269
유해정보 접근관리							
유해 콘텐츠 차단	134	93.1%	22	36.7%	76.30	<.001***	.611
연령등급 표시	116	80.6%	19	31.7%	45.23	<.001***	.471
성인인증 절차	120	83.3%	20	33.3%	49.18	<.001***	.491
유해어 검색 차단	72	50%	15	25%	10.82	<.01**	.230
청소년 권리 강화							
청소년전용 공간	55	38.2%	1	1.7%	28.38	<.001***	.373
신고 기능	117	81.3%	19	31.7%	46.86	<.001***	.479

* p<.05, ** p<.01, *** p<.001

위의 표에서 보듯이, 전체 7개 분석항목 모두에서 지정의무사업자가 대조군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이행률을 보이는 것으로 판별됐다.

콘텐츠 관리 정책 영역의 약관/정책 공지($\chi^2=14.81$, $p<.001$, Cramér's $V=.269$)는 비록 효과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았으나, 지정의무사업자가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행률이 높았다. 지정의무사업자 93.1%, 대조군 73.3%로 19.8%p의 이행률 격차가 발견됐다. 대조군도 73.3%의 비교적 높은 이행률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 격차가 다른 항목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

지정의무사업자와 대조군 간의 청소년보호활동 이행정도의 차이는 유해정보 접근관리 영역에서 두드러졌다. 특히, 유해 콘텐츠 차단($\chi^2=76.30$, $p<.001$, Cramér's $V=.611$) 항목은 지정의무사업자 93.1%, 대조군 36.7%로 56.4%p의 격차를 보였으며, Cramér's V 를 보더라도 큰 효과 크기가 나타났다. 성인인증 절차($\chi^2=49.18$, $p<.001$, Cramér's $V=.491$)와 연령등급 표시($\chi^2=45.23$, $p<.001$, Cramér's $V=.471$) 역시 중간에서 큰 효과 크기를 보였으며, 각각 50.0%p와 48.9%p의 격차를 기록했다. 유해어 검색 차단($\chi^2=10.82$, $p<.01$, Cramér's $V=.230$) 항목은 상대적으로 효과 규모는 작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지정의무사업자 50.0%, 대조군 25.0%로 25.0%p의 격차를 확인했다. 그러나 양 집단 모두 50% 수준 이하의 이행률을 보여, 이 영역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적 개입과 기술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청소년 권리 강화 영역에서는 신고 기능($\chi^2=46.86$, $p<.001$, Cramér's $V=.479$)이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를 보이며 49.6%p의 격차를 나타냈다. 지정의무사업자 81.3%, 대조군 31.7%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전용 공간($\chi^2=28.38$, $p<.001$, Cramér's $V=.373$)은 지정의무사업자 38.2%, 대조군 1.7%로 36.5%p의 격차를 보이며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를 나타냈다. 이는 전체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청소년전용 공간 제공에 있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이 일정한 효과를 발휘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지정의무사업자의 이행률도 38.2%로 다른 항목에 비해 낮아, 서비스 구조적 특성이나 기술적 구현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가 온라인플랫폼의 청소년보호조치 이행에 실질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줬다. 특히 유해정보 접근 관리 영역(차단, 연령등급 표시, 성인인증)에서 중간 이상의 효과 크기를 보이며, 제도가 의도한 핵심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7개 항목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확인되었다는 점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가 전반적인 청소년보호 활동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결과이다.

2) 서비스 유형별 세부분석

① 제공자 관리형 서비스

제공자 관리형 서비스의 경우, 7개 분석 항목 모두에서 지정의무사업자가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청소년보호 활동을 이행하고 있음이 발견됐다. 청소년전용 공간을 제외한 항목에서 유의미했던 전체 분석결과와 달리, 제공자 관리형 서비스에서는 청소년전용 공간 항목에서도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했다($\chi^2=29.50$, $p<.001$, Cramér's $V=.492$).

콘텐츠 관리 정책 영역에서 지정의무사업자(94.3%)는 대조군(77.1%)에 비해 약관/정책 공지의 이행률이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chi^2=7.67$, $p<.01$, Cramér's $V=.251$). 다만, 약관이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서 이용자 연령기준이나 청소년 이용자 보호에 대한 항목이 포함된 비율은 대조군 사업자에서도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나,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으로 인한 정책적 효과 크기는 다른 유형의 보호활동 항목에 비해 작았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 효과는 유해정보 접근관리 영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지정의무사업자는 대조군에 비해 성인인증 절차(64.5%p), 연령등급 표시(56.0%p), 유해 콘텐츠 차단(59.5%p), 유해어 검색 차단(19.6%p)의 운영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 효과는 성인인증 절차 도입 여부에서 가장 컸다($\chi^2=54.84$, $p<.001$, Cramér's $V=.670$). 연령등급 표시($\chi^2=44.20$, $p<.001$, Cramér's $V=.602$)도 56.0%p의 격차로 큰 효과 크기가 확인되었으며, 유해 콘텐츠 차단($\chi^2=51.83$, $p<.001$, Cramér's $V=.652$) 역시 59.5%p의 격차로 중간 이상의 효과 크기를 나타냈다. 비록 유해어 검색 차단($\chi^2=4.15$, $p<.05$, Cramér's $V=.184$)은 효과 크기 면에서 상대적으로 작았으나, 지정의무사업자의 이행률은 대조군의 이행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았다.

청소년전용 공간 제공 비율은 지정의무사업자 56.3%, 대조군 2.9%로 53.4%p의 격차를 보였다($\chi^2=29.50$, $p<.001$, Cramér's $V=.492$). 제공자 관리형 서비스는 제공자가 콘텐츠를 직접 관리하는 서비스 특성상 청소년 전용 섹션이나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만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지정의무사업자들의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신고 기능의 운영여부에 있어서도 지정의무사업자들이 대조군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이행률을 보였다(43.3%p, $\chi^2=19.00$, $p<.001$, Cramér's $V=.395$).

<표 2-6> 제공자 관리형 서비스의 청소년보호활동 이행률 통계적 검증결과

항목	지정의무사업자 (N=87)		대조군 (N=35)		격차 (%p)	χ^2	p-value	Cramér's V
	n	%	n	%				
콘텐츠 관리 정책								
약관/정책 공지	82	94.3%	27	77.1%	+17.2	7.67	<.01**	.251
유해정보 접근관리								
유해 콘텐츠 차단	84	96.6%	13	37.1%	+59.5	51.83	<.001***	.652
연령등급 표시	81	93.1%	13	37.1%	+56.0	44.20	<.001***	.602
성인인증 절차	81	93.1%	10	28.6%	+64.5	54.84	<.001***	.670
유해어 검색 차단	37	42.5%	8	22.9%	+19.6	4.15	<.05*	.184
청소년 권리 강화								
청소년전용 공간	49	56.3%	1	2.9%	+53.4	29.50	<.001***	.492
신고 기능	60	69%	9	25.7%	+43.3	19.00	<.001***	.395

* $p<.05$, ** $p<.01$, *** $p<.001$

② 사용자 간 서비스

사용자 간 서비스의 경우, 7개 분석 항목 중 청소년전용 공간을 제외한 6개 항목에서 지정의무사업자가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청소년보호 활동을 이행하고 있음이 발견됐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신고 기능($\chi^2=41.86$, $p<.001$, Cramér's $V=.714$)으로, 60.0%p의 격차와 함께 매우 큰 효과 크기를 나타냈다. 지정의무사업자의 100.0% 이행률은 사용자 생성 콘텐츠 기반 서비스에서 청소년 유해정보 신고 체계가 필수적이며, 제도가 이를 완전히 정착시켰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유해 콘텐츠 차단($\chi^2=22.33$, $p<.001$, Cramér's $V=.522$)은 51.7%p의 격차로 큰 효과 크기를 보였다. 제공자 관리형과 유사한 수준

의 효과를 나타내며, 서비스 유형과 무관하게 접근 차단 기능이 핵심적으로 구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등급 표시의 경우 지정의무사업자의 이행률이 61.4%로 제공자 관리형(93.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사용자 생성 콘텐츠의 경우 실시간으로 연령등급을 자동 판정하고 표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더 어렵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정의무사업자의 이행률은 61.4%로 대조군 24.0%보다 현저하게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chi^2=9.72$, $p<.01$, Cramér's $V=.344$).

<표 2-7> 사용자간 서비스의 청소년보호활동 이행률 통계적 검증결과

항목	지정의무사업자 (N=57)		대조군 (N=25)		격차 (%p)	χ^2	p-value	Cramér's V
	n	%	n	%				
콘텐츠 관리 정책								
약관/정책 공지	52	91.2%	17	68%	+23.2	7.03	<.01**	.293
유해정보 접근관리								
유해 콘텐츠 차단	50	87.7%	9	36%	+51.7	22.33	<.001***	.522
연령등급 표시	35	61.4%	6	24%	+37.4	9.72	<.01**	.344
성인인증 절차	39	68.4%	10	40%	+28.4	5.84	<.05*	.267
유해어 검색 차단	35	61.4%	7	28%	+33.4	7.76	<.01**	.308
청소년 권리 강화								
청소년전용 공간	6	10.5%	0	0%	+10.5	2.84	>.05	.128
신고 기능	57	100%	10	40%	+60	41.86	<.001***	.714

* p<.05, ** p<.01, *** p<.001

성인인증 절차 이행률의 경우, 지정의무사업자와 대조군의 이행률 격차가 제공자 관리형(93.1% vs 28.6%)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으나, 지정의무사업자(68.4%)와 대조군(40.0%)의 이행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확인됐다($\chi^2=5.84$, $p<.05$, Cramér's $V=.267$). 사용자간 서비스의 경우 대조군에서도 일정 수준 성인인증을 구현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 책임자가 지정된 사업자에 비해서 그 이행률은 현저하게 낮았다.

유해어 검색 차단의 경우도 지정의무사업자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서 이행률을 보였다($\chi^2=7.76$, $p<.01$, Cramér's $V=.308$). 지정의무사업자는 유해어 검색 차단
의 경우 제공자 관리형 서비스(42.5%)보다 사용자간 서비스(61.4%)에서 이행률이 높게 나타
났는데, 이는 콘텐츠의 제작 및 게재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통제권이 약한 사용자간
서비스 특성상 유해어 검색 차단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정책 요구사항을 반영한 결과로 보
인다. 반면, 대조군의 경우 제공자 관리형 서비스(22.9%)보다 사용자간 서비스(28.0%)의 이
행률이 약간 높았다.

청소년전용 공간 제공여부와 관련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chi^2=2.84$, $p>.05$, Cramér's $V=.186$). 지정의무사업자 10.5%, 대조군 0.0%로 지정의무사업자의
이행률이 더 높았으나(+10.5%p), 양 집단 모두 매우 낮은 이행률을 기록했다. 특히 대조군
25개 사업자 중 청소년전용 공간을 제공하는 사례가 전무했으며, 지정의무사업자도 57개
중 6개만이 이를 제공하고 있어 절대 빈도가 매우 낮았다. 이처럼 표본 크기와 절대 빈도가
작아 실제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증거가 불
충분한 상황이다. 이는 사용자간 상호작용 기반 서비스에서 청소년만을 위한 별도 공간 운
영이 서비스 구조상 어렵거나, 이용자 분리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지정의무사업자조차 매우 낮은 이행률을
보여, 제도적 의무만으로는 이 영역의 개선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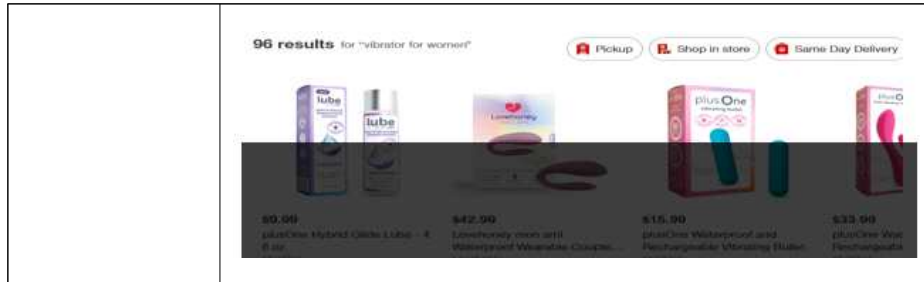
2. 유해정보 접근관리 현황 분석

가. 유해콘텐츠 접근 차단

청소년의 유해정보 접근관리와 관련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사업자는 서비스
유형에 상관없이 대조군 사업자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정의무사업자의 경우 이행률에 있어 제공자 관리형 서비스(96.6%)와
사용자간 서비스(87.7)에 차이가 있었다. 반면, 대조군의 경우 제공자 관리형 서비스(37.1%)
와 사용자간 서비스(36.0%)의 이행률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제도적
의무가 없을 경우, 콘텐츠 직접 관리가 가능한 제공자 관리형 서비스조차도 사용자간 서비
스와 유사한 수준의 낮은 관리에 머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2] 유해정보 차단 적용되지 않아 접근한 사례

구분	유해정보 차단이 적용되지 않아 로그인 없이 접근가능한 사례
<p>사용자간 서비스 (청소년유해정보 게시)</p>	 
<p>제공자 관리형 서비스 (청소년유해매체물 /상품 노출)</p>	



일반적으로 서비스 유형에 따라 유해 콘텐츠 차단 의 용이성에 차이가 있다. 제공자 관리형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를 직접 관리하므로 게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접근 차단이 가능하다. 반면, 사용자 간 서비스에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게시하는 유해정보의 특성상, 책임자가 유해정보를 식별하여 조치를 취하기까지 시간적 지연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제공자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한다면, 사용자간 서비스보다 청소년 유해정보 노출 가능성이 낮아야 한다. 그러나, 대조군 사업자의 유해정보 접근관리 현황을 보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도적 의무와 관리·감독의 노력이 취약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의 자발적 청소년 보호 활동은 서비스 구조적 용이성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저조한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지정의무사업자의 높은 이행률은 제도적 관리·감독 체계의 작동에서 기인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021년부터 지정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 활동 현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청소년 유해콘텐츠에 대한 시정 조치를 권고해왔다. 이러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체계는 단순한 이행률 향상을 넘어 청소년유해정보 접근 차단 조치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가 단순히 형식적 의무 부과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기술적·운영적 조치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특히 제도적 관리·감독 체계가 사업자의 자율적 이행을 촉진하는 핵심 기제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플랫폼의 청소년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나. 유해매체물 연령등급 표시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19급 등 연령등급 표시 기능은 지정의무사업자와 대조군 간 가장 큰 격차를 보인 항목 중 하나로, 지정의무사업자는 93.1%의 높은 이행률을 기록한 반면, 대조군은 34.3%에 불과해 58.8%p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현저한 격차는 국내 청소년보호법 체계에서 연령등급 표시가 핵심적인 규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지정의무사업자 내에서도 서비스 유형별 차이가 관찰되었다. 사용자간 서비스는 80.6%의 이행률을 보인 반면, 제공자 관리형 서비스는 61.4%로 19.2%p 낮게 나타났다. 이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의 다양성과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법적 책임으로부터의 면책을 확보하기 위해 연령등급 표시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내 법제는 연령등급 표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2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정보제공자에게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4조는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고,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한 전자적 표시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 8월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 고시(고시 제2015-17호)를 시행하여 표준화된 표시 방식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칼라매체에는 빨간색 테두리 안에 흰색 '19' 숫자를 표시한 원형 로고를, 흑백매체에는 검은색 테두리 안에 '19' 숫자를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간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위한 청소년보호 업무 안내서'는 청소년유해정보 제공 시 19세 미만 이용 불가 취지를 이용자가 사전에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표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정책적 체계 하에서 2025년 현재 국내 지정의무사업자들은 대부분 규정에 부합하게 '19' 또는 '성인' 표시를 통해 청소년유해정보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일부 사업자는 표시 방식에 있어 다소 상이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네이버블로그, 네이버밴드, 다음카페, 카카오스토리 등 4개 서비스의 경우 19급 표시 기능을 직접 적용하는 대신, 성인게시물을 내부 시스템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대안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청소년유해정보를 운영지침에 따라 발견 즉시 삭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함으로써, 연령등급 표시 없이도 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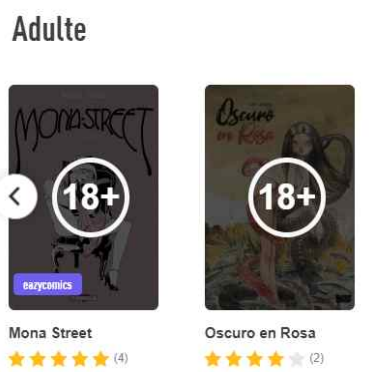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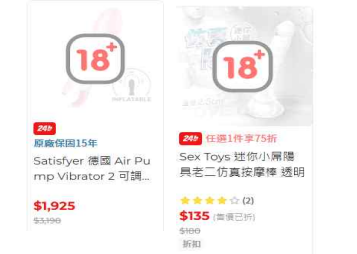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표시 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정의무사업자의 플랫폼에서 청소년유해정보 노출 가능성은 전반적으로 낮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청소년보호 활동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률 준수를 위한 안내서를 배포하는 등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제공해온 성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조군의 상황은 지정의무사업자와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대조군은 단순히 연령 표시 이행률이 낮은 수준(34.3%)에 머무는 것을 넘어, 연령표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그 방식과 효과성에 있어 국내 기준과 상당한 격차를 나타냈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대조군 사업자들은 연령표시의 현저성, 연령기준 설정 등에 있어 국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견됐다. 연령등급의 표시가 국내 표시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현저성이 떨어지는 문제, 구체적 연령기준 없이 접근제한 여부만을 표시하는 문제, 그리고 연령제한 마크 뒤로 제한되는 유해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 등을 확인했다.

연령등급을 표시하더라도 국내 표시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시각적 현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국내 기준이 요구하는 명확한 색상 대비와 표준화된 로고 대신, 사업자들의 임의적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확인됐다. 또한, 구체적인 연령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단순히 '성인용 콘텐츠(mature)' 또는 '사무실에서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NSFW)', '제한된 콘텐츠(限)' 등의 모호한 표현만을 표시하는 문제도 확인했다. 이는 청소년 이용자에게 명확한 연령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 형식적으로 연령등급을 표시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해당 정보의 내용을 온전하게 가리지 않아 그대로 노출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연령등급 표시가 실질적인 접근 통제 장치로 기능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는 국내 지정의무사업자들이 법적 규제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표준화된 청소년보호 체계를 구축한 반면, 대조군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내 지정의무사업자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표준화되고 실효성 있는 연령등급 표시 체계를 구축한 반면, 대조군은 각국의 상이한 법제와 자체 정책에 따라 일관성 없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그림 2-6] 연령등급 표시 부적정 사례

구분	연령등급 표시 부적정 사례	
연령등급을 표시하나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연령기준 없이 유해여부만을 표시		
유해정보 내용이 노출되는 경우		

다. 성인인증 절차

성인인증 등 접근제한 절차 마련 여부는 지정의무사업자 83.3%, 대조군 33.3%로 50.0%p의 격차가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가 실질적인 연령확인 시스템 구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지정의무사업자의 높은 이행률은 국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인증 시스템의 광범위한 도입에서 기인한다. 동 시행령은 이용자의 연령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사본 포함), 공인인증서, 아이핀/공공아이핀, 신용카드, 휴대폰 인증 등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3자 인증 방식은 독립적인 신원확인 기관을 통해 이용자의 연령을 객관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인 콘텐츠 접근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표 2-8〉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조

<p>제17조(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면(對面)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 확인 2.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5.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6.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이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송, 음성 자동응답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상대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 후 1년까지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가입된 회원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p>
--

대조군 사업자 중 연령인증 시스템을 도입한 경우는 주로 아시아권 국가(중국, 일본 등)의 서비스(예: 티몰, 쿠팡, 라쿠텐, 코미코) 들로, 이들 국가는 비교적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를 보유한만큼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등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인증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타 국가 출신 대조군 사업자들은 애플마켓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필 계정 확인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 방식의 핵심적 문제는 정부 발급 신분증이나 공인된 인증서

를 통한 실명 확인 절차가 부재한 국가 소속으로 표시하여 계정을 만들 경우, 청소년이 가입 시 생년월일을 허위로 입력하여 성인 계정을 생성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다. 유료 서비스 결제 시에는 성인 명의의 유효한 결제정보가 요구되어 일정한 장벽이 존재하나, 무료 서비스 이용 시에는 사실상 이용자의 자기 인증에 의존하는 구조가 된다.

이러한 자기 인증 방식은 청소년이 스스로 연령정보를 조작하여 유해정보 접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가 있더라도 접근이 가능한 구조는 오히려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유해정보로의 유입을 촉진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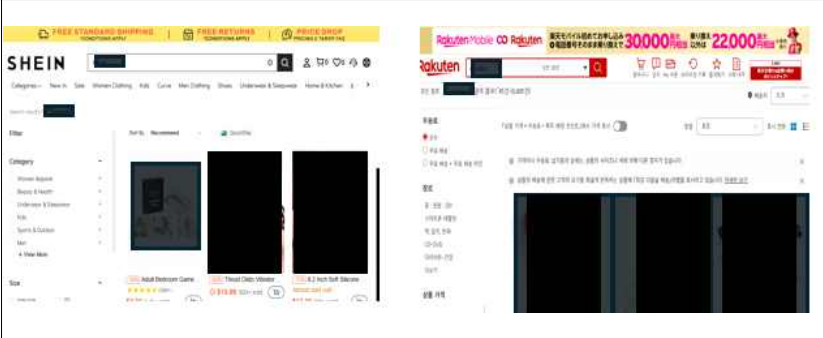

최근 영국 「온라인안전법」은 신뢰할 수 있는 인증 방식으로 얼굴사진 기반 연령 추정 소프트웨어 사용을 권고하였으며, 이번 조사에서도 일부 사업자(개인채팅 서비스인 Hinge.co 등)가 이를 도입한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 방식 역시 업로드된 얼굴사진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부재하고, 얼굴만으로 연령을 추정하는 기술의 정확성 등의 문제가 있어 여전한 과제가 될 수 있다.

라. 청소년 유해어 검색 차단

청소년유해어 또는 금칙어를 적용하여 유해정보 노출을 차단하는 기능은 지정의무사업자 42.5%, 대조군 22.9%로 19.6%p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격차이며, 양측 모두 50% 미만의 이행률을 기록해 개선의 여지가 큰 영역으로 판단된다.

청소년유해어나 금칙어를 적용하지 않으면, 로그인 없이도 누구나 청소년 유해어를 검색하여 검색결과를 추천받을 수 있다. 성인계정에만 청소년 유해어가 검색되도록 설정하더라도, 청소년 계정이나 비로그인시 청소년 유해어를 이용하여 검색하여 유해어 관련 검색어를 추천해주는 경우(예: 티몰, 징동닷컴, 타오바오, 쉬인)도 있었다.

[그림 2-7] 청소년유해어를 적용하지 않은 온라인플랫폼의 검색 결과

서비스명	이용자 수
비성인계정에서도 유해정보 검색 결과 노출	 <p>The image shows two screenshots of e-commerce websites. The left screenshot is from SHEIN, showing search results for 'Adult Pleasure Game' and 'Adult Pleasure Toy'. The right screenshot is from Rakuten, showing search results for 'Adult Pleasure Toy' and 'Adult Pleasure Game'. Both websites display adult-themed products and images, indicating that they do not filter out such content even for non-adult accounts.</p>
유해어 연관 검색어 추천	 <p>The image shows a screenshot of the Taobao website. The search bar contains the text 'sex toy'. Below the search bar, a list of search suggestions is displayed, including 'sex toy', 'sex toy for women', 'sex toy rose', 'sex toy men', 'sex toy for couples', 'sex toy for him', 'sex toy cleaner', 'sex toy for women rose', and 'sex toy lubes'. This indicates that the platform recommends related adult-themed search terms.</p>

3. 청소년 권리 강화 현황 분석

가. 청소년 전용공간 제공

청소년전용 공간 운영은 지정의무사업자와 대조군 간 가장 극적인 차이를 보인 항목이다. 지정의무사업자는 38.2%의 이행률을 기록한 반면, 대조군은 1.7%에 불과해 36.5%p의 격차를 나타냈다. 이는 청소년을 단순히 유해 콘텐츠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려는 국내 정책 방향이 실제 사업자의 행동 변화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대조군의 경우 일부 랜덤채팅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안전한 서비스 섹션을 구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청소년 전용공간 제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이

유는,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스템을 분리·운영하는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비용적 부담을 줄이고 법 위반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사업자들은 청소년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정의무사업자 내에서는 사용자간 서비스(38.2%)가 제공자 관리형 서비스(10.5%)보다 27.7%p 높은 이행률을 보였는데, 이는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의 특성상 연령대별 커뮤니티 분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청소년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청소년이 불법유해 콘텐츠에 노출될 가능성을 낮춘다는 의미는 있지만, 청소년들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한되는만큼 청소년의 권리를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권리 강화라는 측면에서, 청소년을 배제하는 방식보다는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나. 청소년 유해정보 신고 기능

청소년유해정보 전용 신고 기능 마련 여부는 지정의무사업자 69.0%, 대조군 25.7%로 43.3%p의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인 불법 콘텐츠 신고 기능과는 별도로 청소년유해정보를 특정하여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보호에 대한 사업자의 적극적 의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정의무사업자 중 제공자 관리형 서비스가 100%의 이행률을 달성했다는 것이다. 이는 콘텐츠 관리 책임을 명확히 지니는 제공자 관리형 서비스의 경우 신고 체계 구축이 청소년보호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용자간 서비스 역시 81.3%의 높은 이행률을 보여, 전반적으로 신고 기능이 가장 널리 도입된 청소년보호조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2절 온라인플랫폼의 청소년보호 정책 분석

1. 이용약관 및 정책 상 청소년보호 관련 명시 현황

이용약관 및 커뮤니티 정책 등에 청소년보호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비율은 지정의무사업자가 93.1%, 대조군이 73.3%로 나타나 19.8%p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지정의무사업자의 경우 법적 의무에 따라 청소년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공개하는 관행이 정착되었음을 시사한다. 대조군 역시 70%를 상회하는 이행률을 보여 청소년보호 정책 공개가 글로벌 온라인플랫폼에서 가장 기초적인 청소년보호조치의 일반적인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비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정의무사업자 중 제공자 관리형 서비스는 94.3%, 사용자간 서비스는 91.2%로 유사한 수준의 이행률을 보였으며, 제공자 관리형 서비스가 3.1%p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조군에서는 제공자 관리형 서비스가 77.1%로 사용자간 서비스(68.0%)보다 9.1%p 높은 이행률을 나타냈다. 흥미로운 점은 지정의무사업자와 대조군 모두 제공자 관리형 서비스의 정책 공개율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는 콘텐츠에 대한 직접적 통제권을 보유한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 관리 책임을 더욱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다만 지정의무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유형 간 격차가 3.1%p에 불과한 반면, 대조군은 9.1%p의 격차를 보여, 법적 의무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청소년보호 정책 수립을 보편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이행률 수치를 넘어 정책의 내용적 측면에서 대조군에 속하는 사업자들은 청소년보호정책의 질적 측면에서 한계가 확인되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제도의 실효성을 측정하기 위해 ① 연령제한 명시 여부, ② 구체적 실행방안 명시 여부, ③ 피해접수 및 구제 안내 명시 여부의 세 가지 차원에서 대조군의 이용약관과 정책에 대한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9〉 청소년보호 정책의 내용적 구성요소 비교

구분	연령제한 명시	구체적 실행방안 명시	피해접수·구제 안내 명시
대조군 전체	73.3%	10.0%	18.3%
- 제공자 관리형	77.1%	2.9%	5.7%
- 사용자간 서비스	68.0%	20.0%	36.0%

대조군 사업자의 이용약관과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서 공개한 청소년보호에 관한 계획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명시한 경우는 10.0%에 불과했으며, 피해접수 및 구제 안내를 제공하는 경우는 18.3%에 그쳤다. 이는 대조군의 청소년보호 정책이 대부분 형식적 연령제한 선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실질적인 보호조치와 피해구제 체계를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비스 유형에 따른 극명한 차이이다. 제공자 관리형 서비스의 경우 77.1%가 연령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실행방안 명시는 2.9%, 피해구제 안내는 5.7%에 불과해 청소년보호 정책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용자간 서비스는 연령제한 명시율은 68.0%로 다소 낮으나, 구체적 실행방안 명시(20.0%)와 피해구제 안내(36.0%)에서는 제공자 관리형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의 예측 불가능성과 법적 리스크로 인해 사용자간 서비스 플랫폼이 더 적극적인 청소년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사용자간 서비스조차도 구체적 실행방안과 피해구제 안내를 제공하는 비율이 각각 20.0%와 36.0%에 그쳐, 대조군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청소년보호 정책이 부족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지정의무사업자의 청소년보호정책 특성

국내 지정의무사업자 청소년보호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일반 이용약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콘텐츠 정책과 분리된 독립적인 '청소년보호정책' 문서를 별도로 마련한다는 점이다. 대조군의 경우 청소년 관련 내용이 일반 약관의 일부 조항으로 산재되어 있거나 불법 콘텐츠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다뤄지는 것과 달리, 지정의무사업자는 청소년보호를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청소년보호가 일반적인 불법정보 관

리나 약관 준수와는 구별되는 특수한 정책적 고려를 요구하는 영역임을 명시적으로 보여 준다.

청소년보호정책의 내용적 구성 측면에서도, 국내 지정의무사업자들이 대조군 사업자들 보다 체계적이다. 일반적으로 국내 지정의무사업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간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위한 청소년보호 업무 안내서'에 기반하여 표준화 되고 체계적인 청소년보호정책을 수립·공개하고 있다. 동 안내서는 청소년보호계획에 정책 수립 및 교육, 접근 제한 및 관리, 피해 구제, 책임자 및 담당자 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따라 지정의무사업자들은 예방-관리-구제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보호를 단편적 조치가 아닌 예방부터 사후 구제까지 연결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설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방-관리-구제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청소년보호정책을 수립하는 목적은 지정의무사업자들에게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천명하고, 관련 법률 준수와 함께 사업자의 책임을 서비스 운영 전반에 내재화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표 2-10>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위한 청소년보호 업무 안내서' 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의 권고사항

구분	내용
계획수립 및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보호계획은 매년 상반기 내에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수립(혹은 개선, 현행화) ·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 화면에 공지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보호조치 근거 법령 안내 · 인증장치 등 기술적 조치에 대한 정보 안내
청소년보호를 위한 노력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보호 관련 법령 및 제재기준, 유해정보 발견시 대처 방법, 위반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절차 등 내부 교육 및 컴플라이언스 노력 안내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고충처리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자 지정 및 신고 접수 사실 고지 ·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담당자와 연락처 정보 제공 · 청소년유해매체물 확인시 제재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안내
청소년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자 및 담당자의 정보와 연락처
기타 청소년보호 활동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청소년보호 활동에 관한 사항 안내

특히 주목할 점은 구체적 실행방안이 명시된다는 것이다. 단순히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선언적 목표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증장치 사용, 필터링 시스템 적용, 연령등급 표시 체계, 콘텐츠 모니터링 절차 등 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실무자에 대한 정기적 교육 시행, 내부 관리 프로세스 구축 등 조직적 관리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는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실효성을 담보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또한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상담 및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를 명확히 공개한다. 이는 청소년과 보호자가 문제 발생 시 구체적으로 어디에 연락하여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명시함으로써, 정책이 단순한 문서를 넘어 실제 작동 가능한 체계임을 보여준다.

3. 비지정의무사업자의 청소년보호정책 특성

대조군의 청소년보호 정책은 지정의무사업자와 비교할 때 내용의 범위, 구체성, 체계성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대조군 사업자들은 별도의 독립적인 '청소년보호정책' 문서를 공개하지 않으며, 청소년 관련 내용은 주로 일반 이용약관의 일부 조항으로 다뤄지거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나 콘텐츠 정책에 제재 대상이 되는 콘텐츠 유형이 명시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대조군의 청소년 관련 약관 조항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서비스 이용 가능 연령을 선언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13세, 16세, 18세 등의 특정 연령 기준을 제시하고, 해당 연령 미만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No one under 13 is allowed to use or access the Services. ... you must be at least 18 years old to view mature content"(Reddit), "Our services are restricted to users who are 16 years of age or older"(Tappytoon) 등의 문구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연령제한 조항은 법적 면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연령 확인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미성년자의 접근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는다.

구체적 실행방안을 명시한 소수의 사례에서도 그 수준은 제한적이다. 일부 플랫폼은 미성년자 계정 발견 시 조치를 명시하고 있는데, "If we have actual knowledge that you are under the age of 13, we will cease providing the Services to you and delete your account

and your data"(Snapchat)와 같이 사후적 계정 삭제 조치를 언급하는 수준이다. Dailymotion의 경우 "Dailymotion has elaborated rules and tools aimed at protecting its Visitors and, in particular, young audiences, from videos which may offend their sensibilities"라고 명시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칙과 도구를 마련했다고 언급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도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부족하다. 일부 플랫폼은 "We use a combination of automated systems, user reports and a team of moderators to monitor and review accounts and content"(bumble)와 같이 자동화 시스템과 신고, 모더레이터를 활용한다고 명시하나, 청소년 유해정보에 특화된 체계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콘텐츠 관리 시스템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다.

비교적 체계적인 사례로는 Viber를 들 수 있다. Viber는 "To protect our youngest users, we ask you for your age during registration"이라고 명시하며 가입 시 연령 확인을 실시하고, 18세 미만 이용자에 대해서는 "You won't see ads intended for a mature audience", "You cannot use Viber Dating, Viber Business Accounts, Viber Payments until you reach 18"와 같이 특정 기능과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구체적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의 실행방안을 명시한 사례는 대조군 중 극소수에 불과하며, 전체 대조군의 10.0%만이 이러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청소년보호 체계의 미흡함을 드러낸다.

더욱 주목할 점은 대조군의 청소년보호 정책이 주로 아동성착취물(Child Sexual Abuse Material, CSAM) 등 명백한 불법정보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용약관에서 청소년 관련 콘텐츠를 언급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아동성착취에 특정하여 금지 조항을 명시하는 데 그친다. 이는 미국의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COPPA)이나 각국의 아동성착취물 관련 형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해석된다.

이러한 접근의 핵심적 문제는 불법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콘텐츠, 즉 폭력성 콘텐츠, 도박 관련 정보, 음주·흡연 조장 정보, 자살·자해 관련 정보 등에 대한 관리 체계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지정의무사업자가 유해정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각 유형별 관리 방안을 명시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대조군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명백한 불법정보에만 정책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보호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소극적 태도를 반영한다.

피해접수 및 구제 안내 측면에서도 대조군은 제한적인 수준을 보인다. 전체 대조군의 18.3%만이 피해구제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유해정보와 불법정보를 구분하지 않거나 포괄적인 약관 위반등에 관한 신고 기능의 일환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We encourage you to report content or conduct that you believe violates these Terms"(Reddit) 등의 안내는 일반적인 약관 위반이나 계정 도용에 대한 신고를 안내하는 것으로, 청소년 유해정보에 특화된 신고 체계라고 보기 어렵다.

일부 플랫폼은 부적절한 콘텐츠 신고를 안내하고 있으나, 그 범위와 처리 체계는 불명확하다. "We encourage you to report any inappropriate Member Content or misconduct"(eHarmony), "Please report abuse by clicking on the REPORT flow in the app"(Bumble), "You can report a user directly by tapping the three dots, selecting Report"(Hinge) 등의 안내는 신고 경로는 제시하지만, 신고 후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일부 서비스에서 청소년 자기보호 지침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역시 한계가 명확하다. QQ.com의 이용약관 제19조는 미성년자가 온라인 세계와 현실 세계의 차이를 인식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낯선 사람과의 만남을 자제할 것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안전한 이용 행위를 촉구하는 것일 뿐, 사업자가 플랫폼 내에서 어떤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는지, 청소년이 사업자에게 어떤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안내 내용도 해당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위험 요소가 아닌 일반적인 인터넷 안전 수칙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낮다.

대조군 내에서도 서비스 유형에 따른 차이가 관찰된다. 사용자간 서비스의 경우 구체적 실행방안 명시율(20.0%)과 피해구제 안내 제공률(36.0%)이 제공자 관리형 서비스(각각 2.9%, 5.7%)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의 예측 불가능성과 법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해석된다. 일부 대만·중국 기반 서비스는 이용약관 외에 아동청소년 보호 안내 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거나 음란물 콘텐츠 신고 링크를 게시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자의 구체적 조치사항, 책임자 지정,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명시는 부족하며, 일반적인 안전 가이드라인 제공 수준에 그친다.

영미권 서비스는 청소년보호를 주로 개인정보보호 맥락에서 접근하는 특징을 보인다.

"We do not knowingly collect any personal information from children under the age of 13"(Shein, Walmart) 등의 조항이 대표적이다. 이는 미국 아동개인정보보호법(COPPA: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이 요구하는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금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청소년보호정책 권고사항과 유사한 수준의 아동청소년보호 정책을 운영하는 Spotify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영국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와 EU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에 따른 초대형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 중 일부는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섹션을 별도로 마련하고, 콘텐츠 규정에 아동보호 관련 내용을 명시하며, '사이버 괴롭힘 예방 대사'를 지정하여 공개하는 등 비교적 체계적인 청소년보호 정책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시행된 영국의 온라인안전법과 EU의 디지털 서비스법 준수를 위한 것으로, 청소년보호법령에 의해 명확한 법적 의무가 부과될 경우 글로벌 플랫폼도 청소년보호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Spotify의 사례에서 책임자의 역할은 유해정보 관리보다는 사이버 괴롭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청소년 보호 책임 역할을 요구하는 국내의 청소년보호책임자에 비해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제3절 시사점

1.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의 효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보호조치 이행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7개 측정 항목 모두에서 지정의무사업자가 대조군을 상회했으며, 특히 유해정보 접근관리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연령등급 표시(58.8%p), 성인인증 절차(64.5%p), 유해 콘텐츠 차단(52.9%p) 등 실질적인 접근 통제 기능에서 50%p 이상의 격차가 나타난 것은 제도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이다.

청소년 권리 강화 측면에서도 청소년전용 공간(50.6%p)과 신고 기능(43.3%p)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여, 지정의무사업자들이 청소년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청소년유해어 검색 차단 기능의 경우 지정의무사업자(42.5%)와 대조군(22.9%)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이행률을 보여, 이 영역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적 관심과 기술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서비스 유형별로 강점과 약점이 다르게 나타나, 제공자 관리형 서비스와 사용자간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접근이 요구된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제도에 따른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청소년에 대한 접근법에 있다. 대조군 사업자들이 주로 연령제한을 명시하고 "해당 연령 미만은 이용할 수 없다"는 배제의 논리를 취하며, 미성년자가 이용할 경우의 책임을 보호자나 이용자 본인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보이는 반면, 지정의무사업자는 청소년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정책은 단순히 사업자가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는 내부적 컴플라이언스 문서가 아니라,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으며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안내하는 권리 고지의 성격을 갖는다.

예를 들어 지정의무사업자의 청소년보호정책은 "귀하의 자녀가 유해정보에 노출되었을 경우 다음 연락처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와 같이 청소년과 보호자가 능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반면 대조군은 "13세 미만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

습니다"라는 선언에 그치며, 만약 청소년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청소년보호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사업자에게 두는지, 이용자에게 두는지의 근본적 차이를 반영한다.

이러한 구조는 법적 요구사항과 정책적 지원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결과물로, 청소년보호 정책의 독립성, 체계성, 구체성, 권리 중심성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지정의무사업자의 청소년보호정책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명시하는 공적 약속의 성격을 갖는다.

<표 2-11> 지정의무사업자와 대조군의 청소년보호정책 운영 비교

구분	지정의무사업자	대조군
정책 문서 형태	독립적인 '청소년보호정책' 문서 별도 수립	일반 이용약관 내 일부 조항으로 산재
청소년에 대한 접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주체 ("권리 고지" 방식)	배제 대상 ("이용 금지" 방식)
정책 목적	예방-관리-구제의 종합적 접근	법적 면책 확보
보호 대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정보 + 청소년 유해정보 (음란물, 폭력, 자살·자해, 약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아동성착취물 등 명백한 불법정보 중심 • (일부)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중심
실행 체계	기술적·관리적 조치 구체화 및 내부 교육 및 프로세스 명시	선언적 수준, 실행방안 불명확
구체적 실행방안 명시	체계적 명시 (인증장치, 필터링, 모니터링 등)	대부분 미제시
책임 소재	사업자의 적극적 보호 책임	보호자·이용자의 자기책임 강조
핵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보호 기본원칙 선언 • 기술적·관리적 보호장치 안내 • 권로보호 방안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제한 선언 • 금지 및 제재대상 안내
책임자 지정	청소년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공개 (소속, 성명, 연락처)	대부분 미지정 (Spotify 등 초대형 플랫폼 일부 예외)
피해구제 안내	전담 인력 및 연락처 명시	일반 신고 기능 수준

콘텐츠 관리 정책 영역에서 나타난 차이는 정책 수립 여부를 넘어 정책의 내용적 완결성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지정의무사업자와 대조군 간 19.8%p의 정책 수립률 격차도 의미있지만, 더욱 본질적인 차이는 정책의 질적 수준에 있다.

지정의무사업자는 청소년을 위한 기본원칙부터 유해정보 보호장치, 개인정보보호, 피해상당 체계, 접근제한 범위, 활동 내역, 책임자 지정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보호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유해정보의 범위를 불법정보를 넘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하고, 각 단계별 구체적 실행방안과 책임 주체를 명시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반면 대조군은 연령제한을 명시한 73.3% 중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비율이 10.0%로 급감하며, 피해구제 안내는 18.3%에 불과하다. 대조군의 정책은 "+13세", "+18세" 등 연령 기준을 선언하는 데 그치며, 이를 어떻게 확인하고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대부분 제시되지 않는다. 실행방안을 명시한 소수 사례조차도 사후적 계정 삭제나 일반적인 콘텐츠 모더레이션 시스템 언급 수준에 머물며, 청소년 유해정보에 특화된 체계적 보호장치는 확인하기 어렵다. 피해구제 안내 역시 일반적인 약관 위반 신고 경로를 제시하는 수준이며, 청소년 유해정보 전용 신고 체계나 전담 처리 인력에 대한 안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청소년보호의 범위가 주로 아동성착취물 등 명백한 불법정보에 국한되어 있으며, 불법은 아니지만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관리 체계는 부재하다는 점이다. 대조군 제공자 관리형 서비스의 경우 구체적 실행방안 명시율이 2.9%에 불과한 것은, 콘텐츠에 대한 직접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청소년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의 핵심은 사업자 책임에 대한 인식에 있다. 지정의무사업자는 청소년보호를 사업자의 적극적 책임으로 규정하고 예방-관리-구제의 전 과정에서 구체적 조치를 명시하는 반면, 대조군은 연령제한을 통한 법적 면책이나 보호자·청소년의 자기책임을 강조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 또한 보호의 범위에서도 지정의무사업자가 포괄적 유해정보 개념을 채택한 반면, 대조군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명백한 불법정보에만 정책을 한정하고 있어, 청소년보호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법적·제도적 환경이 사업자의 청소년보호 활동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임은 Spotify 사

례에서도 확인된다. 영국과 EU의 명확한 법적 의무에 대응하여 Spotify가 체계적 청소년보호 정책을 수립한 것은, 적절한 법적 프레임워크와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경우 글로벌 플랫폼도 청소년보호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는 단순히 정책 수립률을 높이는 것을 넘어, 정책의 범위를 확장하고 내용의 구체성을 강화하며 실행 체계를 완결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2. 자율적 보호활동의 한계와 개선과제

본 조사의 분석 결과는 법적 의무 부재 시 청소년보호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대조군 사업자들의 청소년보호 활동 분석 결과는 법적 의무와 제도적 관리·감독이 부재할 경우 자율적 이행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청소년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대조군의 73.3%가 이용약관 등에 청소년보호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청소년보호 정책 공개가 글로벌 온라인플랫폼의 기초적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책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형식적 연령제한 선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구체적 실행방안 명시는 10.0%, 피해구제 안내는 18.3%에 불과해 실질적인 보호조치와 피해구제 체계를 결여하고 있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보호의 범위가 주로 아동성착취물 등 명백한 불법정보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폭력성 콘텐츠, 도박, 음주·흡연, 자살·자해 등 불법은 아니지만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관리 체계는 부재했다. 이는 대조군 사업자들이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최소한의 의무만을 준수하며 청소년보호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해정보 접근관리 측면에서도 제공자 관리형 서비스와 사용자간 서비스의 유해 콘텐츠 차단 이행률이 각각 37.1%, 36.0%로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제공자 관리형 서비스는 콘텐츠를 직접 관리하므로 게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접근 차단이 가능하나, 제도적 의무가 부재할 경우 서비스 구조적 용이성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저조한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연령등급 표시와 성인인증 절차 역시 각각 31.7%, 33.3%에 불과했으며, 표시 방식의 현저성 부족, 모호한 연령기준, 자기기입식 인증 등 질적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낮았다.

자율적 이행의 한계는 근본적으로 사업자 책임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다. 대조군 사업자들은 주로 "해당 연령 미만은 이용할 수 없다"는 배제의 논리를 취하며 미성년자가 이용할 경우의 책임을 보호자나 이용자 본인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보인다. 청소년전용 공간 제공이 1.7%에 불과한 것은 시스템 분리·운영의 비용 부담을 회피하고 청소년을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를 반영한다. 이는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청소년의 권리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반면 지정의무사업자는 청소년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고, 청소년보호를 사업자의 적극적 책임으로 규정하며 예방·관리·구제의 전 과정에서 구체적 조치를 명시한다. 청소년보호정책은 단순한 컴플라이언스 문서가 아니라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으며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안내하는 권리 고지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접근법의 차이는 청소년보호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사업자에게 두는지, 이용자에게 두는지의 근본적 차이를 반영한다.

법적·제도적 환경이 사업자의 청소년보호 활동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임은 영국과 EU의 명확한 법적 의무에 대응하여 일부 글로벌 플랫폼이 체계적 청소년보호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한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적절한 법적 프레임워크와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경우 글로벌 플랫폼도 청소년보호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의무 부과와 함께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제공,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유해정보의 범위를 불법정보를 넘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하고,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정책 방향이 요구된다. 또한 유해어 검색 차단처럼 양 집단 모두 이행률이 낮은 영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책적 관심과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며, 서비스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 3 장 인터넷플랫폼의 청소년보호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분석

제1절 해외 주요국의 온라인플랫폼상 청소년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동향 분석

1. 유럽

가.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서비스법(DSA)은 형식적으로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이지만, 아동·청소년을 단순한 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권리 주체로 규정하고,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원칙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보호를 단순히 유해 콘텐츠 차단 문제로 보지 않고, 플랫폼의 설계·추천·광고·데이터 처리 방식 전반이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문제가 발생한 뒤에 대응하는 사후적 조치가 아니라, 서비스 출시나 기능 변경 이전에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진단하고 제거하도록 하는 예방적 규제 체계로 볼 수 있다. EU DSA의 이러한 기조는 제28조의 미성년자 보호 조항과 제34조의 위험 평가 의무 조항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1) 아동·청소년 보호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조항

디지털서비스법(DSA)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핵심 조항은 제28조이다. 제28조는 미성년자가 접근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 프라이버시, 안전, 보안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일반 이용자 보호 규범의 일부로 간접적으로 포섭하던 기존의 접근법과 달리, 아동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이용자 집단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율하는 방식이다. 특히 제28조는 보호 조치가 단순한 형식적 대응에 그치지 않도록 ‘적절성’과 ‘비례성’을 기준으로 하여 플랫폼의 성격과 서비스 위험 수준에 맞는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프로파일링 기반 맞춤형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아동의 취약성을 활용한 상업적 데이터 처리와 알고리즘 설계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자 하고 있다. 이 조항은 DSA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가장 직접적이고 강하게 선언하는 규정으로서, 플랫폼의 자율이나 윤리적 노력에 맡겨져 있던 아동 보호를 명확한 법적 책임의 영역으로 전환시켰다. 아울러 제28조의 이행을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후술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정확한 시행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표 3-1> 온라인상 미성년자 보호

<p>제28조 온라인상 미성년자 보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내에서 미성년자의 높은 수준의 사생활, 안전 및 보안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비례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는 서비스 이용자가 미성년자임을 합리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인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Regulation (EU) 2016/679)」 제4조 제4호에 정의된 프로파일링에 기반한 광고를 자신의 인터페이스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이 조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가 서비스 이용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목적으로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강제해서는 아니된다. 4.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와 협의한 후,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가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행할 수 있다.

2) 사전 위험관리 체계를 통한 아동·청소년 보호 조항

DSA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사후 제재 중심의 규제로 한정하지 않고, 플랫폼의 구조적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는 체계 속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의 중심에는 제34조의 사전 위험성 평가 제도가 있다. 제34조는 월 4,500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s)을 대상으로 규정하며, 새로운 기능 도입 전에 '시스템적 위험 평가'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제34조는 '위험 평가' 대상이 아동·청소년

에게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이 평가는 불법 콘텐츠 확산, 기본권 침해, 선거 개입, 공중 보건 위협 등 플랫폼이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위협을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이 포괄적인 평가 항목 속에서 ‘아동 권리 침해’와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웰빙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필수적인 평가요소로 명시하고 있다. 즉, 아동·청소년 보호를 테러방지나 민주주의 수호와 동등한 수준의 최우선적 사회과제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제34조 위협평가는 단순한 요식 행위가 아니라 ‘식별-분석-완화-보고’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있다. 기업은 알고리즘이나 인터페이스가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위협을 식별하고 분석해야 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2025.07)이 제시한 ‘5C 위협 유형(콘텐츠, 접촉, 행동, 소비, 교차위협)’을 기준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평가 결과 위협이 확인되면 플랫폼은 제35조에 따라 즉각적인 ‘위험 완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아동 대상 프로파일링 광고 금지, 기본 설정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중독성 설계 제거, 그리고 성인물 등 고위험 콘텐츠로부터 아동을 분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연령 확인 기술 도입 등이 포함된다. 제37조와 제42조를 통해 독립 감사와 투명성 보고를 결합한 점 역시 아동·청소년 보호를 포함한 위험 관리 체계가 형식적 절차로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한다.

<표 3-2> 위험평가(Risk assessment)

<p>제34조 위협평가</p> <p>1.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및 알고리즘 시스템을 포함한 관련 시스템의 설계 또는 기능, 혹은 해당 서비스가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유럽연합 내의 어떠한 시스템적 위험도 성실하게 식별, 분석 및 평가하여야 한다.</p> <p>제공자는 제33조 제6항의 두 번째 문단에 언급된 적용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최소 매년 1회 이상 위험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에 따라 식별된 위협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능을 배포하지 전에 위협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험 평가는 해당 서비스에 특정된 것이어야 하고 시스템적 위협의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위협에 비례해야 하며, 다음의 시스템적 위협을 포함하여야 한다.</p> <p>(a) 해당 서비스를 통한 불법 콘텐츠의 확산</p>
--

(b) 기본권 행사에 미치는 실제적 또는 예측 가능한 부정적 영향. 특히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1조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 제7조에 명시된 사생활 및 가족생활의 존중, 제8조에 명시된 개인정보보호, 제11조에 명시된 미디어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포함한 표현 및 정보의 자유, 제21조에 명시된 비차별, 제24조에 명시된 아동 권리의 존중, 그리고 제38조에 명시된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권리

(c) 시민 담론, 선거 과정 및 공공 안보에 미치는 실제적 또는 예측 가능한 부정적 영향

(d) 젠더 기반 폭력, 공중 보건 및 미성년자의 보호, 그리고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웰빙에 대한 심각한 부정적 결과와 관련된 실제적 또는 예측 가능한 부정적 영향

2. 위험 평가를 수행할 때,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 제공자는 특히 다음의 요소들이 제1항에 언급된 시스템적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그 방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추천 시스템 및 기타 관련 알고리즘 시스템의 설계

(b) 콘텐츠 조정 시스템

(c) 적용되는 약관 및 그 집행

(d) 광고 선정 및 표시 시스템

(e) 제공자의 데이터 관련 관행

또한, 해당 평가는 제1항에 따른 위험이 서비스의 비정상적 이용이나 자동화된 악용을 포함한 서비스의 의도적인 조작, 그리고 불법 콘텐츠 및 약관에 위배되는 정보의 증폭과 잠재적으로 급속하고 광범위한 확산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여부와 그 방식을 분석하여야 한다.

평가는 특정 회원국에 국한된 경우를 포함하여, 특정 지역적 또는 언어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 제공자는 위험 평가의 입증문서를 위험 평가 수행 후 최소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집행위원회 및 설립지의 디지털 서비스 코디네이터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3) 광고 · 추천 · 설계 측면에서의 아동 · 청소년 보호 조항

DSA는 광고와 추천 시스템, 서비스 설계에 관한 일반 규율을 통해서도 아동 · 청소년 보호를 간접적이지만 구조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제26조와 제28조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상업적 조작 가능성을 억제하는 핵심적인 규범을 형성한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프로파

일링 기반 광고 금지는 아동의 행동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설계와 소비 유도를 제한함으로써, 아동을 상업적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제27조는 추천 시스템의 주요 작동 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과 비프로파일링 기반 추천 옵션을 요구함으로써, 알고리즘이 아동에게 과도한 몰입이나 중독을 유발하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를 제공한다. 이러한 조항들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특정 콘텐츠의 차단 문제로만 판단하지 않고, 플랫폼의 기본 설정, 노출 구조, 인터페이스 설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표 3-3> 광고·추천 관련 아동·청소년 보호 조항

<p>제26조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광고를 표시하는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는 각 개별 수신자에게 표시되는 각 특정 광고에 대해, 서비스 수신자가 다음 사항을 명확하고 간결하며 모호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해당 정보가 광고라는 사실 (b) 해당 광고가 누구를 대신하여 표시되는지 나타내는 자연인 또는 법인 (c) (b)호에 언급된 자와 다른 경우, 해당 광고 비용을 지불한 자연인 또는 법인 (d) 광고가 표시될 수신자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주요 매개변수에 관한 정보,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그 매개변수를 변경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 2.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는 서비스 수신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콘텐츠가 상업적 소통이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신자가 이 항에 따라 신고를 제출한 경우,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는 다른 서비스 수신자가 해당 콘텐츠가 상업적 소통이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3.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는 「규정 (EU) 2016/679 (GDPR)」 제9조(1)에 언급된 **특수 범주의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사용하여, 동 규정 제4조 제4호에 정의된 프로파일링 (profiling)에 기반한 광고를 서비스 수신자에게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p>제27조 추천 시스템 투명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천 시스템을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는 자신의 약관에 추천 시스템에 사용

되는 주요 매개변수와 서비스 수신자가 그 주요 매개 변수를 수정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옵션을 평이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명시해야 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주요 매개변수는 특정 정보가 왜 서비스 수신자에게 제안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여기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서비스 수신자에게 제안될 정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
- (b) 그러한 매개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이유

3. 서비스 수신자에게 표시되는 정보의 상대적 순서를 결정하는 추천 시스템에 대해 제 1항에 따라 여러 옵션이 제공되는 경우,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는 서비스 수신자가 선호하는 옵션을 언제든지 선택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그 기능은 정보가 우선순위화되어 표시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온라인 인터페이스 특정 섹션에서 직접적이고 쉽게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4) 절차 · 권리 보장 측면에서의 관련 조항

DSA는 아동 · 청소년 보호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절차적 권리 보장과 이용자 보호 장치도 함께 규율하고 있다. 제14조는 이용약관이 명확하고 이해 가능하게 작성되어야 함을 요구함으로써, 미성년자가 서비스 이용 조건과 위험을 인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불리한 약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제16조의 신고 및 조치 메커니즘은 불법 또는 유해 콘텐츠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 친화적인 신고 절차와 지원 체계 마련의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절차, 권리 보장 규정들은 아동 · 청소년 보호를 단순한 규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 환경에서 작동이 가능하도록 구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표 3-4> 절차·권리 보장 측면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조항

제14조 약관

1.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수신자가 제공한 정보와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에 대해 부과하는 모든 제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약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해당 정보에는 알고리즘 의사결정 및 인적 검토를 포함하여 콘텐츠 조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정책, 절차, 조치 및 도구에 관한 정보와 내부 불만처리시스템의 절차 규칙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명확하고, 평이하며, 이해하기 쉽고, 이용자 친화적이며, 모호

하지 않은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쉽게 접근 가능하고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2. 중개 서비스 제공자는 약관의 중요한 변경 사항을 서비스 수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중개 서비스가 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미성년자가 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중개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이용 조건 및 제한 사항을 미성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4. 중개 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언급된 제한 사항을 적용하고 집행함에 있어, 서비스 수신자의 기본권 및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명시된 기타 기본권과 자유를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여, 성실하고 객관적이며 비례적인 방식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5.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 제공자는 서비스 수신자에게 이용 가능한 구제 수단 및 구제 메커니즘을 포함한 약관의 요약본을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언어로, 간결하고 쉽게 접근 가능하며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6. 제33조의 의미에 따른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회원국의 공식 언어로 약관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 통지 및 조치 메커니즘

1.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라도 해당 개인이나 단체가 불법 콘텐츠라고 간주하는 특정 정보 항목이 자신의 서비스에 존재함을 통지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한 메커니즘은 접근하기 쉽고 이용자 친화적이어야 하며, 전적으로 전자적 수단에 의한 통지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메커니즘은 충분히 정확하고 적절하게 근거가 뒷받침된 통지의 제출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통지의 제출을 가능하게 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해당 개인이나 단체가 문제의 정보를 불법 콘텐츠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한 충분히 근거가 뒷받침된 설명
 - (b) 정확한 URL 또는 URL들과 같은 해당 정보의 정확한 전자적 위치에 대한 명확

한 표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콘텐츠 유형 및 호스팅 서비스의 구체적 유형에 맞추어 불법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추가 정보

(c) 통지를 제출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이름 및 전자우편 주소. 단, 「지침 2011/93/EU」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언급된 범죄(아동 성학대 등)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는 정보의 경우는 제외한다.

(d) 통지를 제출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 정보 및 그에 포함된 주장이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선의의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진술

3. 이 조에 언급된 통지는, 성실한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가 상세한 법률적 검토 없이도 관련 활동이나 정보의 불법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해당 특정 정보 항목과 관련하여 제6조(면책조항)의 목적상 실제지식 또는 인식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4. 통지에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의 전자적 연락처 정보가 포함된 경우,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부당한 지체없이 해당 개인 또는 단체에 통지 수신 확인을 발송하여야 한다.
5. 제공자는 부당한 지체없이 통지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해당 개인 또는 단체에 통지하고, 그 결정에 대한 구체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6.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언급된 메커니즘에 따라 수신한 모든 통지를 처리하고 해당 통지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결정을 시의적절하고, 성실하며, 자의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내려야 한다. 그러한 처리 또는 의사결정에 자동화된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제5항에 언급된 통지에 그러한 사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¹⁾

DSA 제28조(미성년자 보호)의 이행을 위해 2025년 7월 최종 발표된 가이드라인으로 설계 단계의 안전(Safety by Design)과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핵심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아동이 안전한지에 대해 증명할 책임은 기업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

1)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 Guidelines on measures to ensure a high level of privacy, safety and security for minors online (C/2025/5519)
<https://eur-lex.europa.eu/eli/C/2025/5519/oj/eng>

으며, 프로파일링 광고 금지와 중독성 설계 제거를 단순 권고가 아닌 DSA 제28조 준수를 위한 필수적인 이행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1) 적용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아동 전용 서비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플랫폼에 적용된다. 약관상 18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라도, 실질적으로 미성년자가 접근할 수 있다면 이 가이드라인의 규제 대상이 된다. 리를 피해려면 성인 인증을 통해 미성년자의 접근을 100% 완벽하게 차단해야 하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SNS와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2) 핵심의무

플랫폼 기업은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아동 권리 영향 평가’를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이 때 다음의 5C 위험 유형을 기준으로 잠재적 위험을 스스로 진단하고 관리할 의무를 진다. 여기서 5C 위험 유형이란 폭력, 자해, 섭식장애 조장 등 유해하거나 연령에 부적절한 정보에 노출될 위험인 ‘콘텐츠(Content)’, 성인이나 낯선 사람으로부터의 그루밍이나 사이버불링 등 원치 않는 연락으로 인한 ‘접촉(Contact)’, 아동 스스로가 혐오표현이나 가해 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행동(Conduct)’, 아동의 미숙함을 악용한 상업적 착취나 확률형 아이템 등 도박성 소비를 유도하는 ‘소비(Consumer)’, 그리고 알고리즘에 의한 유해 콘텐츠 증폭이나 중독성 설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 복합적 위험인 ‘교차위험(Cross-cutting)’을 의미한다.

<표 3-5> 아동에 대한 온라인 위험의 5C 유형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에 대한 위험				
위험범주	콘텐츠	행동	접촉	소비자
교차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적인 프라이버시, 안전 및 보안 위험 ·첨단 기술 위험 ·건강 및 웰빙에 대한 위험 ·오남용 위험 			

위험의 발현	혐오콘텐츠	혐오행동	혐오적 접촉	마케팅 위험
	유해 콘텐츠	유해행동	유해한 접촉	상업적 프로파일링 위험
	불법 콘텐츠	불법행동	불법적 접촉	재무적 위험
	허위조작정보	이용자 생성 문제 행동	기타 문제적 접촉	보안 위험

출처: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2025.10.10.), Guidelines on measures to ensure a high level of privacy, safety and security for minors online, pursuant to Article 28(4) of Regulation (EU) 2022/2065

3) 필수 이행 조치

이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선언적 규정을 넘어, 기업이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반영해야 할 구체적인 기능적 조치들을 명시하고 있다. 우선 '기본 설정의 보호(Privacy by Default)' 원칙에 따라 미성년자 계정은 가입 즉시 가장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모드가 기본값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낯선 사람의 DM 차단, 위치 정보 공유 비활성화, 프로필 비공개 등이 이용자의 별도 설정 조작 없이도 초기값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상업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제공하는 '프로파일링 기반 맞춤형 광고'는 전면 금지되며, 아동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무한 스크롤이나 자동 재생 등 이른바 '다크패턴(Dark Patterns)'이라 불리는 중독성 설계를 인터페이스에서 제거해야 한다.

아울러, 서비스의 위험도에 비례하는 '연령 확인(Age Assurance)' 기술 도입이 요구된다. 성인물 등 고위험 서비스에 대해서는 엄격한 '연령 인증'을 적용해야 하며, 일반 서비스의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의 '연령 추정' 기술을 도입하여 아동을 구분하고 보호해야 한다.

2. 영국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Bill)

가. 법안의 제정 배경 및 목적

영국 온라인 안전법은 2023년 10월 26일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현재는 법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감독기관인 Ofcom이 단계별 시행을 위한 세부 로드맵과 집행 지침을 마련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법의 시행 일정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우선 아동접근성 평가를 통해 자사 서비스가 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아동 접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아동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Ofcom은 2024년 10월 17일 온라인 안전법의 단계적 시행계획을 담은 업데이트된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12월 16일에는 온라인 안전 집행 가이드선(Online Safety Enforcement Guidance)을 발행하여 조사·집행 방식과 제재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아동접근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2025년 1월 16일 아동의 온라인 음란물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연령확인 사용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모든 사용자 간 서비스 및 검색 서비스는 3개월 이내에 아동접근성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특히 법 제81조에 따른 아동의 온라인 음란물 접근방지 의무가 2025년 1월 17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음란물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표시하는 플랫폼(이른바 Part 5 서비스)은 Ofcom의 지침을 충족하는 고도로 효과적인 연령확인 조치를 즉시 도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동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2025년 4월 24일 아동 보호 실무 강령이 의회에 상정되었고, Ofcom은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위해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위험평가 지침을 발표하였다. 아동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는 해당 시점부터 3개월 이내인 2025년 7월 24일까지 아동 위험성 평가를 완료해야 하며, 아동 안전 제도는 2025년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일부 일정에 따르면, 특정 서비스는 2025년 8월 7일까지 Ofcom에 위험평가 결과를 공개·통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후 2025년 7월 25일부터는 아동 보호 행동 강령(Protection of Children Codes of Practice)이 발표되어, 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서비스는 해당 행동 강령에 따른 아동 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림 3-1] 아동 위험성 평가 관련 로드맵

2024년 12월	2025년 1월	2025년 4월
<p>불법위험콘텐츠 실행강령(Illegal Harms Codes of Practice): 아동성착취와 남용(CSEA), 그루밍 등 온라인상 접촉을 통해 미칠 수 있는 해악적 행동을 포함해 불법 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행동 강령</p>	<p>고효율연령확인 시스템과 온라인안전법 제5장 의무에 대한 안내(Guidance on highly effective age assurance and Part 5 duties): 연령 추정(estimation) 또는 연령인증을 사용하여 포르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포르노사이트에 부과하는 책무</p>	<p>아동보호 행동강령(Protection of Children Codes of Pratice): 자살, 자해, 섭식장애 콘텐츠와 같이 성인에게는 합법적이지만 아동에게는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야기되는 해악 방지를 위한 행동 강령</p>

영국 온라인 안전법은 서비스 제공자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상당수의 영국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영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모든 범위 내 온라인 서비스에 적용된다. 이 법에서 ‘콘텐츠’란 공개적·비공개적 여부를 불문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전달되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서면 자료나 메시지, 구두 의사소통, 사진, 비디오, 시각적 이미지, 음악 및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포함한다. 규제 대상 서비스는 이용자가 콘텐츠2)를 생성·공유할 수 있는 사용자 간 서비스(소셜미디어, 사진·동영상 공유 서비스, 메시징 서비스, 온라인 게임 등3))와 검색 서비스, 그리고 음란물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표시하는 서비스로 구분된다. 이 때 생성형 AI 챗봇이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를 다른 이용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경우, 해당 챗봇은 사용자 간 서비스의 일부로 간주된다.

- 2) “콘텐츠”란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여 전달되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서면 자료나 메시지, 구두 의사소통, 사진, 비디오, 시각적 이미지, 음악 및 모든 종류의 데이터가 포함
- 3) 사용자가 챗봇에서 생성된 콘텐츠를 다른 이용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생성형 AI 챗봇이 포함된 서비스의 경우, 해당 챗봇은 사용자 간 서비스의 일부로 간주

〈표 3-6〉 온라인안전법 대상이 되는 인터넷 서비스

구분	서비스 특성
사용자 간 서비스	사용자 간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온라인 서비스 이미지, 비디오, 메시지, 댓글 등의 콘텐츠를 생성, 업로드 또는 해당 온라인 서비스의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 사용자 간 비공개 메시지 전송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포함
검색 서비스	검색 엔진을 포함하거나 포함하는 온라인 서비스 검색 엔진은 사용자가 두 개 이상의 웹사이트 및/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기타 콘텐츠 게재기능이 있는 서비스	서비스 제공자가 음란물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표시하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이 법의 수범대상은 영국 이용자가 서비스의 타겟 시장이거나 영국 이용자 수가 상당한 온라인 서비스로 정의되며, 여기서 ‘영국 이용자’란 영국에 거주하면서 웹사이트, 앱 또는 기타 온라인 서비스를 방문하거나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고, 계정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된다. 영국을 타겟 시장으로 삼았는지 여부는 서비스 디자인, 홍보·마케팅 방식, 수익 창출 구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이러한 요소 전반에서 영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영국이 타겟 시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안전법 가이드에서는 영국이용자는 영국 내 개인 또는 단체(조직)을 지칭하며, 계정생성 등의 등록을 하는 사람과 등록하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⁴⁾ 다만, ‘상당한 수의 이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기준은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은 이 법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4) <https://ofcomlive.my.salesforce-sites.com/formentry/RegulationChecker>

<표 3-7> 영국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영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영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홍보 또는 마케팅됩니다.
직접적으로(예: 구독이나 판매를 통해) , 또는 간접적으로(예: 영국 사용자, 개인 또는 조직을 포함한) 광고를 통해 영국 사용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합니다.
영국 사용자를 위해 맞춤화된 기능이나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국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거나 영국 연락처 주소 및/또는 전화번호를 제공합니다.
“이 법에서는 영국 사용자의 “상당수“가 얼마인지 명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영국 사용자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귀하의 판단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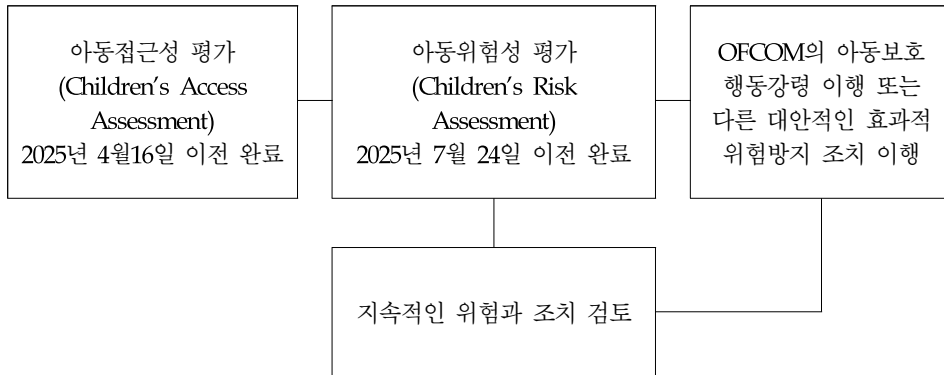
검색엔진⁵⁾의 범위에는 이용자가 웹사이트 및/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또는 기능 전반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특정 주제나 콘텐츠 유형에 초점을 맞춰 검색하는 소위 ‘수직(vertica)’ 검색 엔진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일부 웹사이트나 데이터베이스에 한정하여 학술논문만을 색인하는 검색 엔진이나, 여러 웹사이트 및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비교·제공하는 비교 웹사이트 역시 검색 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된다. 아울러, 음란물을 오로지 또는 주로 성적 흥분을 목적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전시하는 사이트 역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때, 음란물 콘텐츠는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형태의 콘텐츠로 한정되며, 텍스트나 서면 콘텐츠를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음란물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온라인안전법 중 별도의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 한편, 이용자가 온라인 서비스에서 통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이메일, SMS, MMS 또는 일대일 실시간 음성 통신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가 공중통신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용자 간 서비스에 관한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용자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생성한 콘텐츠와만 상호작용할 수 있고, 다른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이용자 간 서비스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Ofcom의 행동강령은 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규제 대상 이용자 간 서비스와 검색

5) 사용자에게 '실시간' 인터넷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독립형 GenAI 도구 등도 포함됨

서비스에 적용되며, 각 서비스에 대해 요구되는 기대 수준은 서비스의 규모, 기능적 특성, 그리고 위험 프로필에 따라 기대치가 조정된다. 이러한 체계 하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사전적으로 아동접근성 평가와 아동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그림 3-2] 사전적 평가 및 이행 의무



온라인안전법 시행 이후 컴플라이언스를 추진하기 위해 Ofcom은 50개 이상의 서비스(업계에서 가장 크고 위험도가 높은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함)을 감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0개 이상의 위험평가를 요청하고 접수했다고 밝히고 있다(Ofcom, Online Safety Act Explained).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컴플라이언스를 보다 접근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규제확인도구((regulation checker)과 퀵 가이드(Quick guides)⁶⁾, 디지털 툴킷(digital tool-kit⁷⁾)을 마련했다.

6) <https://www.ofcom.org.uk/online-safety/illegal-and-harmful-content/guide-for-services>

7)

<https://www.ofcom.org.uk/online-safety/protecting-children/check-how-to-comply-with-the-protection-of-children-rules>

나. 청소년접근성 평가제도

영국 온라인 안전법에 따라 모든 이용자 간 서비스(user-to-user service)와 검색 서비스는 2025년 4월 16일까지 아동 접근성 평가(Children's Access Assessment)를 실시해야 한다. 이 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개인을 의미하며, 2025년 1월 16일 이후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한 경우에는 서비스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아동 접근성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평가 결과 아동이 해당 서비스에 접근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경우에도, 12개월 이내 또는 서비스의 성격·운영 방식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특정 상황에서는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아동 접근성 평가는 2단계 절차로 구성된다. 먼저 1단계에서는 접근 가능성 평가를 통해 아동이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일부에 정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 단계에서 아동이 접근할 수 없다고 결론내리기 위해서는, 고도로 효과적인 연령 확인(highly effective age assurance) 수단을 적용하고, 성인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접근 제어 조치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2단계에서는 아동 이용자 조건 평가를 실시하여, 상당한 수의 아동이 실제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서비스의 성격상 상당한 수의 아동을 끌어들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안전법은 '상당한 수(significant number)'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의 성격과 이용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아동이 이용하는 경우라도, 피해 발생 가능성이나 위해의 정도가 크다면 '상당한 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평가를 수행할 것이 권고된다.

아동 접근성 평가 과정에서 활용되는 고도로 효과적인 연령확인 시스템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아동이 서비스에 정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연령 확인 절차를 통해 성인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접근 제어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Ofcom이 인정하는 연령 확인 방식으로는 사진 신분증(ID) 매칭, 얼굴을 통한 연령 추정, 이동통신사를 통한 연령 확인, 이메일 기반 연령 추정, 디지털 신원 서비스의 활용 등이 포함된다. 반면, 이용자의 자기 신고에 의존하는 연령 확인 방

식이나 18세 미만도 소지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을 활용하는 방식, 단순한 경고 문구나 면책 조항에 그치는 방식 등은 효과적인 연령 확인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가 고도로 효과적인 연령 확인 조치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Ofcom은 해당 서비스를 아동이 접근 가능한 서비스로 간주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아동 접근성 평가 결과, 아동이 해당 서비스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된다. 이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2025년 7월 24일까지 아동위험성평가(Children's Risk Assessment)를 완료해야 하며, 2025년 7월 21일부터는 아동 보호 행동 강령(Protection of Children Codes)을 준수해야 한다. 아동 위험성평가 이후에는 아동에게 해로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 조치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모든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 접근성 평가의 결과를 기록·보관해야 하며, 평가가 2단계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취한 조치와 함께 최종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활용한 상세한 근거와 증거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이러한 기록 보관 의무는 사후적인 감독과 점검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아동 접근성 평가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

다. 청소년위험성 평가제도

1) 아동 위험성 평가(Children's Risk Assessment) 체계

아동 위험성 평가는 온라인 플랫폼이 아동을 위한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온라인안전법의 핵심 원칙을 반영하는 제도이다. 이는 단순히 사후적으로 유해 콘텐츠를 삭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비스 출시 이전 단계부터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예측하며, 그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온라인안전법이 적용되는 모든 규제 대상 서비스에는 아동 위험성 평가 의무가 부과되며, 서비스 제공업체는 2025년 7월 24일까지 첫 번째 아동 위험성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변경함으로써 온라인안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아동 위험성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이 평가의 목적은 서비스에서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위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데

있으며, 아동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해로운 콘텐츠에 노출될 수 있는지, 서비스의 이용자 기반과 기능, 기타 운영상의 특성이 어떻게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안전 조치를 마련하고 이행해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다.

아울러, 모든 이용자 간 서비스는 아동에게 해로운 것으로 의심되는 콘텐츠를 식별·검토하고 이를 평가해야 하며, 현재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콘텐츠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콘텐츠 조정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Ofcom은 현 단계에서 사전 예방적 기술의 사용을 의무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검토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⁸⁾

아동 위험성 평가에서는 아동·청소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콘텐츠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에게 위험한 콘텐츠에는 자살, 자해, 섭식 장애, 음란물, 여성혐오적·폭력적·증오적·학대적 콘텐츠, 온라인 괴롭힘, 위험한 스텐트나 도전과 같은 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콘텐츠는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주요 우선순위 콘텐츠(Primary Priority Content), 우선순위 콘텐츠(Priority Content), 비지정 콘텐츠(Non-Designated Content)로 구분된다. 먼저 주요 우선순위 콘텐츠는 아동에게 특히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로서, 자살·자해·섭식장애를 조장, 홍보 또는 지시하는 내용과 포르노그래피가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우선순위 콘텐츠는 주요 우선순위 콘텐츠보다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여전히 아동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유형으로, 폭력적인 콘텐츠, 위험한 스텐트나 도전을 조장하는 콘텐츠, 유해 물질의 자가 투여를 조장·홍보·지시하는 콘텐츠, 그리고 학대적·혐오적·괴롭힘 콘텐츠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비지정 콘텐츠는 주요 우선순위 콘텐츠나 우선순위 콘텐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영국 내 상당한 수의 아동에게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실질적인 위험을 제시하는 콘텐츠 유형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신체 이미지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나 우울증을 조장하거나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콘텐츠 등이 포함된다.

8)

<https://www.reedsmith.com/en/perspectives/2025/05/uk-online-safety-act-ofcom-updates-childrens-codes-and-guidance>

<표 3-8> 아동·청소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콘텐츠의 유형

주요 우선순위 콘텐츠(Priority Priority Content, PPC)	우선순위 콘텐츠(Priority Content, PC)	비지정 콘텐츠(Non-Designated Content, NDC)
자살, 자해, 섭식 장애, 음란물(PPC)	학대 및 증오 콘텐츠, 괴롭힘 콘텐츠, 폭력적인 콘텐츠, 유해 물질 콘텐츠, 위험한 스텐트 및 도전 콘텐츠	상당수의 어린이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지닌 콘텐츠(PPC/PC 제외), 신체 이미지 콘텐츠

아동 위험성 평가 과정은 온라인 플랫폼이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로서, Ofcom은 이를 위험 식별, 위험 수준 평가, 위험 완화 조치의 수립·이행, 그리고 위험 완화 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의 네 단계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먼저 위험식별 단계에서는 아동에게 해로운 콘텐츠의 유형을 식별하고, 각 유형별로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 요소를 평가한다. 법에 따라 모든 온라인 플랫폼은 자사 서비스가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유해한 콘텐츠 또는 상호작용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는 특정 연령대를 명시적인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고 아동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Ofcom이 제시한 아동 위험 프로필을 참고하여, 각 콘텐츠 유형에 대한 서비스 특유의 위험 요소를 식별해야 한다. 위험 유형은 크게 불법 콘텐츠와 합법적이지만 아동에게 유해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분된다. 불법 콘텐츠에는 아동 성 착취물(CSAM), 극단주의 콘텐츠, 자해 또는 자살을 조장하는 콘텐츠 등 법률에 의해 명확히 금지된 내용이 포함된다. 한편 합법적이거나 유해한 콘텐츠는 법적으로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으나 아동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성인 콘텐츠, 온라인 괴롭힘, 불법에 이르지 않는 자해 조장 콘텐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위험수준 평가 단계에서는 식별된 위험의 정도를 무시할 수 있는 수준, 낮음, 중간, 높음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단계에서는 해당 위험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과 발생할 경우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이용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콘텐츠 접근과 관

련해서는 아동이 추천 알고리즘, 검색 결과, 다른 이용자 게시물 등을 통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될 수 있는 경로를 분석해야 하고, 상호작용 윙머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그루밍, 괴롭힘, 사기 등 다른 이용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 디자인 측면에서는 익명 채팅 기능, 손쉬운 콘텐츠 업로드 구조, 보상 시스템 등 서비스의 설계나 기능 자체가 아동에게 유해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

위험 완화 조치 단계에서는 위험 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평가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기술적·정책적·인적 측면의 다양한 노력을 포함하며, 구체적으로는 연령 인증 및 접근 제한을 통해 아동이 유해한 콘텐츠나 기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불법 콘텐츠를 신속하게 탐지·삭제할 수 있도록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조치, 아동이 유해 콘텐츠나 괴롭힘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모더레이션 팀을 운영하는 조치,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안전에 관한 교육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조치,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추천되지 않도록 추천 알고리즘을 조정하는 조치, 그리고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조치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위험 완화 조치의 이행 이후에는 해당 안전조치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는 조치 적용 이후에도 남아 있는 잔여 위험수준과 실제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개선 조치를 마련하고 위험성 평가를 업데이트 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안전조치의 구현은 유해 콘텐츠의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먼저 주요 우선순위 콘텐츠(Primary Priority Content, PPC)에 대해서는, 서비스 약관에서 해당 유형의 콘텐츠를 금지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도로 효과적인 연령 확인 조치를 통해 아동이 해당 콘텐츠에 접하지 못하도록 “방지(prevent)”하는 것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약관에서 하나 이상의 PPC 유형을 금지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업체는 아동이 PPC를 접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콘텐츠 제어 또는 접근 제어 조치를 적용해야 하며, 고도로 효과적인 연령 확인 수단을 사용하여 해당 콘텐츠를 성인 이용자에게만 대상화하고 성인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반면, 우선순위 콘텐츠(Priority Content, PC) 및 비지정 콘텐츠(Non-Designated Content, NDC)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반

드시 연령 확인 메커니즘을 통해 이러한 콘텐츠를 전면적으로 아동으로부터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동이 이러한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낮은 우선 순위를 부여하거나, 콘텐츠를 흐리게 처리하거나, 오버레이 또는 중간 화면을 적용하거나, 콘텐츠 추천 피드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속하게 “보호(protect)”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위험 수준별 대응 외에도 다양한 주요 안전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거버넌스 및 책임성 체계의 구축, 연령 확인 조치의 운영, 콘텐츠 조정 및 관리 강화, 사용자 신고 및 불만 처리 절차의 마련, 그리고 추천 시스템 및 알고리즘에 대한 조치 등이 포함된다. 특히 추천 시스템이나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서비스 중에서 해로운 콘텐츠가 중간 또는 높은 수준의 위험을 제기하는 것으로 평가된 범위 내 서비스의 경우에는, 아동의 피드에서 해로운 콘텐츠가 노출되지 않도록 추천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필터링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동 위험성 평가와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자는 평가 결과를 기록·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아울러 Ofcom의 실무 코드에서 권장하는 조치 대신 대안적인 조치를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대안적 조치의 내용과 그것이 아동 안전 의무를 어떻게 충족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이러한 기록 보관 의무와 함께, 아동 위험성 평가는 일회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갱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기적인 검토가 권장된다. 특히 Ofcom이 아동 위험 프로필을 중대하게 변경한 경우나, 서비스의 설계 또는 운영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동 위험성 평가를 재검토하거나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위험평가기록 의무, 대안적 조치에 대한 기록 의무, 안전 조치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업데이트 의무, 그리고 정기적인 검토 의무가 요구된다. 위험평가기록과 관련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 위험성 평가의 결과를 실제로 구현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해야 하며, 기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Ofcom이 별도의 지침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또한 대안적 조치 기록과 관련하여, Ofcom의 실무 코드에서 제시한 권장 조치가 아닌 다른 대안적 조치를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함께 그것이 어떻게 아동 안전 의무 준수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는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업데이트 측면에서는, 도입된 안전 조치가 사용자에게 대한 피해 위험을 실제로 어느 정도 줄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거나 새롭게 나타나는 위험과, 조치 이행 이후에도

남아 있는 위험 노출 수준(이른바 잔여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설계나 운영의 특정 요소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기 전을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동 위험성 평가를 검토하거나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 위험성 평가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연간 단위의 정기 검토가 권장되며, Ofcom이 아동 위험 프로필에 중대한 변경을 가한 경우에도 이에 맞추어 평가를 재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거버넌스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 위험성 평가 결과와 이에 따라 마련된 온라인 안전 조치를 관련 내부 거버넌스 기구에 보고하는 것이 권장된다. 다만 공식적인 이사회나 감독팀을 두고 있지 않은 소규모 서비스의 경우에는, 아동 대상 피해 위험과 관련된 온라인 안전 의무를 담당하는 고위 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고위급 감독 체계를 갖출 것이 요구된다. 또한 규제 범위에 포함되는 서비스들은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전담하는 지명된 개인을 두어야 하며, 고위 기관 차원에서 아동에 대한 위험 관리 방식에 대해 연간 단위의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 온라인 안전 의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명된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PCU A2). 한편 신고 및 이의제기 시스템과 관련하여, 규제 대상 서비스들은 접근하기 쉽고 사용하기 쉬우며 투명한 불만 처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용자는 콘텐츠를 신고하거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을 제공받아야 하며,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러한 신고나 불만에 대해 적절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사용자 제어도구와 관련해서는, 아동 이용자가 자신의 온라인 경험에 대해 보다 많은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고된다. 구체적으로 아동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콘텐츠를 표시하거나, 특정 계정을 차단하거나 음소거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댓글을 비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 환경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OSA 아동 보호 실무 강령(Children's Safety Codes of Practice)은 이러한 취지에서 ICU J1(차단 및 음소거) 및 ICU J2(댓글 비활성화) 조치를 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사용자 간 서비스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루밍, 자살 조장 또는 지원, 혐오와 괴롭힘, 스토킹, 위협, 학대, 강압적·통제적 행동 등과 같은 불법적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

투명성 및 공개의무와 관련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서비스 약관 명시 의무, 비 지정 콘텐츠에 대한 통지 의무, 연령 제한 조치에 대한 공개 의무 등이 요구된다. 우선 서

비스 제공업체는 서비스 약관을 통해 이용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 간 서비스 제공업체는 아동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자사 서비스 내에 존재한다고 식별한 모든 비지정 콘텐츠의 유형과 그 발생률을 Ofcom에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특정 연령 미만의 아동이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는 해당 연령 제한을 어떠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조치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서비스 약관에 명확히 기재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이를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투명성 및 공개의무는 거버넌스와 책임성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로서, 아동 온라인 안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며, 동시에 서비스 제공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반적인 규제 이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불법콘텐츠 위험평가

불법 콘텐츠 위험평가의 평가대상과 범위와 관련하여, 온라인안전법 제9조 및 제26조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는 총 17가지 우선순위 불법 콘텐츠와 그 밖의 불법 콘텐츠에 대해 이용자가 노출될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특히 사용자 간 서비스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가 우선순위 범주의 실행이나 조장에 이용될 위험이 있는지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Ofcom은 기존에 15개로 분류되었던 우선순위 불법 콘텐츠 범주를 17개로 확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동물 학대 범죄를 추가하고, 불법 이민과 인신매매 범죄를 각각 별도의 범주로 분리하여 보다 세분화된 위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Ofcom의 위험성 평가 가이드스가 4단계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이 절차는 우선 평가 대상이 되는 불법 콘텐츠 유형을 이해하는 단계에서 출발하여, 해당 위험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완화 조치를 실행한 뒤, 최종적으로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 시 이를 업데이트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을 통해 불법 콘텐츠로 인한 위험을 체계적으로 식별·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위험 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용자 기반의 특성, 즉 사용자 수와 연령 분포, 사용 언어, 위험에 취약한 집단의 존재 여부 등이 포함되며,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과 알고리즘 시스템의 구조, 특히 콘텐츠가 전파되는 속도와 범위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로 제시된다. 또한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이미 서비스 내에 구축되어 있는 거버넌스 체계, 능동적 기술 활용 여부,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조치 등 기존의 피해 완화 통제 수단 역시 위험 평가 과정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로 명시되고 있다.

불법 콘텐츠 위험 평가의 분류와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자는 각 우선순위 불법 콘텐츠에 대해 위험 수준을 무시할 만한 수준(negligible), 낮음(low), 중간(medium), 높음(high)의 네 단계로 분류해야 하며, 이러한 위험도 분류 결과에 따라 차등적인 안전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이 평가는 총 17개 범주의 우선순위 불법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130개 이상의 우선순위 범죄 유형을 포괄한다. 위험도 분류는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불법 콘텐츠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각 콘텐츠 유형에 대한 위험 수준을 네 단계로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서비스 자체의 위험 수준도 함께 구분한다. 이에 따라 모든 우선순위 불법 콘텐츠에 대해 위험도가 무시할 만한 수준이거나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저위험 서비스로 분류되며, 하나의 불법 피해 유형에 대해 중간 또는 높은 위험이 식별되는 경우에는 단일 위험 서비스로 분류된다. 반면 두 가지 이상의 불법 피해 유형에 대해 중간 또는 높은 위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중 위험 서비스로 분류된다. 기록 보관 및 업데이트 의무와 관련해서는, 불법 콘텐츠 위험 평가의 전 과정과 그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하여 보관해야 하며, 최소 12개월마다 해당 평가를 검토하여 서비스의 위험 수준이 실제 운영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에 중대한 변경을 가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시행하기 전에 새로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변경된 서비스 구조나 기능이 불법 콘텐츠 위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준수 지원을 위해 Ofcom은 '불법 콘텐츠 규칙 준수 확인' 상호작용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이 도구는 Ofcom의 4단계 가이드스에 따라 단계별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비스의 특성과 위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준수 권장사항을 제시한다. 해당 도구를 사용할 경우 고유한 참조 코드가 부여되어 진행 상황을 저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접속하여 평가를 이어가거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집행 및 제재와 관련하여,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은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 강력한 조사 권한과 단계적인 제재 수단을 통해 실질적인 법 집행력을 갖춘 제도로 설계되어 있다.

Ofcom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준수 통지나 개선 계획을 통해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위반이 심각하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막대한 벌금 부과나 서비스 차단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법 준수를 강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Ofcom(Office of Communications)이 온라인 안전법을 집행하는 과정은 크게 위반 감지 및 조사, 집행 조치, 그리고 추가 제재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위반 감지 및 조사 단계에서 Ofcom은 온라인 플랫폼이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폭넓은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는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정보 요청, 데이터와 관련 서류의 검토, 그리고 필요 시 직접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권한이 포함된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Ofcom은 이를 검토한 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플랫폼의 위험성 평가 수행 여부와 그 적정성을 점검하여 어떤 서비스가 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지를 식별한다. 다음으로 집행 조치 단계에서, Ofcom은 플랫폼이 온라인 안전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준수 통지(Compliance Notices)'를 발부할 수 있다. 이 통지에는 위반된 사항과 함께, 해당 플랫폼이 법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가 명시된다. 이러한 준수 통지는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로 볼 때 단순한 행정지도와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띠며,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준수 통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후 단계에서 벌금 부과나 서비스 차단과 같은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또한 Ofcom은 플랫폼과 협력하여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개선 계획(Improvement Plans)을 수립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위반이 중대하거나 준수 통지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 행위의 중단이나 특정 조치의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시정 명령(Enforcement Orders)'을 발령할 수 있다. 추가 제재 단계에서는 법 위반이 지속되거나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 Ofcom이 막대한 수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온라인 안전법은 기업의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 또는 1,800만 파운드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매우 심각하고 지속적인 법 위반이 발생하고, 다른 모든 집행 수단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에는, Ofcom이 법원 명령을 통해 해당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영국 내 접근을 차단하는 서비스 차단(Service Blocking)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된다. 또한 Ofcom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정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기업 관계자에게 형사

처벌(Criminal Offences)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Ofcom은 2025년 3월부터 대형 플랫폼과 고위험 소규모 사이트를 대상으로 집행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적절하고 충분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온라인 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규제 대상 서비스는 2025년 3월 16일까지 불법 콘텐츠 위험성 평가를 완료해야 하며,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변경하여 법률 적용 대상이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 세계 수익의 10% 또는 1,800만 파운드 중 더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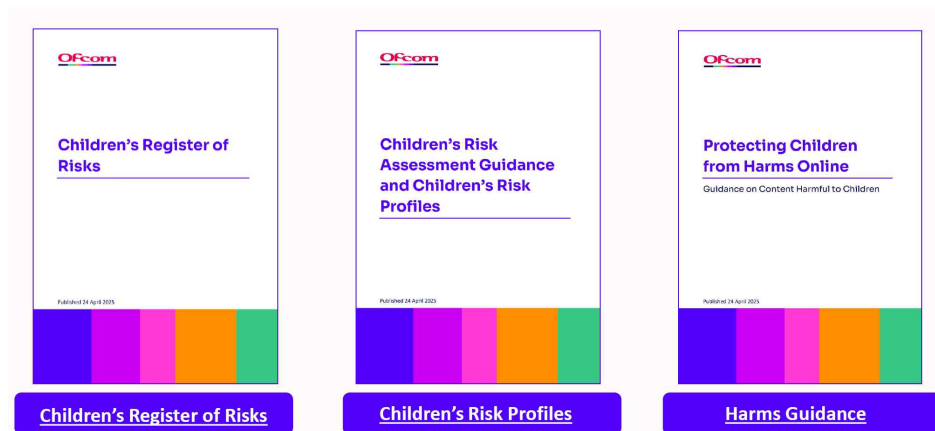
3) 행동강령에 따른 요구사항

행동강령에 따른 요구사항으로는 강건한 연령 확인 체계의 도입, 효과적인 콘텐츠 조정, 안전한 알고리즘 운영, 이용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지지적인 정보 제공, 향상된 이용자 신고 절차,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서비스 규정 마련, 그리고 보다 강화된 거버넌스와 책임성 확보 등을 포함하여 총 40개의 구체적인 이행 조치가 권고되고 있다. 이러한 이행 조치들은 아동 온라인 안전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실무적 기준으로서, 서비스 전반의 설계·운영·관리 단계에 걸쳐 종합적으로 적용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위험 관리와 관련하여 Ofcom은 사업자가 위험 평가와 대응 조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총 세 가지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중 하나인 「Children's Register of Risks」는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아동 피해의 원인과 영향에 대해 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한 위험 평가를 제시하는 자료이다. 이 자료는 약 550개의 개별적인 품질 보증 증거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위험 프로필에 필요한 위험 요소를 식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는 자사 서비스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위험 등록부를 참조하는 것이 권고된다.

「Children's Register of Risks」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아동 피해 유형별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피해가 온라인 환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다루면서 피해의 존재 여부와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위험 요소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데, 여기에는 사용자 기반의 특성, 서비스 유형, 기능 및 추천 시스템의 구조,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과 상업적 프로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자료는 개별 서비스의 위험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위험 완화 조치를 설계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림 3-3] 「Children's Register of Risks」의 구성



3. 호주 온라인안전법

호주 온라인안전법은 EU DSA와 달리 '사전 유해성 평가'를 법률상 독립된 제도로써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BOSE와 Safety by Design 프레임워크, eSafety Commissioner의 강력한 사후 집행 권한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설계, 개발, 운영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고려하고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즉, 사전 평가를 '의무화'했다기 보다는 사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불이행 할 경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사후 책임 중심의 규제로 볼 수 있다.

BOSE는 온라인안전법 제45조 및 제46조에 근거하여 장관이 하위규정으로 설정하는 기본 온라인 안전에 대한 기대 규범이며, 법원에서 직접 집행되는 의무는 아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규정인 「Online Safety (Basic Online Safety Expectations) Determination 2022」에 규정되어 있고, 2024년 개정 논의에서 제시된 추가적인 안전 기대와 해석 요소는

eSafety Commissioner의 Regulatory Guidance를 통해 기대사항의 해석 및 평가 기준으로 반영되고 있다.

<표 3-9> 기본 온라인 안전 기대(BOSE) 법적 근거 및 핵심 기대

제2장 기본 온라인 안전 기대
제45조 기본 온라인 안전 기대(Basic online safety expectations)
소셜미디어 서비스
(1) 장관은 입법적 수단을 통하여, 소셜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기본 온라인 안전 기대가 해당 결정문에 명시된 기대사항임을 정할 수 있다.
관련 전자 서비스
(2) 장관은 입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당 결정문에 명시된 관련 전자 서비스의 범주(class)에 포함되는 각 관련 전자 서비스에 대한 기본 온라인 안전 기대가 해당 결정문에 명시된 기대사항임을 정할 수 있다.
지정된 인터넷 서비스
(3) 장관은 입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당 결정문에 명시된 지정된 인터넷 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되는 각 지정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기본 온라인 안전 기대가 해당 결정문에 명시된 기대사항임을 정할 수 있다.
결정은 법적으로 강제 가능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4) 이 조에 따른 결정은 법원 소송 절차를 통해 집행 가능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46조 핵심 기대(Core expectations)
(1) 제45조에 따른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기대를 모두 명시하여야 한다.
(a) 서비스 제공자가 최종이용자가 안전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기대
(b) 그러한 합리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결정함에 있어, 제공자가 커미셔너(Commissioner)와 협의할 것이라는 기대
(c)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상에서 다음의 자료가 제공되는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기대:

- (i)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자료, (ii) 호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학대(cyber-abuse) 자료, (iii) 개인의 비동의 성적 이미지, (iv) 1등급(class 1) 자료, (v) 혐오스러운 폭력 행위를 조장하는 자료, (vi) 혐오스러운 폭력 행위를 선동하는 자료, (vii) 혐오스러운 폭력 행위를 지도(교사)하는 자료, (viii) 혐오스러운 폭력 행위를 묘사하는 자료
- (d)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상에서 제공되는 2등급 자료에 아동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또는 기타 조치가 효력을 발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기대
- (e) 서비스 제공자가 최종이용자로 하여금 서비스 상에서 제공되는 다음 자료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신고하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명확하고 즉시 식별 가능한 메커니즘을 서비스가 갖추도록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
 - (i)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불링 자료, (ii) 호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학대 자료, (iii) 개인의 비동의 성적 이미지, (iv) 1등급 자료, (v) 2등급 자료, (vi) 혐오스러운 폭력 행위를 조장하는 자료, (vii) 혐오스러운 폭력 행위를 선동하는 자료, (viii) 혐오스러운 폭력 행위를 지도(교사)하는 자료, (ix) 혐오스러운 폭력 행위를 묘사하는 자료
- (f) 서비스 제공자가 최종이용자로 하여금 서비스의 이용약관 위반에 대하여 신고하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명확하고 즉시 식별 가능한 메커니즘을 서비스가 갖추도록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
- (g) 커미셔너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면통지를 보내어 특정기간(6개월 이상) 동안 서비스의 이용약관 위반과 관련하여 제공자에게 제기된 불만의 건수를 기재한 진술서를 커미셔너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자가 요청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를 것이라는 기대
- (h) 커미셔너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어 특정기간동안 제공자에게 전달된 각 삭제통지에 대하여 제공자가 그 삭제 통지를 준수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기재한 진술서를 커미셔너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자가 요청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를 것이라는 기대
- (i) 커미셔너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어 최종이용자가 안전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공자가 취한 조치와 관련된 특정 정보를 커미셔너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자가 요청 통지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를 것이라는 기대

(2) 제1항은 제45조에 따른 결정에서 명시될 수 있는 기대사항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Online Safety (Basic Online Safety Expectations) Determination 2022」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단독 조문은 없지만, 여러 가지 기대 항목에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요소를 포함하는 구조이다. 이 결정은 서비스 제공자가 합리적인 조치를 통해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아동이 연령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자료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운영적 조치를 전제로 한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설계·운영 단계에서 고려하도록 하는 원칙이나, 알고리즘·생성형 AI 기능이 아동에게 미칠 위험을 사전에 평가·완화할 필요성은 2024년 BOSE 개정 논의와 eSafety Commissioner의 Regulatory Guidance를 통해 해석 및 집행 기준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제6조는 아동·청소년 보호의 기본원칙과 규제 접근 방식을 선언적으로 제시하는 핵심 조항이다. 제6조 제1항은 서비스 제공자가 최종이용자가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일반적인 기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자료 및 활동을 선제적으로 최소화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제6조 제2A항은 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설계 및 운영 단계에서 ‘아동·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핵심적인 고려사항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보호를 사후적 대응이 아닌 사전적인 설계로서 규정하고 있다. 제6조 제3항은 이러한 원칙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예시로서, 기본 안전·프라이버시 설정 강화, 서비스 전 생애주기에 걸친 안전위험 및 영향평가(아동 안전 위험 평가 포함)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12조 제2항 (b)에서는 아동 안전에 미칠 위험 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청소년 보호를 사후적 차단이나 제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부터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식별·검토하도록 하는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표 3-10> Online Safety (Basic Online Safety Expectations) Determination 2022 주요내용

제2부 안전한 이용에 관한 기대사항

제6조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에 관한 기대

핵심기대

- (1) 서비스 제공자는 최종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안전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추가기대

- (2)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내의 자료 또는 활동이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정도를 선제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추가기대

- (2A)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서비스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주요한 고려 사항이 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의 예시

- (3) 제1항, 제2항 또는 제2A항의 적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각 항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a) 서비스 내에서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자료 또는 활동을 탐지·조정·신고·삭제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이행하는 것
 - (b)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구성 요소가 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아동 서비스의 기본 프라이버시 및 안전 설정이 강력하고 가장 제한적인 수준으로 설정되도록 보장하는 것
 - (c) 서비스 제공에 관여하는 자가 온라인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고, 이를 이행하고 촉진할 것이 기대되도록 하는 것
 - (d) 최종이용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 및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
 - (e) 서비스의 설계, 개발, 배포 및 배포 이후 단계 전반에 걸쳐, 안전 위험 및 영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식별된 위험을 적절히 완화하며, 안전 검토 절차를 구현하는 것

(f) 사업상 의사결정이 최종이용자가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그러한 경우 해당 영향을 적절히 완화하는 것

(g) 제14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및 불만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처리하기 위한 인력, 시스템, 도구 및 절차를 갖추는 것

(h) 서비스 내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자료 또는 활동의 예방 및 탐지를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 도구 및 절차에 투자하는 것

(i) 서비스 이용약관을 위반하고, 해당되는 경우 제14조에 언급된 서비스의 정책·절차·행동 기준을 위반하는 혐오표현을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는 것

(j) 최종이용자가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설명하는 정기적인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공표하는 것. 이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i) 온라인 안전 도구 및 절차의 활용 현황

(ii) 서비스 내 유해한 자료 또는 활동의 발생 현황에 관한 지표

(iii) 신고 및 불만에 대한 서비스의 대응 수준

(iv) 제14조에 언급된 서비스 이용약관, 정책·절차 및 행동 기준의 집행 방식

(5) 서비스 제공자는 안전한 온라인 상호작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종이용자에게 선택권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통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의 예시

(6) 제5항의 적용을 제한하지 않은 범위에서, 해당 항목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a) 최종이용자를 위한 차단 및 음소거 기능을 제공하는 것

(b) 최종이용자가 수신할 수 있는 콘텐츠 유형에 대해 선택적 수신(opt-in) 및 수신거부(opt-out) 수단을 제공하는 것

(c) 최종이용자가 자신의 프라이버시 및 안전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

제3부 특정 자료 및 행위에 관한 기대사항

제11조 핵심기대-특정 자료의 제공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불링 자료
- (b) 호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학대 자료
- (c) 개인의 비동의 친밀 이미지
- (d) 1등급 자료
- (e) 극단적 폭력 행위를 조장하는 자료
- (f) 극단적 폭력 행위를 선동하는 자료
- (g) 극단적 폭력 행위를 지시하는 자료
- (h) 극단적 폭력 행위를 묘사하는 자료

제12조 핵심기대-아동의 2등급 자료 접근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

핵심기대

- (1)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2등급 자료에 대하여, 아동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또는 그 밖의 조치가 시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의 예시

- (2) 제1항의 적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항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a) 적절한 연령 확인 또는 연령 보증 메커니즘의 도입
 - (b) 아동 안전에 관한 위협 평가의 수행
 - (c) 아동의 2등급 자료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된 기술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발·지원·도입하거나 이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

한편, eSafety Commissioner의 Regulatory Guidance는 기대사항 준수 평가 방식, 서비스 제공자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 예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 3-11> Regulatory Guidance 상 기대사항 위반 평가 요소

eSafety는 미준수 성명(statement of non-compliance)을 부여하고 공표할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eSafety는 서비스 제공자가 기대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위험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을 취한다. 이 과정에서 eSafety는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위해의 수준과 안전 문제의 범위를 고려한다. ...

Commissioner는 서비스 제공자가 기대사항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기대사항을 위반하였는지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한다.

-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 요소, 다음을 포함한다
 - 최종 이용자의 수(호주 이용자 포함)
 - 이용자 기반의 특성 및 인구통계
 - 온라인 위해의 위험 및 이에 대한 증거
 -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안전 조치의 효과적인 사용 또는 작동을 제한할 수 있는 설계적 특징
 - 그 밖의 관련 요소
- 기대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가 취한 조치의 효과성 및 비례성
- 서비스 제공자가 기대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특정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기술적 또는 실무적 제약이 존재하는지 여부
-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 가능한 자원과 특정 조치를 이행하는 데 수반되는 비용 또는 그 밖의 부담
-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 추가적인 조치나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음을 입증하는 신빙성 있는 정보
- 서비스 제공자가 eSafety와 건설적으로 소통하였는지 여부 및 정보 제공 요청에 성실히 응답하였는지 여부
- 통지에 대한 응답으로 제공된 정보가 eSafety의 조사 결과, 온라인 안전 코드 또는 표준에 따른 보고, 학계·시민사회 또는 기타 전문가의 증거 등 다른 출처의 관련 증거와 비교하여 어떠한지 여부

출처: eSafety Commissioner(2025), Basic Online Safety Expectations Regulatory Guidance

또한,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전 생애주기에 걸쳐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이용자에게 미칠 안전위험을 사전에 식별·평가하고, 인권 기반 접근에 따라 그 완화 조치와 이행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설명하도록 요구하는 사전적 위험관리 중심 구조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표 3-12> Regulatory Guidance 상 위험 및 영향 평가 관련 내용

안전 위험 및 영향평가와 검토를 수행하는 것은 본 Determination 전반에 걸쳐 ‘합리적인 조치’의 예시로 열거되어 있다. 이러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 서비스 또는 기능의 전 생애주기 전반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새로운 기능이 설계·개발·배포되는 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초기 단계부터 위해 요소가 완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평가는 정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명확하게 문서화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 평가는 인권기반접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위해 발생 가능성과 그 심각성 또는 영향 수준을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이 아니라, 최종이용자와 더 넓은 공동체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하며, 적용 가능한 다른 인권 요소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모든 관련 위험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단체, 피해자 단체 및 기타 전문가들의 의견과 통찰을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제안된 안전 완화 조치의 영향 또한 함께 평가되고 완화되어야 한다.
- 평가는 단순히 사업자로서의 위험이나, 협소한 범주 준수 관점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는 이 과정의 일부로서 기대사항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아동·청소년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거나, 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보다 취약한 이용자인 연소 이용자가 직면하는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위험 평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 콘텐츠 위험(content): 아동 또는 청소년이 특정 콘텐츠에 관여하거나 노출되는 위험
 - 접촉위험(contact): 성인을 포함한 타인으로부터 유해한 접촉을 경험하거나 표적이

될 위험

· 행위위험(conduct): 유해한 행위를 목격하거나, 이에 참여하거나, 피해자가 될 위험

2024년 BOSE의 개정 Determination에 대한 해설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가 아동에 의해 접근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평가하고, 제6조 제2A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동 안전 위험 평가를 수행할 것이 기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Safety는 모든 위해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대사항 역시 그러한 결과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보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수행된 안전 위험 평가의 성격
- 평가 과정에서 식별된 안전 위험
- 해당 위험을 어떠한 방식으로 완화할 것을 권고했는지
- 그리고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실제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출처: eSafety Commissioner(2025), Basic Online Safety Expectations Regulatory Guidance

한편, 호주는 「Online Safety Amendment (Social Media Minimum Age) Act 2024」를 통해 소셜 미디어 최소 연령 제한 제도를 Online Safety Act 2021에 명시적으로 편입하였다. 해당 내용은 온라인 안전법 Part 4A를 신설함으로써, 소셜 미디어 연령 제한을 법률상의 무 체계로 구조화했다. 호주는 이로 인해 세계 최초로 소셜 미디어 최소 연령 제한을 법률에 근거한 규제 체계로 도입한 국가가 되었다.

이 제도는 호주의 아동·청소년들이 소셜 미디어 계정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노출될 수 있는 사회적 압력, 유해한 상호작용 및 정신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령제한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연령제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서비스의 주된 목적 또는 중요한 목적이 두 명 이상의 최종이용자 간의 온라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 둘째, 최종이용자가 다른 최종이용자 일부 또는 전부와 연결하거나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셋째, 최종이용자가 서비스에 자료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으로 분류된다.⁹⁾ 연령 제

9) 이때, ①최종이용자가 메시징, 이메일, 음성 통화 또는 화상 통화 수단을 통해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유일하거나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②최종이용자가 다른

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16세 미만 호주인이 해당 플랫폼에 계정을 갖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의무는 개인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민사 제재를 명할 수 있으며, 최대 15만 페널티 유닛(현재 호주 달러로 약 4,950만 달러에 해당)에 달한다. 이 제도의 집행과 감독은 eSafety Commissioner가 담당한다.

<표 3-13>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계정 가입 금지 관련 규정

<p>제4A부-소셜 미디어 최소 연령</p> <p>제1절 서론</p> <p>제63A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유형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제공자는 최소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아동이 계정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요건은 장관이 지정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최소 연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수집하는 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p>제63B조 이 부의 목적은 특정 유형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부터 연령 제한 이용자(age-restricted users)가 입을 수 있는 위해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다.</p> <p>제63C조 연령 제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p> <p>(1) 이 법의 목적상, 연령 제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적 서비스를 말한다.</p> <p>(a)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자적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서비스의 유일한 목적 또는 중요한 목적이 2명 이상의 최종이용자 간 온라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 것

최종이용자와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유일하거나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③최종이용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유일하거나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등은 연령 제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보지 않는다.(Online Safety (Age-Restricted Social Media Platforms) Rules 2025)

- (ii) 최종이용자가 다른 최종이용자 일부 또는 전부와 연결되거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 (iii) 최종이용자가 서비스에 자료를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 (iv) 입법규칙에 규정된 그 밖의 조건을 충족할 것; 또는

(b) 입법 규칙에 의해 지정된 전자적 서비스

다만, 제6항에 언급된 서비스는 제외한다.

- (2) 제1항 (a)(i)의 목적상, 온라인 사회적 상호작용에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 최종이용자들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상호작용이 포함된다.
- (3) 제1항 (a)(i)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목적은 고려하지 않는다.

(a) 서비스에서 광고 자료를 제공하는 목적

(b) 광고 자료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

- (4) 장관은 연령 제한 이용자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 (b)의 목적을 위해 전자적 서비스를 지정하는 입법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5) 장관은 제1항 (b)의 목적을 위해 전자적 서비스를 지정하는 입법 규칙을 제정하기 전에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a) 커미셔너의 자문을 구하고, 그 자문을 고려할 것

(b) 장관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연방의 다른 기관 또는 당국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자문을 고려할 것

연령 제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

-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적 서비스는 연령 제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해당하지 않는다.

(a) 해당 서비스의 어떤 자료도 호주 내 하나 이상의 최종이용자가 접근하거나 전달받을 수 없는 경우

(b) 입법 규칙에 의해 지정된 서비스인 경우

- (7) 장관은 제6항 (b)의 목적을 위해 전자적 서비스를 지정하는 입법 규칙을 제정하기

전에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커미셔너의 자문을 구하고, 그 자문을 고려할 것
- (b) 장관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연방의 다른 기관 또는 당국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자문을 고려할 것

제2절 민사벌칙

제63D조 연령 제한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 미이행에 대한 민사 벌칙

연령 제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제공자는 연령 제한 이용자가 해당 연령 제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계정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민사벌칙: 30,000 벌칙 단위

4. 기타 주요국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의무 입법 추진 동향

가. 미국

미국의 현행 온라인 아동·청소년 보호법제는 사후신고, 기술적 차단, 개인정보보호 중심의 조치의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Kids Online Safety Act(KOSA) 등 최근 입법 논의에서는 플랫폼이 아동에게 예측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고 설계 단계에서 완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시도되고 있으나, 정형화된 사전 위험 평가 등 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KOSA는 플랫폼이 미성년 이용자에게 자동재생, 무한 스크롤, 푸시 알림 등 아동에게 유해할 수 있는 설계 요소에 대해 완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부모가 개인정보, 시간제한, 콘텐츠 추천 설정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례적인 투명성 보고 및 독립적 검증 체계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으며, 아동 온라인 안전 위원회(Kids Online Safety Council)를 설치하여 연구와 권고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3-14> KOSA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보호 의무 주요내용

제102조 주의 의무

(a) 미성년자에 대한 위해 예방 적용 대상 플랫폼은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 판단하기에 해당 플랫폼이 다음의 위해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으며, 해당 설계 기능이 그러한 위해의 기여 요인이라는 점에 동의할 수 있는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위해를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하여 설계 기능의 생성 및 구현에 있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1) 섭식장애, 약물 사용장애 및 자살 행동
- (2) 우울 장애 및 불안 장애
- (3) 강박적 이용을 나타내는 이용 패턴
- (4) 신체적 폭력 또는 온라인 괴롭힘
- (5)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 및 학대
- (6) 마약류, 담배 제품, 대마 제품, 도박 또는 알코올의 유통, 판매 또는 사용
- (7)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b) 해석의 원칙

- (1) (a)항의 어떠한 내용도 적용 대상 플랫폼이 미성년자의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방지하거나 차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 (A) 고의적이고 주체적으로 콘텐츠를 검색하거나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행위
 - (B) (a)항에 기술된 위해의 예방 또는 완화에 관한 자원 및 정보에 접근하는 행위
- (2) 이 조의 어떠한 내용도 정부 기관이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발언, 표현 또는 정보를 통해 표출된 이용자의 관점에 근거하여 (a)항을 집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105조 투명성

(a) 일반-(b)항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 대상 플랫폼은 합리적인 수준의 확신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제3자 감사에 기초하여, ©항의 사항을 다루는 공개 보고서를 연 1회 이상 발행해야 한다.

(b) 적용범위-이 조의 요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플랫폼에 적용된다.

- (1) 최근연도 기준, 미국 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평균 1,00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 (2) 해당 플랫폼이 주로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와 토론을 위한 커뮤니티 포럼을 제공하며, 동영상, 이미지, 게임, 오디오 파일의 공유, 가상 환경에서의 토론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포함하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가상현실 환경 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기능하는 경우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는 Age-Appropriate Design Code Act를 제정하여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한편, 아동에게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콘텐츠, 기능, 설계 요소에 대해 사전적으로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 조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했다. 이 법은 18세 미만 전체를 보호 대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아동 사용이 예상되는 모든 온라인 서비스, 제품, 기능에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표 3-15> Age-Appropriate Design Code Act 상 데이터 보호 영향평가 의무

1798.99.30 (b) 이 편(Title)의 목적상

- (1) 아동 또는 아동들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18세 미만의 소비자를 의미한다.
- (2)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란 문제가 되는 온라인 서비스, 제품 또는 기능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해당 온라인 서비스, 제품 또는 기능에 접근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아동에 대해 사업자의 데이터 관리 관행에서 기인하는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를 의미한다.
- (4) 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이란, 다음의 지표에 근거하여, 아동이 해당 온라인 서비스, 제품 또는 기능에 접근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 (A) 해당 온라인 서비스, 제품 또는 기능이 아동 온라인 사생활보호법에 정의된 바에 따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 (B) 해당 온라인 서비스, 제품 또는 기능이 이용자 구성에 관한 적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 상당수의 아동이 일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C) 아동에게 마케팅된 광고가 있는 온라인 서비스, 제품 또는 기능인 경우

(D) (B)호의 적용을 받는 온라인 서비스, 제품 또는 기능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온라인 서비스, 제품 또는 기능인 경우

(E) 게임, 만화, 음악 및 아동에게 호소력 있는 유명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아동의 흥미를 끄는 것으로 알려진 설계 요소를 갖춘 온라인 서비스, 제품 또는 기능인 경우

(F) 내부 기업 조사에 기초하여, 해당 온라인 서비스, 제품 또는 기능의 이용자 중 상당한 양이 아동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798.99.31 (a) 어린이가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서비스, 제품 또는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A)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 제품 또는 기능을 대중에게 제공하기 전에 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온라인 서비스, 제품 또는 기능에 대한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를 완료하고, 해당 온라인 서비스, 제품 또는 기능에 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동안 이 평가에 대한 문서를 보관해야 한다. 사업자는 모든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를 2년마다 검토해야 한다.

(B) 본 항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는 해당 온라인 서비스, 제품 또는 기능의 목적, 아동의 개인정보 사용 방식, 그리고 사업자의 데이터 관리 관행에서 발생하는 아동에 대한 실질적 위협의 위험을 식별해야 한다.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는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모두 다루어야 한다.

(i) 온라인 제품, 서비스 또는 기능의 설계가 아동을 유해하거나 잠재적으로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여부

(ii) 온라인 제품, 서비스 또는 기능의 설계가 아동으로 하여금 온라인 제품, 서비스 또는 기능 상에서 유해하거나 잠재적으로 유해한 연락을 경험하게 하거나 그 대상이 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iii) 온라인 제품, 서비스 또는 기능의 설계가 아동으로 하여금 온라인 제품, 서비스 또는 기능 상에서의 유해하거나 잠재적으로 유해한 행위를 목격하거나, 이에 참여하거나, 그 대상이 되도록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iv) 온라인 제품, 서비스 또는 기능의 설계가 아동으로 하여금 온라인 제품, 서비스 또는 기능 상에서의 유해하거나 잠재적으로 유해한 접촉의 당사자가 되거나 착취당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v) 온라인 제품, 서비스 또는 기능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아동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여부

(vi) 온라인 제품, 서비스 또는 기능에서 사용하는 타겟팅 광고 시스템이 아동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여부

(vii) 온라인 제품, 서비스 또는 기능이 미디어 자동 재생(automatic playing), 시간 사용에 대한 보상(rewards), 알림(notifications) 등을 포함하여 아동의 이용을 증가, 유지 또는 연장시키기 위해 시스템 설계 기능을 사용하는지 여부와 그 방법
 (viii) 온라인 제품, 서비스 또는 기능이 아동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처리하는지 여부, 그 방법 및 목적

(2) 제1항에 따라 요구되는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에서 식별된 사업자의 데이터 관리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에 대한 모든 실질적 위해 위험을 문서화하고, 해당 온라인 서비스, 제품 또는 기능에 아동이 접근하기 전에 그 위험을 완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기한이 정해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본 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 및 과잉 규제 논란으로 인해 연방법원에서 집행 중단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제에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아동에 미치는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연방 차원의 아동·청소년 보호 입법 논의에 선례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프랑스

프랑스는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가 단일법에 의해 일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교육·보건·미디어·디지털 규제 영역에 넓게 규정함으로써, 각각의 보호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아동 보호에 대해 표현의 자유나 산업 규제의 문제로 보지 않고, 공공질서와 공중보건의 분야로서 인식해 왔으며, 이러한 인식은 디지털과 온라인 환경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의 자유나 혁신 보다는 아동의 발달권과 보호 필요성을 우선하는 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법제 전반에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의 아동·청소년 보호는 플랫폼 설계에 대한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보다는 아동이 디지털 서비스에 노출되는 환경 자체를 통제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2018년에 제정된 *Loi relative à l'encadrement de l'utilisation du téléphone portable*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학교에 관리·차단 규칙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는 집중력 저하, 사이버 괴롭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플랫폼이나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규제하

기보다는 아동의 일상적 이용 환경을 차단함으로써, 사전적 보호를 실현하는 ‘디지털 디톡스’를 제도화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온라인 콘텐츠와 미디어 분야에서는 방송·VOD·플랫폼을 포괄하는 규제 체계를 통해 아동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는 ARCOM을 중심으로 연령 등급 표시, 미성년자에게 부적합한 콘텐츠 접근 제한, 보호자 통제 기능 의무화 등을 제도화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동 보호를 이유로 성인물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연령확인 의무가 도입¹⁰⁾되었는데, 단순한 자기선언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술적으로 실효성 있는 연령 확인이 요구된다.

프랑스 법제에서 플랫폼 차원에서의 사전 유해성 평가 등 절차가 도입된 계기는 프랑스 국내법이 아니라 EU DSA를 통해서이다. DSA는 프랑스에 직접 적용되며,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아동의 정신 건강, 유해 콘텐츠 노출 등을 포함한 시스템적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완화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ARCOM이 이러한 EU의 집행과 조정을 담당함으로써, 프랑스 국내법 중심의 접근 통제, 사후 대응 모델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5. 시사점

EU, 영국, 호주,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검토해 본 결과, 온라인 플랫폼 상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는 각국의 규제 철학에 따라 상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공통적으로는 사후 대응 중심 규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위험을 사전에 식별·완화하는 방향으로 점차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U와 영국, 호주는 플랫폼의 규모와 영향력에 비례하여 사전 위험 평가를 핵심적인 규제 도구로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제한적이거나 설계 단계에서의 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고 완화할 책임을 부과하려는 입법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EU DSA, 영국의 OSA, 호주의 OSA는 모두 사전 유해성 평가를 플랫폼에 대해 일회적인

10) Loi visant à sécuriser et réguler l'espace numérique, 2024년 5월 21일 공포됨

평가가 아니라,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위험 평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서비스 구조, 이용행태 등이 변화할 경우 평가를 새롭게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전에 유해성을 평가하는 제도가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가 아니라, 플랫폼 운영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책임 메커니즘으로 작동함을 의미한다. 평가에 있어 콘텐츠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위해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EU DSA와 영국 OSA는 불법 콘텐츠 여부와 별도로, 합법적인 콘텐츠라 하더라도 아동의 정신건강, 중독 등 사회적으로 유해한 부분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평가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한편, 사전 유해성 평가의 기준은 일률적인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플랫폼의 유형, 기능, 이용자 특성 등에 따라 차등화된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EU와 영국은 플랫폼의 규모, 이용자 수, 아동 이용 비용 비중, 추천 알고리즘 활용 여부 등에 따라 평가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플랫폼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한 평가와 문서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전 유해성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 결과의 문서화, 내부 책임자 지정, 외부 감독과의 연계 구조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EU와 영국은 평가 결과를 내부 문서로 남기고, 감독기관의 요청 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 평가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제2절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국내 온라인플랫폼 관련 입법추진 동향 분석

1. 청소년보호 책무 강화를 위한 입법 동향

가. 발의건수 및 유형

현재, 22대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보호를 중심으로 한 발의 건수는 총 7건이다. 7건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미성년자 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규제, 알고리즘(추천·노출·중독 유발) 규제, 연령확인 및 친권자(보호자) 동의 의무 강화, SNS·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및 안전조치, 아동·청소년 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운영 책임 강화로 구분할 수 있다.

<표 3-16> 22대 국회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보호를 중심으로 한 입법 발의

대표발의 및 의안번호	주요 발의내용	의결결과
배현진 의원 (2200515)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숙박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의 성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42조의4 신설 등)	계류
윤건영 의원 (2201798)	·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 유해매체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사업자에게는 회원가입 신청자가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승낙을 거부함으로써 SNS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4조의11 신설)	계류
김장겸 의원 (2201816)	·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알고리즘 게시물의 알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알고리즘 게시물이 아닌 시간순으로 콘텐츠가 노출되도록 하여 소셜미디어의 중독성과 부작용으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42조의4 신설 등)	계류

<p>안철수 의원 (2202630)</p>	<p>·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원칙적으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안에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되, 친권자 등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이 경우에도 자정부터 오전 6시 이전 사이의 시간대에 대하여는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허용함에 있어서 보호자의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 안에서 청소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 제42조의4 신설 등)</p>	<p>계류</p>
<p>조정훈 의원 (2202761)</p>	<p>·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SNS 일별 이용 한도 설정과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친권자등의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42조의4 신설 등)</p>	<p>계류</p>
<p>진종오 의원 (2203185)</p>	<p>·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에 청소년 대상 범죄의 예방 및 감시를 포함하도록 하고, 청소년 보호 책임자에게 청소년 대상 범죄의 예방 및 감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일정 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제42조의3제3항 및 제76조제3항제3호의2 신설)</p>	<p>계류</p>
<p>김태선 의원 (2203983)</p>	<p>· 아동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와 맞춤형 광고, 알고리즘을 이용한 정보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 본인과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 내 아동을 위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42조의4 신설 등)</p>	<p>계류</p>

나. 주요내용

발의된 7건의 법안들은 단순히 유해 정보를 사후에 차단하는 소극적인 조치를 넘어, 서비스의 진입 단계에서부터 이용 과정 전반에 걸쳐 플랫폼이 청소년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법적 책무를 강화하는 흐름을 띠고 있다.

먼저, 서비스 진입 장벽을 높여 청소년을 원칙적으로 보호하려는 연령 확인 및 가입 제

한 의무가 강화되고 있다. 윤건영 의원안은 SNS 가입 시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 승낙을 거부하도록 하여,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아동의 무분별한 서비스 이용을 막고자 하고 있다. 또한, 배현진 의원안은 청소년 혼숙 등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숙박 예약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보가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오프라인 상의 위험까지 사전에 예방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두 번째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보호자의 관리·감독 권한을 보장하는 법정대리인 동의 및 절차적 보호 의무가 확대되고 있다. 김태선 의원안은 아동의 개인정보를 자동화된 처리에 이용하거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데이터 주체로서의 아동 권리 보호를 강조했다. 김장겸 의원안과 안철수 의원안 역시 미성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확인이나 동의를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하여, 플랫폼이 청소년 이용자에 대해 보호자의 허락 없는 임의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세 번째로, 과몰입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안전 조치 의무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조정훈 의원안은 청소년의 과몰입 예방을 위해 플랫폼이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이를 부모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안철수 의원안과 김태선 의원안은 수면권 보장을 위해 심야 시간대(자정~오전 6시)의 특정 서비스 제공 시 별도 동의를 요구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진종오 의원안은 딥웹·다크웹 등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등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플랫폼 사업자에게 청소년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감시할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플랫폼을 단순한 정보 매개 공간이 아닌 범죄 예방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동향은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의 수익성 추구에 앞서 청소년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향후 규제 체계가 자율 규제에서 법적 의무에 기반한 예방적 보호체계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2. 현행 입법의 법리적 한계와 향후 과제 분석

발의된 7건 모두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 보호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SNS,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 숏폼콘텐츠 등의 확산으로 인해 청소년이

유해정보와 과도한 자극에 노출될 위험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플랫폼 사업자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명확하다. 다만, 이러한 입법 시도들은 개별 규제 수단의 나열, 사후적 통제 중심 접근에 그치고 있어 법리적·제도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우선, 현행 발의안들은 청소년 보호 의무를 주로 '결과 발생 이후의 책임' 또는 '행위 규제'의 형태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방적 규제 체계로서 기능하기가 어렵다. 다수의 법안이 유해 콘텐츠의 차단, 이용시간 제한, 연령 확인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 단계에서 작동하는 사후적인 규율이다. 이러한 방식은 개별 서비스의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기 보다는 문제 발생 이후 규제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상호작용 서비스의 경우, 위험성은 콘텐츠 그 자체보다도 서비스의 설계방식이나 추천 구조 등 복합적인 요소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거나 관리하기보다는 특정 기능의 금지 또는 제한이라는 단편적 규제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기술 중립성과 비례의 원칙 측면에서 과잉 규제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동일한 위험 수준을 가진 서비스 간 규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 보호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 역시 한계로 제기될 수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유해성', '중독성', '부적절한 콘텐츠' 등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과 적용 범위는 추상적인 수준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규제 대상 서비스와 보호 조치의 범위가 사후적으로 해석 및 확장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법적 불확실성을 부여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인 목적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광범위한 의무를 부과할 경우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과도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연령 기준 설정, 보호자 개입 범위 등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정교한 기준이 요구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입법안들은 이러한 기준을 입법 이후 하위 규정이나 행정 해석에 위임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입법은 청소년 보호 책임을 주로 개별 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서비스 전반의 위험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거나 관리하는 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는 플랫폼 서비스의 위험성을 개별 조항 단위에서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방

식으로서, 규제 집행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한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는 현 상황에서는 개별 금지 조항이나 의무 규정 중심의 입법만으로는 청소년 보호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과제는 개별 규제 조항의 추가나 의무 강화가 아니라,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즉,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체계는 ‘금지’와 ‘제한’ 중심의 사후적인 규제 체계를 넘어서서, 서비스의 유해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적인 관리와 완화 조치를 요구하는 구조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 유해성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이나 청소년 이용 비중이 높은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출시 또는 주요 기능 변경 이전에 청소년에 대한 잠재적 위험 요소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의 사후 개입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업자에게는 예측 가능한 준수 기준을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사전 유해성평가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과 절차가 법률 차원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평가 대상, 평가 항목, 위험 수준 분류 방식, 보호 조치의 범위 등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지 않을 경우, 사전 유해성 평가 제도도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입법 논의에서는 청소년 보호의 실질적인 효과와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 중심의 규제 체계 마련이 핵심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3. 시사점

청소년 보호 관련 입법안들은 공통적으로 온라인 이용환경 중심이 소셜 미디어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 정책 역시 일반적인 이용자 보호에서 벗어나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청소년이 처한 위험이 단순한 콘텐츠 노출을 넘어, 서비스 구조와 상호작용 방식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음을 국회에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문제의 인식이 실효성 있는 보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규제 방식에 대한 고

민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술과 서비스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개별 기능을 사후적으로 제한하거나,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방식만으로는 위험을 충분히 통제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접근은 서비스의 구조적 특성은 반영하지 못한 채, 규제 대상과 범위를 반복적으로 확장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플랫폼 상 청소년 보호 입법은 특정 행위의 금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점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의 출발점이 '사후책임'이 아니라 '사전 위험 인지 및 관리'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플랫폼 서비스는 설계 단계에서 이미 이용자의 체류 시간, 상호작용 빈도 등 다양한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만큼, 청소년에게 미칠 잠재적 영향 역시 이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완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규 기능 도입이나, 서비스 구조 변경 시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사전적 평가 체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접근이 형식적인 절차에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과 이행 방식에 대한 명확한 제제도 필수적이다. 단순히 '유해성 여부'를 선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요소가 위험 요인으로 평가되는지, 위험 수준에 따라 어떠한 완화 조치가 요구되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즉, 향후 청소년 보호 입법의 핵심적인 과제는 개별 규제 수단의 추가가 아니라, 서비스의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사전 평가를 통해 위험을 식별하고, 설계 단계에서 안전을 반영하며, 운영 과정에서는 투명한 검증과 점검을 통해 책임성을 확보하는 구조가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플랫폼 스스로 청소년 보호 체계를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지속가능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제4장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업자 책무 강화방안 마련

제1절 인터넷사업자의 청소년보호업무 이행 책임성 확보 방안

1. 청소년보호업무 책임성 확보의 필요성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사업자들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청소년보호계획 수립, 유해매체물 표시 및 관리 등 법정 의무사항의 이행률에서 비교적 우수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보호정책 공지, 유해 콘텐츠 차단, 연령등급 표시, 성인인증 절차, 신고 기능 등 주요 항목에서 대조군 대비 현저히 높은 이행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가 실질적인 청소년보호 활동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제도적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보호 활동이 실제로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적 평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재 대부분의 청소년보호 조치는 청소년의 유해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배제 방식에 집중되어 있다. 연령 인증을 통한 성인 콘텐츠 차단, 유해정보 블러 처리, 서비스 이용 연령 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청소년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는 데 일정한 효과가 있으나,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청소년의 권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지정의무사업자와 대조군 간 가장 큰 차이는 청소년을 단순한 배제 대상이 아닌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는지 여부에 있다. 청소년보호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청소년 접근 제한이라는 소극적 방식을 넘어, 청소년전용 공간 제공, 연령대별 맞춤형 콘텐츠 큐레이션, 청소년 친화적 인터페이스 구축 등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보호 활동의 이행 실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 제3항은 청소년보호책임자로 하여금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립된 계획의 제출이나 이행 실적 보고에 관한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청소년보호계획은 사업자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고 있으나, 계획에 명시된 조치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그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체계적인 확인 절차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의 청소년보호 활동이 계획 수립 단계에 그치고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이행되는 경우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정책당국 입장에서도 지정무사업자 전체의 청소년보호 활동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미흡한 영역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소년보호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수립한 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그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이에 기반한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 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고, 청소년과 보호자에게는 서비스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책당국에게는 효과적인 관리·감독과 정책 개선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청소년보호업무 이행의 책임성 확보는 단순히 법적 의무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 청소년보호 활동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자신의 청소년보호 활동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보호에 대한 사업자의 인식과 실천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획일적 관리·감독보다는, 서비스 특성과 위험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을 통해 정책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된다.

2. 청소년보호업무 이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방안

현행 제도 하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 제3항에 따라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공개하고 있으나, 계획의 실제 이행 여부와 그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청소년보호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지 않고 실제 이행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행실적 보고는 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청소년보호 활동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율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전체 지정의무사업자의 청소년보호 활동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제한된 행정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클린인터넷환경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서비스별 청소년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이러한 전수 점검 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확보된 행정력을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위험요인에 대응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보호 관리자 대상 교육, 청소년유해정보 관리를 위한 신기술 개발 지원, 청소년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보다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정책 활동에 자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과 보호자에게는 각 서비스의 청소년보호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는 의미도 있다.

이행실적 보고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청소년 보호계획과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에 대한 이행실적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 수립 및 개정 내역,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이행 현황, 정보통신업무 종사자에 대한 청소년보호 교육 실시 현황,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현황, 그 밖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 법령상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들의 이행 실적을 포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클린인터넷서비스 환경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청소년보호 조치 모니터링 항목들을 이행실적 보고 내용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 계획 수립 및 공지 여부, 청소년보호 책임자 지정 및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기본원칙, 기술적·관리적 장치, 신고방법 등이 포함된 청소년보호 계획의 웹사이트 공지 여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공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유해정보 접근 제한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 노출 차단 여부,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19금 표시 기능 적용 여부, 성인인증 등 접근제한 절차 마련 여부, 게시물 업로드 시 공개범위 제한 기능 설정 여부, 금칙어 또는 청소년유해어 적용 여부 등을 포함

할 수 있다. 유료서비스 이용 시 청소년보호 조치와 관련해서는 회원가입 및 유료서비스 이용 시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마련 여부, 유료서비스 이용 시 법정대리인에게 내역 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수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 여부, 서비스 이용 관련 전담센터 운영 및 신속 처리 여부, 이용자 피해구제 안내 페이지 제공 여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 외 청소년보호를 위한 조치로는 청소년전용공간 운영 등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 여부, 불법·유해정보 제공 시 처벌 등 관련 제재사항 공지 및 법령 위반 게시물에 대한 경고 안내 여부, 청소년보호 관련 이용자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나 홍보, 캠페인 실시 여부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이행실적 보고서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으며, 제출 시기는 청소년보호계획 수립 시기와 연계하여 매년 상반기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제출 대상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사업자 전체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 규모나 서비스 특성에 따라 보고 내용의 상세 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보고서는 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청소년과 보호자가 각 서비스의 청소년보호 활동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된 보고서를 취합하여 전체 지정의무사업자의 청소년보호 활동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사업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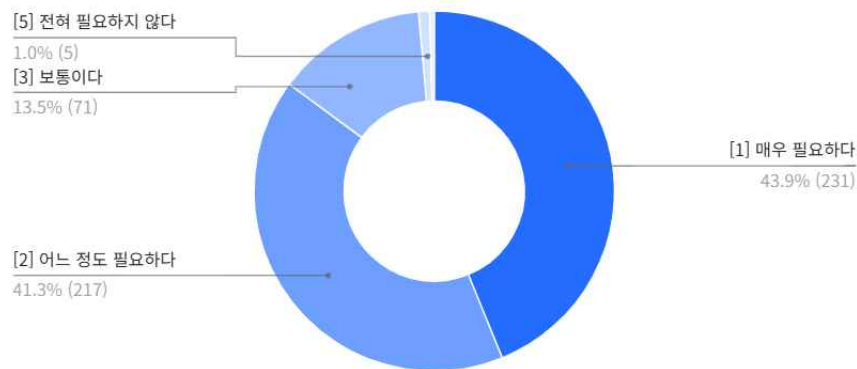
이러한 이행실적 보고 체계는 사업자의 자율적 점검 및 개선을 유도하고, 정책당국의 효과적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며, 청소년과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보호 정책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의미도 있다. 특히 사업자가 스스로 이행실적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청소년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발견하여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관리·감독 수단을 넘어 청소년보호 문화를 조성하는 정책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한편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 체계와 함께 집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클린인터넷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업무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전반적인 이행률 수준이 양

호한 만큼, 향후에는 전수 모니터링보다는 청소년보호업무의 질적 개선이 필요한 영역과 사업자에 집중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특히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 체계가 도입될 경우,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사업자를 선별하여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정책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보호책임자가 법령에서 정한 보호조치를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사후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책임 이행실적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일반 인터넷이용자(n=562)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모니터링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약 85.2%였다. 다만, 현재와 같은 전수조사 대상 모니터링은 늘어나는 정보의 양과 위험기반 접근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트렌드를 고려할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상시적인 모니터링은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로 대체하고,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사업자를 선별하는 집중모니터링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림 4-1] 모니터링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n=526)



집중 모니터링 대상은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이 미흡하거나 내용이 부실한 사업자, 서비스 특성상 청소년 이용자 비율이 높은 사업자,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나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서비스, 이용자 신고가 다수 접수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 서비스, 이전 모니터링에서

미흡 사항이 발견되었으나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자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형식적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이행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웹툰, 웹소설, 게임, 개인방송 등 청소년이 주요 이용자층을 구성하는 서비스, 랜덤채팅, SNS, 커뮤니티 등 사용자 생성 콘텐츠 기반 서비스는 우선적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청소년 유해정보 관련 신고가 빈번하거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서비스 역시 면밀한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집중 모니터링 결과는 미흡 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 및 컨설팅 제공, 반복적 미이행 시 제재 근거, 우수 사업자 인센티브 부여, 정책 개선 및 가이드라인 보완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업계 전반의 미흡한 영역에 대해서는 기술적 지원이나 가이드라인 보완 등 정책적 개입을 검토함으로써 청소년보호 생태계 전체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이행실적 보고와 집중 모니터링 체계의 결합은 청소년보호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책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실질적인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청소년 보호책임 강화를 위한 위험기반 평가제도 도입 방안

1. '설계단계에서의 안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필요성

최근 유럽연합(EU), 영국, 호주의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보호의 핵심축이 서비스 운용단계의 '사후 조치'에서 설계단계의 '사전 예방'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의 중심에는 '설계단계에서의 안전(safety by design)'이라는 개념이 자리하고 있다. 소위 '설계단계에서의 안전(safety by design)'은 1990년대 후반 정보통신 인프라 보안을 위해 제기된 '설계단계에서의 보안(security by design)'의 철학적·방법론적 토대 위에서 탄생했다. 이 개념은 Saltzer와 Schroeder(1975)¹¹⁾의 연구에서 시작되어, 소프트웨어나 네트워크를 만들 때 보안을 위해 사후에 패치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초기 기획 단계부터 취약점을 방지하려는 보안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이후, 2010년대 GDPR(유럽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서비스의 기본설정(default)과 설계에 내재화하는 '설계단계에서의 프라이버시(privacy by design)'로 발전하였으며, 현재는 이 개념을 인터넷 상에서의 이용자 안전 영역으로 확장하여 '설계단계에서의 안전(safety by design)'에 이르렀다. 설계단계에서 위험을 방지한다는 개념이 일반적인 인터넷 서비스의 안전 원칙으로 확장되면서, 인터넷 유해정보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은 서비스 출시 후 유해요인에 대한 신고를 받아 조치하는 사후 대응에서, 서비스 구조 자체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설계하라는 사전적 시스템 요구로 전환되고 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위험이나 유해요인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개념이 주목받는 이유는 경제학적 효율성에 있다. 보안정책에서 사전 예방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고수습보다 발생억제가 경제적·사회적으로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Boehm(1981)의 소프트웨어 공학원칙에 따르면, 설계단계에서 결함을 해결하는 비용을 1이라고 할 때 출시후 사후 조치(patching)비용은 수십 배 또는 수백 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¹²⁾. 시스템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은 피해 발생시 회복이 어려운 비가역적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

11) Saltzer, J. H., & Schroeder, M. D. (1975).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in computer systems. *Proceedings of the IEEE*, 63(9), 1278-1308.

12) Boehm, B. W. (1981). *Software Engineering Economics*.

인 그루밍, 유해정보 노출, 사이버 폭력 등의 피해도,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안 사고의 비가역성과 동일한 논리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대규모의 피해 발생 후 위험을 제거하는 것보다, 예측가능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페이스와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합리적 접근으로 여겨진다.

‘설계단계에서의 안전’ 패러다임의 또다른 핵심은 안전에 대한 책임 주체의 전환에 있다. 이 접근법은 시스템의 구축 단계에서 안전을 고려할 책임을 ‘설계자(기업)’에게 묻는다. ‘설계단계에서의 안전’은 온라인 위험을 개별 이용자의 일탈이 아닌 ‘서비스의 구조적 설계 결함’으로 인식한다. 과거에는 온라인상에서 아동이 성인 가해자와 연결되거나 사이버 불링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단순히 서비스의 정상적 기능을 악용하는 이용자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로 보았으나, ‘설계단계에서의 안전’ 관점에서는 프로필 기반 서비스의 ‘친구 추천 알고리즘’이 가해자와 아동을 연결하는 것 자체를 설계상의 결함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보안 분야의 전통적 기법인 ‘위협 모델링(Threat Modeling)’을 서비스 설계에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기획 단계에서 "이 기능이 아동에게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가?"를 선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다.

온라인 서비스의 복잡성 증가도 보호자 중심의 ‘이용자 책임’ 모델의 한계를 드러내는 요인이다. 현대의 온라인 플랫폼은 복잡한 알고리즘과 다층적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모와 같은 보호자가 모든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통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은 책임의 중심을 ‘공급자’로 이동시킬 것을 요구한다. 보안 정책의 ‘기본 설정에 의한 보안(Secure by Default)’ 원칙이 안전 분야에 적용되면서, 사용자가 복잡한 설정을 하지 않아도 가장 안전한 상태가 유지되는 ‘기본 설정에 의한 안전(Safety by Default)’ 원칙이 확립되었다. 호주 eSafety Commissioner(2019)가 제시한 이 원칙은 보호자의 관리와 교육 중심 접근에서 플랫폼이 처음부터 높은 수준의 안전 설정을 기본값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사전의 무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사후 모니터링과 삭제 중심 정책의 물리적 한계(scalability) 역시 ‘설계단계에서의 안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정보의 폭발적 증가와 커뮤니케이션의 다차원화로 인해 사후 조치는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했다. 보안 분야에서 매일 쏟아지는 악성코드를 사람이 일일이 분석할 수 없듯이, 온라인상의 방대한 콘텐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공적 기구가 전수 심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매일 생성되는 엄청난 양의

콘텐츠를 사후에 모니터링하고 심의하는 절차는 정보량이 급증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다차원적으로 확장될수록 그 효율성이 급격히 저하된다. 따라서 시스템의 구조(architecture) 자체가 아동·청소년을 표적화하는 범죄나 유해정보의 유포를 억제하도록 설계되어야만 실질적인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 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설계 단계에서의 안전'이란 청소년 보호 활동이 단순히 유해 콘텐츠의 사후 차단이나 제재 수준에 머물지 않고, 서비스의 설계와 기능 개발 단계에서부터 아동·청소년의 정서적·물리적 안전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여 잠재적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비가역적 피해의 사전 차단, 책임 주체의 공급자 전환, 그리고 물리적 확장성 한계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사후 규제 중심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필연적 전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 온라인안전법, 유럽 디지털서비스법 등이 도입한 서비스 출시 전 '사전 위험성 평가(Safety Risk Assessment)' 제도는 '설계단계에서의 안전' 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한 핵심 기제로서, 예방적이고 효율적인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를 모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조점이 될 수 있다.

2. 위험기반적 접근 관점에서의 영향평가 적용대상의 적정성 검토

1) 확장된 청소년보호업무로서 사전위험성 평가 의무 부과 대상 검토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사전 위험평가 제도의 적용 대상 설정 방식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은 월 4,500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제34조에 따른 시스템적 위험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새로운 기능 도입 전 반드시 위험평가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며, 평가 항목 중 '아동 권리 침해'와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웰빙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필수적인 평가요소로 명시하고 있다. 호주의 온라인안전법은 유럽이나 영국과 달리 사전 위험평가를 법률상 독립된 제도로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신 제45조에서 소셜미디어 서비스, 관련 전자 서비스, 지정된 인터넷 서비스로 대상으로 기본 온라인 안전 기대(BOSE)라는 규제 기대사항을 설정하고, 제6조와 제12조에서 "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위험평가 수행을 규정했다. 유럽연합은 대규모 플랫폼에

한정하여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위험평가를 요구하는 반면, 호주는 아동·청소년의 개인 프로파일의 특정화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 서비스 등 서비스 유형의 특성에 따라 집중적인 보호 책무를 부과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의 공통점은 설계 단계에서의 안전 철학에 기반한 위험 기반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계 단계에서의 안전'은 온라인 위험을 개별 이용자의 일탈이 아닌 서비스의 구조적 설계 결함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연합과 호주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구조적 위험에 접근하고 있다.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DSA)은 월 4,500만 명 이상이라는 대규모 이용자를 보유한 초대형 플랫폼의 경우, 그 영향력의 범위와 규모로 인해 사후적 모니터링만으로는 효과적인 관리가 어렵고 잠재적 피해의 확산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여 시스템적 위험평가를 의무화했다. 반면 호주 온라인안전법은 규모보다는 서비스의 기능적 특성에 초점을 맞춰, 아동·청소년의 개인 프로파일이 노출되고 이용자 간 직접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소셜미디어 서비스 등에서 사이버불링, 온라인 그루밍,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과 같은 구조적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고 이러한 서비스 유형에 집중적인 보호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결국 유럽연합과 호주가 사전 위험평가 책무를 부과하는 것은 규모의 영향력이든 서비스 유형의 특성이든, 구조적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과 시행령 제26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에 따라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또는 연 매출액 10억 원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청소년보호계획 수립,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및 관리 조치, 정보통신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상담 및 고충 처리 등의 책무를 부과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사업자까지 포함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후적 조치와 사전적 예방 활동을 모두 요구하는 포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전 위험평가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는 기존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성격을 가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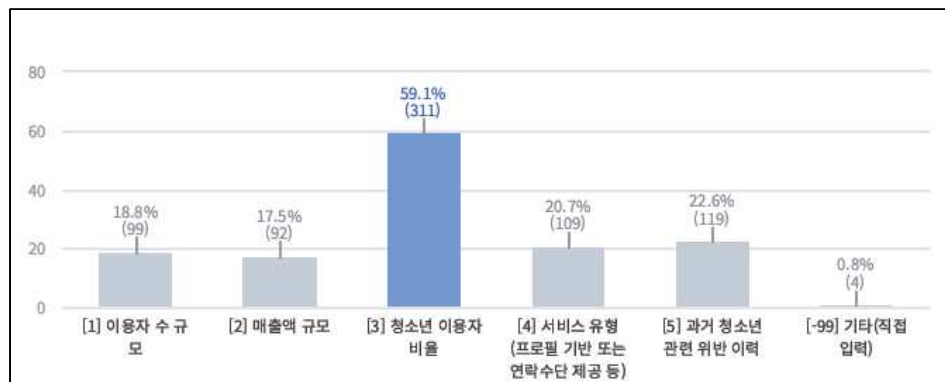
본 연구는 사업자 규모에 따른 차등적인 청소년 보호 의무를 부과할 때,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n=526)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은 가장 우선적인 기준으로 '서비스

내 청소년 이용자의 실질적인 비중'을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과반인 59.1%(311건)가 청소년 이용자 비율을 최우선 지표로 꼽았으며, 이는 기업의 외형적 규모보다 해당 서비스가 청소년의 일상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먼저 평가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는 '과거 청소년 관련 법규 위반 이력(22.6%)'과 '서비스의 기능적 유형(20.7%)'이 중요한 기준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사업자의 과거 준법 의지와 더불어, 익명성이나 프로필 기반의 접촉 가능성 등 서비스 자체가 가진 잠재적 위험 요소를 의무 부과 핵심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의 전통적인 기준이었던 '이용자 수 규모(18.8%)'나 '매출액 규모(17.5%)'는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이 크고 매출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의무를 강제하기보다는, 해당 서비스가 청소년 유해 환경과 얼마나 밀접하게 닿아 있는지를 따지는 '맞춤형 규제'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현행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의 보완적 책무 부과는, 매출이나 전체 규모라는 하드웨어적 지표보다는 청소년 이용자 밀집도와 서비스의 위험 특성, 그리고 사업자의 책임 이행 이력이라는 소프트웨어적 지표를 가중치 있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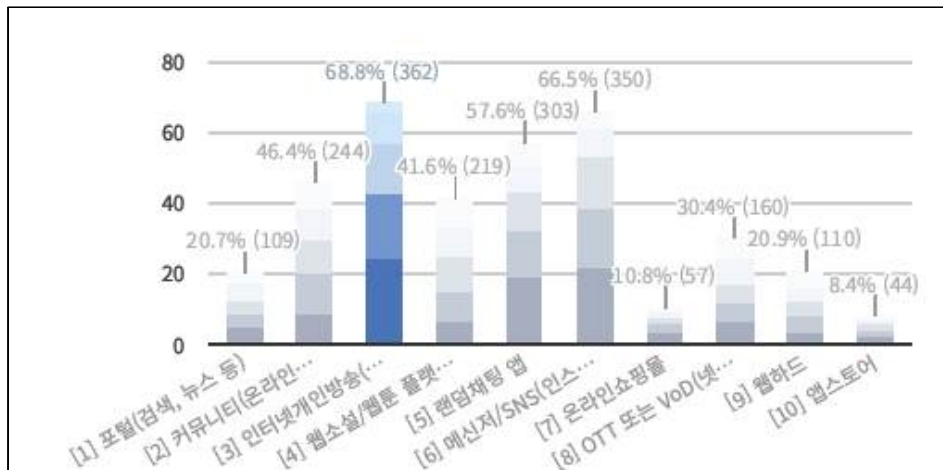
[그림 4-2] 사업자 규모에 따른 차등적인 의무 부과에 대한 국내 인터넷이용자 조사 결과



* n=526명, 다중선택형

구체적으로, 사전 위험평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예방적 활동의 일환인 청소년보호계획 수립 과정에서 알고리즘이나 서비스 기능의 구조적 문제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라는 추가적 요구사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완전히 새로운 책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구조적 위험을 가진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그 구조적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사업자 스스로 알고리즘의 변경, 서비스 개선, 시스템 개편 등이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해당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절차적 강화로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책무를 유지하면서, 구조적 위험이 높은 특정 서비스 유형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위험을 관리하는 예방적 접근을 추가함으로써 두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림 4-3] 서비스유형별 청소년보호업무 차등화 필요성에 대한 국내 인터넷이용자 조사 결과



* n=526명, 1-5순위 선택

본 연구가 실시한 국내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n=526)에서도 조적 위험이 있는 서비스를 청소년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책임 의무를 강화해야 할 서비스 유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은 청소년보호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를 우선순위로 5개까지 선택했을 때, 인터넷 개인방송, 메신저/SNS, 랜덤채팅 등 실시간 소통과 전파력이 큰 매체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단계에서의 안전’ 패러다임 자체가 모든 위험의 완전한 제거가 아닌 ‘합리적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한 관리를 지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험의 종류와 강도가 높은 서비스에 집중하는 것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동시에 사전 위험평가는 위험 모델링, 알고리즘 영향 분석,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상당한 기술적·인적 자원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를 수행할 역량을 갖춘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험 기반 접근의 철학, 기존 제도와의 조화, 그리고 유럽연합과 호주의 사례를 참조할 때,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서비스의 구조적 특성상 청소년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사전 위험평가 책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로필 기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랜덤 매칭 기능을 제공하는 채팅 서비스, 실시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등은 청소년이 성인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유해 콘텐츠에 반복 노출되거나, 또래 간 괴롭힘을 경험할 구조적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서비스 유형 중에서 아동·청소년의 실제 이용 가능성이 높고 일정한 기술적·재정적 역량을 갖춘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위험평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구조적 위험성과 아동·청소년 이용 가능성에 비례한 예방적 책무로서 기존의 사후 관리 체계와 상호 보완하며 보다 포괄적인 청소년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사전위험성 평가의 내용과 방법 검토

사전 위험평가 제도를 신설하는 경우,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DSA)과 영국 온라인안전법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위험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DSA 제34조는 초대형 플랫폼을 대상으로 불법 콘텐츠, 선거 과정, 공공 안전, 아동 보호 등을 포괄하는 ‘시스템적 위험(systemic risks)’ 전반에 대한 평가를 요구한다. 이 조항은 "서비스 및 알고리즘 시스템을 포함한 관련 시스템의 설계 또는 기능(the design or functioning of their service and its related systems, including algorithmic systems)"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추천 시스템 및 알고리즘의

설계, 콘텐츠 조정 시스템, 약관 및 그 집행, 광고 선정 및 표시 시스템, 데이터 관련 관행 등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아동 보호는 시스템적 위험의 여러 항목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을 뿐, 아동 전용 위험평가 제도는 아니다.

반면 영국 온라인안전법 제11조는 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아동 위험평가(Children's Risk Assessment)'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아동이 겪을 수 있는 해악에 초점을 맞춰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평가 항목을 제시한다. 평가 대상으로는 "서비스의 설계, 특히 그 기능성들(the design of the service, in particular its functionalities)"이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위험을 증가시키는 기능성으로 "성인이 다른 이용자(아동 포함)를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기능", "성인이 다른 이용자(아동 포함)에게 연락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다. 또한 "아동이 서비스를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성 또는 기타 특징"을 평가 요소로 제시하며, 그 예시로 "콘텐츠가 자동으로 재생되게 하는 기능"을 명시하고 있다. 평가 시에는 "서비스가 사용하는 알고리즘, 그리고 콘텐츠가 서비스를 통해 얼마나 쉽게, 빠르게, 광범위하게 유포될 수 있는지"를 특히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설계 및 운영이 비즈니스 모델, 거버넌스, 능동적 기술의 사용,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 조치 등 다양한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통해 식별된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두 입법례를 비교할 때, DSA는 "서비스 및 알고리즘 시스템의 설계 또는 기능"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통해 평가 대상을 넓게 설정하고, 추천 시스템, 콘텐츠 조정, 광고 시스템, 데이터 관행 등 시스템 구성 요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 영국 온라인안전법은 아동 보호에 특화된 평가로서 "성인-아동 검색 기능", "성인-아동 연락 기능", "자동 재생 기능" 등 실제 위험을 야기하는 구체적인 서비스 기능을 명시함으로써, 사업자가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영국법은 아동을 연령 집단별로 구분하고, 유해 콘텐츠의 각 종류별로 위험을 평가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평가의 세분화와 구체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에 사전 위험평가 제도를 도입한다면, DSA와 같이 시스템적 위험 전반을 평가하는 포괄적 접근보다는, 영국 온라인안전법과 같이 아동·청소년에게 특화된 위험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기존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를 보완하는 데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법 제11조와 제28조는 위험평가의 대상으로 콘텐츠 자체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설계

및 운영(the design and operation of the service)"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제11조 제6항 (e)호는 "서비스의 설계, 특히 그 기능성들이 아동이 겪을 수 있는 해악의 위험 수준에 미치는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며, 더 높은 수준의 위험을 제시하는 기능성을 식별하고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성인이 아동을 포함한 다른 이용자를 검색하거나 연락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제11조 제6항 (f)호는 "서비스가 사용되는 다양한 방식, 아동이 서비스를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성 또는 기타 특징"을 평가 대상으로 명시하며, 이러한 사용이 아동이 겪을 수 있는 해악의 위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한다. 또한 제11조 제6항 (h)호와 제28조 제5항 (f)호는 "서비스의 설계 및 운영(비즈니스 모델, 거버넌스, 능동적 기술의 사용, 이용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및 안전한 서비스 사용을 촉진하는 조치, 기타 시스템 및 프로세스 포함)"이 식별된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법의 접근은 단순히 유해 콘텐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서비스의 구조적 특성—프로필 기반 검색 기능, 이용자 간 직접 연락 기능, 콘텐츠 자동 재생 기능, 이용 시간을 증가시키는 인터페이스 설계 등—이 아동·청소년에게 어떤 위험을 야기하는지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설계 단계에서의 안전 철학을 구현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된다.

특히 영국 온라인안전법 제11조 제4항과 제28조 제4항이 "서비스의 설계 또는 운영의 어떠한 측면에 대한 중대한 변경을 하기 전"에 해당 변경의 영향에 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점은, 연 1회와 같은 정기적 평가뿐만 아니라 중대한 서비스 변경 시의 수시적 평가를 결합하여 급속히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시행령 제26조 제1호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가 이미 연 1회 청소년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계획 수립 과정에서 영국법과 같이 서비스의 설계 및 기능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을 평가하도록 하고 중대한 기능 변화 시에도 사전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은 기존 제도를 자연스럽게 보완하는 접근이 될 수 있다.

3.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에서 사전 위험성 영향평가의 도입 방안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과 시행령 제26조(청소년보

호책임자의 업무)는 이미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또는 연 매출액 10억 원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6조는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로 ①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 수립, ②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및 관리 조치, ③ 정보통신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④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상담 및 고충 처리,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제1호 '청소년보호계획 수립'은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가진 조항으로,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계획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는 주로 이미 존재하거나 유통되는 유해정보에 대한 사후적 관리-접근 제한, 교육, 피해 상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현행 제도는 서비스의 유형이나 구조적 위험성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매출액과 이용자 수라는 규모 기준만으로 일괄 적용되며, 청소년 이용자의 규모나 서비스 기능의 특성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유해정보의 내용(content) 중심 접근으로, 콘텐츠 자체의 유해성을 판별하고 이를 차단·삭제하는 데 중점을 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앞서 살펴본 설계 단계에서의 안전 철학은 유해정보의 사후 제거를 넘어 서비스의 구조(structure)가 만들어내는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는 접근이다. 프로필 기반 소셜 네트워크나 랜덤 채팅 서비스의 경우, 특정 유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친구 추천 알고리즘'이 성인 가해자와 청소년을 연결하거나 '자동 재생 기능'이 유해 영상을 반복 노출하는 구조 자체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위험은 단순한 콘텐츠 필터링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서비스 설계 및 알고리즘 운영 과정에서 "이 기능이 청소년에게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가?"를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설계 단계에서의 안전 철학을 현행 제도에 접목하는 방안으로, 우선 법률 제42조의3에 제4항을 신설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서비스 및 알고리즘 시스템을 포함한 관련 시스템의 설계 또는 기능의 변경으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유해·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청소년보호계획 수립에 대한 추가적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제3항이 규정하는 청소년 보호 계획이라는 틀 내에서 구조적 위험 평가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영국 온

라인안전법 제11조 제4항과 제28조 제4항이 "서비스의 설계 또는 운영의 어떠한 측면에 대한 중대한 변경을 하기 전"에 해당 변경의 영향에 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알고리즘 도입, 이용자 매칭 방식 변경, 콘텐츠 추천 시스템 개편 등 청소년에게 해악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중대한 기능 변화가 있을 경우 그 변경 전에 위험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령에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현행 시행령 제26조 제1호에 따른 연 1회 청소년보호계획 수립이라는 정기적 예방 활동에 중대한 서비스 변경 시의 사전 평가라는 수시적 예방 장치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적인 책무조항을 현행 청소년보호 조항에 설치할 경우, 구조적 위험 여부와 상관없이 사전위험성 평가가 현행 제42조의3이 1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가지거나 매출 10억 원 이상의 모든 유형의 서비스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서비스 및 알고리즘 시스템의 설계 변경에 대한 영향평가는 현행 법률에서 정의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관리'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것으로, 단순히 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는 것과 달리 서비스의 기능적 설계 자체에 대한 개입을 요구한다. 만약, 구조적 위험성이 낮은 온라인 서점이나 음원 사이트 등에도 동일한 책무가 부과될 경우, 이는 규제범위의 과도한 확대로서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다른 방안으로는 시행령 제26조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각호에 "신규 기능 도입 또는 시스템 변경에 따른 청소년 안전 영향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위법인 제42조의3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는 위임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 법률이 유해정보의 차단과 관리를 중심으로 위임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서 서비스 구조와 알고리즘 설계에 대한 평가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모든 유형의 서비스에 일괄 적용되는 조항에 이러한 책무를 추가하는 것은 과잉 규제의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때, 청소년에게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을 가진 서비스나 기능을 별도로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전 위험평가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와 같은 별도 조항을 마련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청소년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구조적 위험이 낮은 일반 서비스와 구조적 위험이 높은 특정 서비스를 구분함으로써, 과잉 규제의 문제를 피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영역에 대해서는 강화된 예방 책무를 부과할 수 있는 방식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알고리즘'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한 명확하고 합의된 정의를 법령에 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기술적 어려움은 남아 있다. 그러나 최근 아동의 SNS 사용 연령 제한에 관해 윤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안번호 2201798)에서 '사회관계망기능'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으로 정의한 사례는, 아동·청소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기능을 법령상 구분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프로필 기반 커뮤니케이션, 랜덤 매칭, 실시간 상호작용 등 청소년에게 구조적 위험을 야기하는 서비스 기능을 정의하고, 해당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위험평가 의무를 신설하는 방향이 제도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모두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사업자 자율 평가 원칙과 제도적 설계 방향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위험평가 의무 자체는 법률에 명시하되 구체적인 평가 절차와 방법론은 법률이 아닌 가이드선나 규칙 등으로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의 경우 제34조에서 위험평가 의무와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요소(추천 시스템, 콘텐츠 조정 시스템 등)를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평가 방법론은 법률에 규정하지 않았다. 유럽위원회는 위임입법(Delegated Regulation)을 통해 감사 절차만을 규정했을 뿐, 위험평가의 구체적 수행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실무적으로는 사업자가 스스로 평가 방법론을 정의하고 감사자가 이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2024년 4월 선거 관련 위험 완화에 대한 가이드라인만을 발표했다.

반면 영국은 법률에서 위험평가 의무와 평가 대상을 상세히 규정하되, 구체적인 평가 방법론은 규제기관인 Ofcom이 발표하는 광범위한 가이드선을 통해 제공하는 방식을 택했다.

Ofcom은 Children's Risk Assessment Guidance와 Children's Risk Profiles를 발표하여 4단계 평가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인터랙티브 툴과 기록 보존 템플릿까지 제공하고 있다. 또한 Ofcom이 발표하는 행동강령(Codes of Practice)은 법적으로 준수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49조에 따라 행동강령을 따르는 사업자는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deemed compliant)되며, 대안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기록 및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사실상의 강제력(de facto mandatory)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법률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술 발전과 새로운 위험 유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구체적인 방법론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는 접근은 몇 가지 측면에서 합리적이다. 첫째, 온라인 서비스의 구조와 기능은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YouTube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 TikTok과 같은 숏폼 콘텐츠 서비스,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은 각각 전혀 다른 위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가 모든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획일적인 안전 조치를 미리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둘째, 인터넷 서비스의 트렌드와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 법률에 구체적인 방법론을 명시할 경우 서비스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셋째, 서비스의 구조적 특성은 제3자가 아닌 사업자 자신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 추천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용자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특정 기능이 아동에게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는 해당 서비스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사업자 스스로 위험을 평가하고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면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다는 것도, 구체적인 방법론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사업자 스스로가 내재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대응하도록 하는 자율적 관리 체계를 유도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요국의 입법례에서는, 사전 위험평가를 사업자가 스스로 자신의 서비스에 내재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 설계하고 있다. 이는 DSA 제34조가 "식별, 분석 및 평가(identify, analyse and assess)"를 요구하고 제35조가 "합리적이고 비례적이며 효과적인 완화 조치를 마련하고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나, 영국 온라인안전법 제11조가 "적절하고 충분한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제12조가 "위험평가에서 식별된 위험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례적 조치를 취하거나 사용"하도록 한 것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이처럼 사업자에게 위험 관리 책무를 부여하되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구체적 방식은 사업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접근은, '설계 단계에서의 안전' 패러다임의 시작점이었던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도 유사한 접근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사이버 회복력법(Cyber Resilience Act, CRA)은 디지털 제품의 사이버 보안을 설계 단계부터 확보하도록 하는 대표적 입법례이다. CRA는 제조업자에게 제품의 전체 생명주기 동안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제품의 위험 수준에 따라 적합성 평가 방식을 차등화하고 있다. 일반 위험 수준의 제품(Default products)에 대해서는 제조업자가 스스로 필수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고 EU 적합성 선언(EU declaration of conformity)을 제출하는 자기적합성 평가(self-assessment) 방식까지도 허용한다. 이는 사업자가 자신의 제품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며, 보안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규제기관이 모든 제품에 대해 획일적인 기술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사업자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되 위험도에 따라 검증 수준을 달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이는 제품 규제 사례이지만, 사업자가 스스로 위험을 평가하고 적합성을 선언하며, 그 적합성 선언과 별도로 안전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진다는 원리는 온라인 서비스 규제에도 적용 가능한 접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가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사업주에게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역시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식별), 위험성을 평가하며(평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완화) 하는 구조이며, 온라인 서비스의 사전 위험평가와 동일한 논리를 따르고 있다¹³⁾.

13)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를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정부의 책무는 정책의 수립·집행·조정·홍보, 위험성평가 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시책의 운영, 위험성평가 실시의 지원,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다만 구체적인 평가 방법, 절차 및 시기는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타 분야의 규제 방식을 고려하여, 법률 또는 시행령 수준에서는 구조적 위험이 높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서비스 및 알고리즘을 포함한 관련 시스템의 설계, 기능 또는 운영"이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에 미치는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의무만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평가 절차, 방법론, 고려사항 등은 법률이나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하기보다는,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관련 규제기관이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이나 고시 등으로 위임하거나 산업 표준이나 사업자 자율규범으로 수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처럼 위험평가 책무는 부과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하위 규칙이나 자율규범으로 위임하는 방식은 국제적으로도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다. 이 방식은 유해·위험 요인을 일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온라인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고,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평가 대상이 되는 서비스 기능의 예시(프로필 기반 검색, 이용자 간 직접 연락, 콘텐츠 자동 재생, 이용 시간 증가 인터페이스 등),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요소(추천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 콘텐츠 유포의 속도와 범위, 이용자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방식 등), 위험 수준의 판단 기준, 위험 완화를 위한 조치의 예시, 평가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방법 등은 서비스 트렌드 변화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를 가이드라인이나 자율규범으로 다룸으로써, 법령에서는 사업자가 스스로 청소년 안전을 고려하여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명확한 책무를 부여하면서도, 급속히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 요인에 대해 규제기관과 산업계가 협력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며, 정부는 위험성평가 기법의 개발과 보급, 위험성 평가 실시의 지원을 통해 사업장의 개별적 특수성을 인정하고 위험저감에 기여하는 형태의 일종의 규제된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참고문헌

해외문헌

Boehm, B. W. (1981). Software Engineering Economics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2025.10.10.), Guidelines on measures to ensure a high level of privacy, safety and security for minors online, pursuant to Article 28(4) of Regulation (EU) 2022/2065

Saltzer, J. H., & Schroeder, M. D. (1975).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in computer systems. Proceedings of the IEEE, 63(9), 1278-1308

홈페이지

<https://ofcomlive.my.salesforce-sites.com/formentry/RegulationChecker>

<https://www.ofcom.org.uk/online-safety/illegal-and-harmful-content/guide-for-services>

<https://www.ofcom.org.uk/online-safety/protecting-children/check-how-to-comply-with-the-protection-of-children-rules>

<https://www.reedsmith.com/en/perspectives/2025/05/uk-online-safety-act-ofcom-updates-childrens-codes-and-guidance>

● 저 자 소 개 ●

천 혜 선

-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
- 뉴욕주립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박사
- 현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윤 금 낭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석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박사
- 현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 현 주

- 서울여자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
- The Univ. of Georgia 광고학 석사
- 뉴욕주립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박사
- 현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 나 은

-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석사과정
- 현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원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 KMCC-2025-16

**정보통신망상에서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인터넷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방안 연구**

2025년 12월 31일 인쇄

2025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TEL: 02-2110-1323

Homepage: www.kcc.go.kr
